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제4066호  
2025. 5. 26.(월)



## 목 차

### ◆ 공 고

|                                   |   |
|-----------------------------------|---|
| 제2025-1662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 | 2 |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62호

##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본부·국          |
|-------------|----|---------------------------------|--------------------|
| 예산안<br>(1건) | 1  |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br>(예산담당관)   |
| 결산안<br>(3건) | 1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재무국<br>(재무과)       |
|             | 2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무국<br>(재무과)       |
|             | 3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재무국<br>(재무과)       |
| 조례안<br>(9건) | 1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국<br>(인사과)       |
|             | 2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무국<br>(세제과)       |
|             | 3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생교육국<br>(교육지원정책과) |
|             | 4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br>(법무담당관)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본부·국          |
|--------------|----|---------------------------------------|--------------------|
|              | 5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한강본부<br>(기획예산과)  |
|              | 6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br>(보건의료정책과) |
|              | 7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br>(보건의료정책과) |
|              | 8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br>(정신건강과)   |
|              | 9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br>(정신건강과)   |
| 동의안<br>(33건) | 1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무국<br>(재산관리과)     |
|              | 2  |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평생교육국<br>(교육지원정책과) |
|              | 3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 평생교육국<br>(평생교육과)   |
|              | 4  |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 경제실<br>(경제정책과)     |
|              | 5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 경제실<br>(창업정책과)     |
|              | 6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민생노동국<br>(소상공인정책과) |
|              | 7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 민생노동국<br>(소상공인정책과)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본부·국            |
|----|----|-----------------------------------------|----------------------|
|    | 8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문화본부<br>(문화예술과)      |
|    | 9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 디지털도시국<br>(디지털정책과)   |
|    | 10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 디자인정책관<br>(디자인정책담당관) |
|    | 11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행정국<br>(대외협력과)       |
|    | 12 |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br>(재정담당관)     |
|    | 13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br>(재정담당관)     |
|    | 14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실<br>(창업정책과)       |
|    | 15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민생노동국<br>(소상공인정책과)   |
|    | 16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관광체육국<br>(체육정책과)     |
|    | 17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복지실<br>(장애인복지과)      |
|    | 18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여성가족실<br>(양성평등담당관)   |
|    | 19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시민건강국<br>(식품정책과)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본부·국             |
|----|----|--------------------------------------|-----------------------|
|    | 20 |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재난안전실<br>(도로관리과)      |
|    | 21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주택실<br>(주택정책과)        |
|    | 22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공간본부<br>(도시공간전략과)   |
|    | 23 |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균형발전본부<br>(균형발전정책과)   |
|    | 24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글로벌도시정책관<br>(국제협력담당관) |
|    | 25 |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경제실<br>(창업정책과)        |
|    | 26 |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   | 민생노동국<br>(노동정책과)      |
|    | 27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민생노동국<br>(농수산유통과)     |
|    | 28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복지실<br>(돌봄복지과)        |
|    | 29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복지실<br>(자활지원과)        |
|    | 30 |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시민건강국<br>(건강관리과)      |
|    | 31 |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시민건강국<br>(건강관리과)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본부·국         |
|-------------------|----|-----------------------------------------------------------|-------------------|
|                   | 32 |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관광체육국<br>(체육진흥과)  |
|                   | 33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소방재난본부<br>(안전지원과) |
| 의견<br>청취안<br>(3건) | 1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안                       | 도시공간본부<br>(도시계획과) |
|                   | 2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이화여자대학교 - | 도시공간본부<br>(시설계획과) |
|                   | 3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서울시립대학교 - | 도시공간본부<br>(시설계획과) |

##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일상 등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 2. 주요내용

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기정대비 증감       | %    |
|------|----------------|----------------|---------------|------|
| 계    | 49,769,118,563 | 48,154,464,246 | 1,614,654,317 | 3.35 |
| 일반회계 | 35,596,933,776 | 34,429,312,649 | 1,167,621,127 | 3.39 |
| 특별회계 | 14,172,184,787 | 13,725,151,597 | 447,033,190   | 3.26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지은(☎ 02-2133-6809)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세입·세출 결산

##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34조 7,815억 1,700만원
- 세출 결산액 33조 5,653억 9,400만원
- 잉 여 금 1조 2,161억 2,3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42억 3,200만원(자금없는 명시이월액 1억 6,500만원 제외) 및 사고이월액 1,451억 3,9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77억 2,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90억 2,900만원임.

## (2)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2조 2,752억 8,000만원
- 세출 결산액 1조 7,690억 1,500만원
- 잉 여 금 5,062억 6,4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건설개량이월액) 248억 400만원 및 사고이월액 1,207억 3,0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4,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6억 8,500만원임.

## (3) 기타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10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12조 1,960억 8,900만원
- 세출 결산액 11조 4,470억 6,800만원

- 잉 여 금 7,490억 2,1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339억 5,800만원(자금없는 명시이월액 426억 1,800만원 제외) 및 사고이월액 3,086억 4,4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1억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73억 900만원임.

#### 나. 기금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조 2,171억 5,8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7조 6,622억 8,000만원에 비하여 5,54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6조 5,523억 6,200만원 |
| - 중소기업육성기금            | 2,756억 4,600만원    |
| - 식품진흥기금              | 567억 1,000만원      |
| - 기후대응기금              | 452억 4,500만원      |
| - 도로굴착복구기금            | 417억 6,200만원      |
| - 양성평등가족기금            | 243억 3,500만원      |
|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 111억 5,300만원      |
| - 사회복지기금              | 641억 6,600만원      |
| - 체육진흥기금              | 575억 6,500만원      |
| - 재난관리기금              | 8,100억 9,600만원    |
|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 332억 1,300만원      |
| - 지역교류협력기금            | 19억 8,700만원       |
| - 국제개발협력기금            | 33억 7,200만원       |
| - 도시재생기금              | 1,339억 9,800만원    |
| - 관광진흥기금              | 75억 9,200만원       |
|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52억 1,800만원       |
|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 921억 2,400만원      |
| - 고향사랑기금              | 5억 6,600만원        |
| - 공공시설등설치기금           | 0원                |
|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 5,100만원임.         |

#### 다. 재무제표

(1) 2024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155조 2,109억 5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152조 5,148억 800만원에 비하여 2조 6,960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                     |
|-----------|---------------------|
| - 유 동 자 산 | 6조 2,494억 3,700만원   |
| - 투 자 자 산 | 18조 5,788억 7,500만원  |
| - 유 형 자 산 | 129조 1,419억 6,100만원 |
| - 기타비유동자산 | 1조 2,406억 3,200만원임. |

(2) 2024회계연도 말 총부채는 18조 6,281억 5,8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18조 891억 8,200만원에 비하여 5,38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동부채 3조 8,458억 4,000만원
- 장기차입부채 9조 3,754억 5,500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5조 4,068억 6,300만원임.

(3) 2024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136조 5,827억 4,7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134조 4,256억 2,600만원에 비하여 2조 1,57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고정순자산 117조 9,733억 2,700만원
- 특정순자산 5조 6,535억 5,300만원
- 일반순자산 12조 9,558억 6,700만원임.

(4)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8,232억 9,700만원 적자로 2023회계연도 982억 7,200만원 흑자에 비하여 9,215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수 익 38조 6,927억 5,300만원
- 비 용 39조 5,160억 5,000만원
- 재정운영결과 8,232억 9,700만원 적자임.

#### 라. 성과보고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241개 정책사업목표의 455개 지표에 대하여 초과달성은 75건, 달성은 297건, 미달성은 83건임.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 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감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 · 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1,361억 300만 원 중 362억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62억 6,300만원을 지출함

##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                |
|-----------------|----------------|
| - 예비비 예산액       | 1,112억 3,100만원 |
| - 지 출 결 정 액     | 317억 4,200만원   |
| - 지 출 액         | 317억 3,500만원   |
| - 이 월 액         | 0원             |
|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 600만원임.        |

##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              |
|-----------------|--------------|
| - 예비비 예산액       | 103억 3,500만원 |
| - 지 출 결 정 액     | 1억 5,300만원   |
| - 지 출 액         | 1억 5,300만원   |
| - 이 월 액         | 0만원          |
|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 0만원임.        |

##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              |
|-------------|--------------|
| - 예비비 예산액   | 145억 3,600만원 |
| - 지 출 결 정 액 | 43억 7,500만원  |
| - 지 출 액     | 43억 7,500만원  |
| - 이 월 액     | 0만원          |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마.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위원의 직무)

①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 기금결산 승인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조 2,171억 5,8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7조 6,622억 8,000만원에 비하여 5,54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6조 5,523억 6,200만원 |
| - 중소기업육성기금            | 2,756억 4,600만원    |
| - 식품진흥기금              | 567억 1,000만원      |
| - 기후대응기금              | 452억 4,500만원      |
| - 도로굴착복구기금            | 417억 6,200만원      |
| - 양성평등가족기금            | 243억 3,500만원      |
|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 111억 5,300만원      |
| - 사회복지기금              | 641억 6,600만원      |
| - 체육진흥기금              | 575억 6,500만원      |
| - 재난관리기금              | 8,100억 9,600만원    |
|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 332억 1,300만원      |
| - 지역교류협력기금            | 19억 8,700만원       |
| - 국제개발협력기금            | 33억 7,200만원       |
| - 도시재생기금              | 1,339억 9,800만원    |
| - 관광진흥기금              | 75억 9,200만원       |
|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52억 1,800만원       |
|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 921억 2,400만원      |
| - 고향사랑기금              | 5억 6,600만원        |
| - 공공시설등설치기금           | 0원                |

－ 박물관 · 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5,100만원임.

###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한급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한급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라.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위원의 직무)

- ①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감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공적이 현저한 저연차 직원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시장표창 추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대상에서 최소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호)

나. 표창장 수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함(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다. 표창권자 규정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4. 3. ~ 4. 23.)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행정국 인사과 임고은 (☎ 2133-5731)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표창권자” 라 한다)는 다음과” 를 “사람(이하 “표창권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2.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호 본문 중 “및 시” 를 “공무원 및 시·자치구” 로,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를 “임직원(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 으 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을 “우수한 시 소속기관, 자치구, 자치구 소속기관” 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p> <p>1. 표창장, 상장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p> <p>2. 감사장 : 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p>                                                              | <p>제4조(표창권자) -----<br/>-----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p> <p>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p> <p>2.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p> |
| <p>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p> <p>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p> | <p>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br/>-----<br/>-----.</p> <p>1. -----<br/>-----<br/>----- 공무원 및 시·자치구<br/>-----<br/>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lt;단서 삭제&gt;</p>    |

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  
여할 수 있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  
속기관

3. · 4. (생 략)

제18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  
----- 우수한 시 소속기관,  
자치구, 자치구 소속기관

3.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세칙) -----  
필요한 -----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표창 추천대상의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 및 현행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존재하지 않음

## 4. 작성자

행정국 인사과 임고은(2133-5731)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5. 1. 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세 기본 조례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선정 대리인 업무를 현행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여 조례 일부 조문 삭제(안 제8조 ~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4. 3. ~ 4. 2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 (☎ 02-2133-3353)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및”을 “「지방세기본법」 및”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세 기본법」 및 -----<br>-----<br>-----<br>--- |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삭 제>                                                    |
| 제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 <삭 제>                                                    |
|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                                                                                                                                                                                                |                                                          |

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삭 제>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  
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  
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  
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 지정  
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                                                                                                     |  |
|-----------------------------------------------------------------------------------------------------|--|
| <p><u>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br/>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br/>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br/>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br/>한다.</u></p> |  |
|-----------------------------------------------------------------------------------------------------|--|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선정대리인 업무를 이관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비용 발생현황 없음

###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3)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25. 1. 21.)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기존 시행계획 수립을 예방대책 수립으로 변경하고,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
- 나. 지역위원회가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 다.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4. 10. ~ 4. 3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박재련 (☎2133-394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목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뜻한”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단체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를 “단체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시행계획”을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으로, “사항”을 “사항(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없으면”을 “없는 한”으로, “협조할 수 있다”를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2.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치료·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내”를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며, 두 차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 위원회”를 “전임위원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다”를 “연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제1조</u>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u>관한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u>제1조(목적)</u> -----<br/>-----<br/>-----<br/>----- <u>필요한</u> -----<br/>-----<br/>-----<br/>-----<br/>-----<br/>-----<br/>-----<br/>-----</p>                                                                                                                                                                     |
|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u>한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u>제2조</u>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p> <p>3. ~ 5. (생략)</p> <p>6. “청소년시설 등”이란 「<u>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u>제12조</u>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u>단체</u> 또는 「<u>청소년복지 지원법</u>」 <u>제29조</u>에 따른 기</p> | <p><u>제2조(정의)</u> -----<br/>----- <u>뜻</u>은 -----.</p> <p>1. (현행과 같음)</p> <p>2. ----- 「초·중등교육법」 <u>제2조</u>-----<br/>-----<br/>-----<br/>-----<br/>-----<br/>-----</p> <p>3. ~ 5. (현행과 같음)</p> <p>6. ----- 「<u>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u>제12조</u>-----<br/>----- <u>단체</u> 또는 「<u>청소년복지 지원법</u>」 <u>제29조</u>-----</p> |

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생략)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3. (생략)

<신설>

-----.

7.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 --- 사항 (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치료·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

③ (생 략)

④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생 략)

제8조(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  
----- 없는 한 -----  
--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이내의 위원으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며, 두 차례 -----  
----. -----  
---- 전임위원의 -----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  
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  
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  
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한 법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  
-----  
----- 학교 밖 청  
소년 지원 프로그램-----  
----- 연계하여야 한다.

②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5조제1항 -----  
-----  
---.

<삭 제>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박재련(02-2133-3944)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지방세 불복민원에 대한 선정 대리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

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위촉 요건,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등 규정 신설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4. 3. ~ 4. 2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공도연(☎2133-6688)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납세자 권리현장 등” 을 “선정 대리인” 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4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해당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일자, 납세자, 선정 대리인,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납세자 권리현장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그 밖의 행위는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br>-----<br>----- <u>필요한</u> -----<br>-----<br>--. |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br>-----<br>-----<br>-----<br>--.                 |
| 1.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5급 공무원                                     | 1. <u>서울특별시</u> -----<br>-----<br>-----<br>-----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br>-----<br>-----.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5. <u>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의</u>                                 |

| 현행                                                                                                                                                                                                                       | 개정안                                                                                                                                                                                                                                                                                                                                                                                                                                                                                                                 |
|--------------------------------------------------------------------------------------------------------------------------------------------------------------------------------------------------------------------------|---------------------------------------------------------------------------------------------------------------------------------------------------------------------------------------------------------------------------------------------------------------------------------------------------------------------------------------------------------------------------------------------------------------------------------------------------------------------------------------------------------------------|
| <p><u>5. · 6. (생략)</u></p> <p>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u>시</u>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p> <p>1. ~ 6. (생략)</p> <p>제6장 <u>납세자 권리현장 등</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 <p><u>운영에 관한 사항</u></p> <p><u>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u></p> <p>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br/>-----<br/>---- <u>서울특별시</u> ----<br/>-----<br/>-----.</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6장 <u>선정 대리인</u></p> <p>제23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u>제62조의2제2항제2호</u> 각 목의 <u>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u></p> <p>제24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u>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u>을 <u>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u></p> |

| 현행 | 개정안                                                                                                                                                                                                                                                                                                                                                                                                                               |
|----|-----------------------------------------------------------------------------------------------------------------------------------------------------------------------------------------------------------------------------------------------------------------------------------------------------------------------------------------------------------------------------------------------------------------------------------|
|    | <p><u>배제하여야 한다.</u></p> <p>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p> <p>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p> |

| 현행 | 개정안                                                                                                                                                                                                                                                                                                                                                                                                                                                                              |
|----|----------------------------------------------------------------------------------------------------------------------------------------------------------------------------------------------------------------------------------------------------------------------------------------------------------------------------------------------------------------------------------------------------------------------------------------------------------------------------------|
|    | <p><u>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u></p> <p><u>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대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u>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u></p> <p><u>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u></p> <p><u>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u></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 <p><u>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25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일</u></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br/>제23조 ~ 제26조 (생략)</p> | <p>자, 납세자, 선정 대리인, 결정 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⑤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 제6항에 따른다.</p> <p>제7장 납세자 권리현장 등<br/>제26조 ~ 제29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p> |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세제과에서 운영하던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세출의 순증가 발생 사항 없음

###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공도연 주무관(2133-6688)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홍보관광 유람선인 ‘한강아라호’ 매각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수상이용시설 중 ‘한강아라호’를 삭제하고,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주차수요 대응을 위해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 적용에서 제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상이용시설 선박 중 ‘한강아라호’ 삭제(안 별표 2 제1호)

나.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 적용에서 제외(안 별표 2 제7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4. 3. ~ 4. 2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김보미(☎ 02-3780-0752)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선박의 한강아라호란을 삭제하고, 별표 2 제7호 여의도한강공원의 월정기권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월정기권                |                 |
|---------------------|-----------------|
| 여의도샛강쪽(4, 5주차장)     | 72,000~100,000원 |
| 한강본류호안쪽(1, 2, 3주차장) | 91,000~120,000원 |

2)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 구 분 | 기 준 및 이 용 료 | 비 고                                                                                                                                                                                                                                          |                                                                           |
|-----|-------------|----------------------------------------------------------------------------------------------------------------------------------------------------------------------------------------------------------------------------------------------|---------------------------------------------------------------------------|
| 선박  | 한강<br>트네상스호 | 1회 승선<br>· 어린이·청소년(6~18세)<br>· 성 인(19세 이상)<br><br>3,000~5,000원<br>5,000~10,000원<br><br>1회 대어<br>· 어린이·청소년(6~18세)<br>· 성 인(19세 이상)<br>(4시간 이내, 70명 기준)<br>※이동 운항 가능<br><br>210,000~350,000원<br>350,000~700,000원                               | 1. 운항노선은<br>서울특별시<br>미래한강본<br>부장이 정<br>한다.                                |
|     | 한강<br>아라호   | 1시간 승선(편도)<br>· 어린이·청소년(6~18세)<br>· 성 인(19세 이상)<br><br>4,000~6,000원<br>8,000~12,000원<br><br>2시간 승선(왕복)<br>· 어린이·청소년(6~18세)<br>· 성 인(19세 이상)<br><br>6,000~9,000원<br>13,000~17,000원<br><br>1회 대어·대어료<br>(4시간 이내)<br><br>700,000~3,500,000<br>원 | 2. 2시간 초과<br>승선시에는<br>매 추가시<br>간마다 1시<br>간 승선료<br>의 50~90%<br>를 추가하<br>다. |
|     | 그 밖의<br>선박  | 1회 승선<br>· 어린이·청소년(6~18세)<br>· 성 인(19세 이상)<br><br>1,000~1,500원<br>2,000~3,000원                                                                                                                                                               |                                                                           |
|     |             |                                                                                                                                                                                                                                              |                                                                           |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 구 분                    | 기 준 및 이 용 료               |                   |                    |                                                         |
|------------------------|---------------------------|-------------------|--------------------|---------------------------------------------------------|
|                        | 1회 주차(1구획)                |                   | 1일 주차              | 월 정기권                                                   |
|                        | 기본요금                      | 초과<br>10분당        |                    |                                                         |
| 여의도<br>한강공원            | 최초30분<br>1,000~<br>3,000원 | 300원<br>~<br>400원 | 13,000~<br>19,000원 | 여의도샛강쪽<br>72,000~100,000원<br>한강본류호안쪽<br>91,000~120,000원 |
| 그 밖의<br>한강공원           | 최초30분<br>1,000~<br>1,500원 | 200원<br>~<br>300원 | 9,100~<br>12,000원  | 45,000~<br>64,000원                                      |
| 비 고                    |                           |                   |                    |                                                         |
| 1) 이용료 정수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                                                         |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 구 분 | 기 준 및 이 용 료 | 비 고                                                                                                                                                                                                            |                                                                           |
|-----|-------------|----------------------------------------------------------------------------------------------------------------------------------------------------------------------------------------------------------------|---------------------------------------------------------------------------|
| 선박  | 한강<br>트네상스호 | 1회 승선<br>· 어린이·청소년(6~18세)<br>· 성 인(19세 이상)<br><br>3,000~5,000원<br>5,000~10,000원<br><br>1회 대어<br>· 어린이·청소년(6~18세)<br>· 성 인(19세 이상)<br>(4시간 이내, 70명 기준)<br>※이동 운항 가능<br><br>210,000~350,000원<br>350,000~700,000원 | 1. 운항노선은<br>서울특별시<br>미래한강본<br>부장이 정<br>한다.                                |
|     | <삭 제>       |                                                                                                                                                                                                                | 2. 2시간 초과<br>승선시에는<br>매 추가시<br>간마다 1시<br>간 승선료<br>의 50~90%<br>를 추가하<br>다. |
|     | 그 밖의<br>선박  | 1회 승선<br>· 어린이·청소년(6~18세)<br>· 성 인(19세 이상)<br><br>1,000~1,500원<br>2,000~3,000원                                                                                                                                 |                                                                           |
|     |             |                                                                                                                                                                                                                |                                                                           |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 구 분                                                                                    | 기 준 및 이 용 료               |                   |                    |                                                                                      |
|----------------------------------------------------------------------------------------|---------------------------|-------------------|--------------------|--------------------------------------------------------------------------------------|
|                                                                                        | 1회 주차(1구획)                |                   | 1일 주차              | 월 정기권                                                                                |
|                                                                                        | 기본요금                      | 초과<br>10분당        |                    |                                                                                      |
| 여의도<br>한강공원                                                                            | 최초30분<br>1,000~<br>3,000원 | 300원<br>~<br>400원 | 13,000~<br>19,000원 | 여의도샛강쪽<br>(4, 5주차장)<br>72,000~100,000원<br>한강본류호안쪽<br>(1, 2, 3주차장)<br>91,000~120,000원 |
| 그 밖의<br>한강공원                                                                           | 최초30분<br>1,000~<br>1,500원 | 200원<br>~<br>300원 | 9,100~<br>12,000원  | 45,000~<br>64,000원                                                                   |
| 비 고                                                                                    |                           |                   |                    |                                                                                      |
| 1) 이용료 정수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                                                                                      |
| 2)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br>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 요금제를<br>적용하지 않는다. |                           |                   |                    |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운영이 종료된 선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수상이용시설에서 종료된 선박 정보를 삭제하고, 한강공원 주차장 중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1일 주차요금제’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김보미 (☎ 02-3780-0752)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 근거를 추가하고, 상위법 범위에서 정한 운영시간 명시 및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나. 상위법령 범위에서 정한 운영시간 명시(안 제2조)

다. ‘공공 야간약국’ 을 ‘공공심야약국’ 으로 용어 변경(안 제명, 제2조~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약사법」 제21조의3

(2)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1조의6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3. 27. ~ 4. 16.)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채선화(☎2133-7757)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을 “심야시간대” 로, “약사” 를 “약국개설자” 로, “운영하는 야간약국” 을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심야약국” (이하 “심야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 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 이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야간약국” 을 “심야약국” 으로, “노력한다” 를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야간약국” 을 “심야약국” 으로, “하여야” 를 “노력하여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한다” 를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 를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 로, “야간약국을” 을 “심야약국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을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야간약국의 관리)” 를 “(심야약국의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간약국 근무 약사” 를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로,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야간약국” 을 각각 “심야약국” 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소관상임위원회” 를 “소관 상임위원회” 로 한다.

제6조 중 “야간약국” 을 “심야약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일 야간 시간대와 토요일</u> 및 <u>공휴일</u>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u>약사</u>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u>운영하는 야간약국</u>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공공 야간약국</u>”(이하 “<u>야간약국</u>”이라 한다.)이란 「<u>약사법</u>」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u>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u>에게 <u>평일 야간 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u>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p> | <p><u>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심야시간대</u><br/>-----<br/>-----<br/>----- <u>약국개설자</u>-----<br/>-----<br/>----- 「<u>약사법</u>」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p> <p>제2조(정의) -----<br/>-----<br/>-----.</p> <p>1. “<u>공공심야약국</u>”(이하 “<u>심야약국</u>”이라 한다.)이란 「<u>약사법</u>」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u>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u>에게 <u>심야시간대 및 공휴일</u>의 <u>운영시간</u>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u>장(이하 “<u>시장</u>”이</p> |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심야약국-----  
-----  
-----  
----- 노  
력하여야 한다.

② ---- 심야약국-----  
----- 노  
력하여야 -----  
-----.

③ -----  
-----  
-----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  
-----  
-----  
-----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  
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  
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실태  
를 매년 조사하고, 그 성과와 실  
적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심야약국을 -----,

② -----  
--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

<삭 제>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심야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  
약사-----  
---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  
-----  
---.

② ----- 심야약국-----  
-----.

③ ----- 심야약국-----  
-----  
----- 소관 상임위원회-----  
-----.

제6조(홍보) ----- 심야약국-----  
-----  
-----.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심야약국 지정 등 근거를 추가하고, 상위법 범위에서 정한 운영시간 명시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채선화 (☎ 2133-7757)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건강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정 전반에 건강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건강총괄관’ 위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간 연계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계 관련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3항)
- 나.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8조 ~ 제3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4. 24. ~ 4. 3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입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김서연 (☎ 02-2133-751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장의 제목 “보칙” 을 “서울건강총괄관의 운영” 으로 한다.

제28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8조의2를 제33조의2로 하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한다.

제5장에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① 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을 연계한 정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건강총괄관” 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 언론,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석사,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9조(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등)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자문
2.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
3.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자문
4.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건강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

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울건강총괄관의 임기)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건강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건강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건강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② (생략)<br><u>&lt;신설&gt;</u> |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
| 제5장 보칙<br><u>&lt;신설&gt;</u>                       | 제5장 <u>서울건강총괄관의 운영</u><br>제28조(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br>① 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을 연계한 정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건강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br>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br>1. 민간(기업, 언론,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석 |

<신 설>

사,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9조(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등)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자문

2.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

<신 설>

리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  
 3.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자문  
 4.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의 업  
 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건강총괄관은 직무상 알  
 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  
 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  
 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특  
 별시 민간전문가의 지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울건강총괄관의 임기)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직으

<신 설>

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  
울건강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  
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  
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건강  
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건강총괄관 스스로가 위  
촉 해지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  
이 있거나 서울건강총괄관으  
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                                                                                                                                                  |                                                                                                                                                                                                                                                                                                                                           |
|--------------------------------------------------------------------------------------------------------------------------------------------------|-------------------------------------------------------------------------------------------------------------------------------------------------------------------------------------------------------------------------------------------------------------------------------------------------------------------------------------------|
|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28조</u> (생 략)</p> <p><u>제28조의2</u> (생 략)</p> <p><u>제29조</u> ~ <u>제33조</u> (생 략)</p> | <p><u>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건강<br/>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br/>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br/>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br/>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br/>유에 해당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보칙</u></p> <p><u>제33조</u> (현행 제28조와 같음)</p> <p><u>제33조의2</u> (현행 제28조의2와 같<br/>음)</p> <p><u>제34조</u> ~ <u>제38조</u> (현행 제29조부<br/>터 제33조까지와 같음)</p> |
|--------------------------------------------------------------------------------------------------------------------------------------------------|-------------------------------------------------------------------------------------------------------------------------------------------------------------------------------------------------------------------------------------------------------------------------------------------------------------------------------------------|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장(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 ‘서울건강총괄관’을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자격기준, 업무범위, 임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28조제2항제4호의 자격요건인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참고하여 인건비는 3급 연봉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
  - ※ 3급(상당) 공무원 연봉 상한액(110,826천원)을 시간당 수당으로 계산(‘25년 지방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 비용은 2025년 8월부터 발생하고 향후 5년간 소요비용 추계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연도           |        |        |        |        |        |         |
|             | 구분           |        |        |        |        |        |         |
| 지출          | ○ 서울건강총괄관 수당 | 16,792 | 40,300 | 40,300 | 40,300 | 40,300 | 177,992 |
|             | 소계(a)        | 16,792 | 40,300 | 40,300 | 40,300 | 40,300 | 177,992 |
| 수입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총 비용(a-b) |              | 16,792 | 40,300 | 40,300 | 40,300 | 40,300 | 177,992 |

※ 수당은 3급 공무원 연봉 상한액(110,826)을 시간당 수당(52,474원\*)으로 환산하여 추계

\* 52,474원 = 110,826천원/2,112시간(주 40시간 × 4.4주 × 12개월)

※ 1차년도는 시행일 2025년 8월(5개월)을 기준으로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시비      | 지방세 수입 | 16,792 | 40,300 | 40,300 | 40,300 | 40,300 | 177,992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16,792 | 40,300 | 40,300 | 40,300 | 40,300 | 177,992 |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6.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보건정책팀장        백명철

담    당    자        김서연(02-2133-7512, syon0211@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서울건강총괄관 총 비용(합계) ≍ 177,992천원(연평균 35,598천원)

－ 산출방식 : 연간(2025~2029) 비용의 합산

: 40,300천원\* × 4년(’ 26.~’ 29) + 16,792천원( ’25.7.~12.)

≍ 161,200천원 + 16,792천원 ≍ 177,992천원

\* 연간 서울건강총괄관 수당

= 3급 공무원 최대연봉액의 시간급 환산액 × 주2일 전일 근무가정 시 연 근무  
기간

= 52,474원 × 8시간 × 2일 × 4주 × 12개월 = 40,300천원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변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서울시 권역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및 설치 주체 변경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센터 설치 규정에서 권역별 설치 삭제(안 제4조)
- 나. 심리지원센터별 주요 업무 및 기능 추가(안 제4조)
- 다. 조직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권역별 규정 삭제(안 제6조)
- 라. 센터 설치 관련 사업비 지원근거 신설(안 제7조)
- 마. 그 밖의 문구 및 약칭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개선의견: 심리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
  - 반영사항: 반영완료(안 제4조제2항제3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미경(☎2133-7842)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을 “공공”으로, “위하여”를 “위한”으로, “규정함”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차상위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센터의 설치)”를“(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위하여 광역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평가에 관한 사항
2.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을 “광역 센터에

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로,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 을 “시장” 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심리지원센터” 를 각각 “광역 센터”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 되어” 를 “설치되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리지원센터” 를 민간위탁 하는” 을 “광역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으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심리지원센터” 를 “자치구별 센터”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리지원센터” 를 “시장은 광역 센터” 로,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 를 “위해 광역 센터” 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삶의 만족</u> 및 <u>행복 증진</u> 을 원하는 시민이 <u>이용할 수 있는 공공</u>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u>위하여</u>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u>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u>공공</u> -----<br>-----<br>-----<br>----- <u>위한</u> -----<br>----- <u>규정</u> 하여 시민의 <u>삶의 만족</u> 및 <u>행복 증진</u> 에 <u>이바지</u> 함-----.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u>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u>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u>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u> 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u>서울시</u> 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br><br>② <u>시장</u> 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u>차상위 계층</u>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대상) ① -----<br>----- <u>서울특별시</u> -----<br>-----.<br><br>② <u>서울특별시</u>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br>----- <u>차상위계층</u> -----<br>-----<br>-----<br>-----. |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  
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  
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  
----- 위  
하여 광역 센터-----  
-----  
-----.

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에 관한 사항
2.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  
에 관한 사항
4.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 추구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 · 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 · 양성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 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 ·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  
되,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  
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  
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  
라 시장이 정한다.

1.·2. (생 략)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  
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  
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  
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제5조(센터 조직 등) <삭 제>

광역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  
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  
-----  
----- 시장-----.

1.·2. (현행과 같음)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  
-- 광역 센터-----  
----- 광역 센터-----  
-----  
-----  
-----.

1. (현행과 같음)

2. -----  
-----  
-- 설치되어 -----

3. (생 략)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수탁 기관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3. (현행과 같음)

② ---- 광역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광역 센터-----  
-----  
----- 위해 광역 센터-----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사무의 위임) ① -----  
----- 자치구별 센터-----  
-----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

제11조 (생 략)

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운영  
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  
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  
을 할 수 있다.

제9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구 심리지원센터(마음상담소) 설치비 지원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3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br>(2025) | 2차년도<br>(2026) | 3차년도<br>(2027)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                |                |                |      |      |           |
| 지출          | 자치단체자본보조 | 1,300,000      | 520,000        | 260,000        | -    | -    | 2,080,000 |
|             | 소계 (a)   | 1,300,000      | 520,000        | 260,000        | -    | -    | 2,080,000 |
| 수입          | -        | -              | -              | -              | -    | -    | -         |
|             | 소계 (b)   | -              | -              | -              | -    | -    | -         |
| □ 총 비용(a-b) |          | 1,300,000      | 520,000        | 260,000        | -    | -    | 2,080,00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br>(2025)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                |         |         |      |      |           |
| 국비 |       | -              | -       |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1,300,000      | 520,000 | 260,000 | -    | -    | 2,080,000 |
|    | 세외수입  | -              | -       | -       | -    | -    | 0         |
|    | 지방채 등 | -              | -       | -       | -    | -    | 0         |
| 민간 |       | -              | -       | -       | -    | -    | 0         |
| 기타 |       | -              | -       | -       | -    | -    | 0         |
| 합계 |       | 1,300,000      | 520,000 | 260,000 | -    | -    | 2,080,000 |

#### 5. 덧붙이는 의견

- 설치목표 : ' 25년 10개소, ' 26년 4개소, ' 27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 27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 6. 작성자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미경(2133-7842)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 |            | 1차년도<br>(2025) | 2차년도<br>(2026) | 3차년도<br>(2027) |
|----|------------|----------------|----------------|----------------|
| 구분 |            |                |                |                |
| 지출 | ○ 자치단체자본보조 | 1,300,000      | 520,000        | 260,000        |
|    | 설치비        | 1,300,000      | 520,000        | 260,000        |
|    | 소계         | 1,300,000      | 520,000        | 260,000        |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자살예방 교육 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례 실효성 강화

### 2. 주요내용

- 가. 자살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안 제9조)
-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 ‘자살예방 교육’ 신설(안 제 21조)
- 다. 시행일 및 자살예방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안 부칙 제1조, 제2조)
- 라. 그 밖의 문구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 개선의견: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
    - － 반영사항: 반영완료(안 제9조제2항)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이가희(☎ 2133-783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한”을 “위해”로, “수립·시행함으로써”를 “수립·시행하여”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자살시도자 등”을 “자살시도자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을 “지원 및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권역별”을 “체계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구청장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해당 안전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가목에서 사목까지의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되고 서기는 자살예방사업 관련 팀장이 된다”를 “맡고 서기는 자살예방팀장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1. 당연직

가. 행정1부시장

나. 시민건강국장

다. 안전 관련 실·국·본부장

##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의 장

다.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살예방”을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를 “제3조제3호”로 한다.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을 “자살시도자등을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시는 프로그램을”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을 “자살자·자살시도자등”으로 한다.

1.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2.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

4. 그 밖에 자살시도자등의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7조의 제목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을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유해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자살예방 교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5456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 위해 -----<br>----- 수립·시행하<br>여 -----<br>-----<br>-----.                                            |
|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br>-----<br>-----<br>----- 자살시도자등-----<br>-----<br>-----<br>-----,<br>-----<br>-----.                  |
|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br>-----<br>-----<br>-----<br>-----<br>-----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4. ~ 6. (생략)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

8. ~ 13. (생략)

③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시

-----.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 6. (현행과 같음)

7. ----- 지원 및 사후관리

8. ~ 13. (현행과 같음)

③ ----- 각호 ----- 체계적인 -----  
---.

④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  
-----.

⑤ 제4항 -----  
-----  
-----.

제8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된다.

<신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해당 안전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가목에서 사목까지의 분야별 ---.

1. 당연직

가. 행정1부시장

나. 시민건강국장

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의 장

3.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다. 안전 관련 실·국·본부 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의 장

다.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  
야 전문가

6.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 시민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위원  
회 존속기한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  
사는 정신건강과장이 되고 서기  
는 자살예방사업 관련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를 따른다.

<삭 제>

⑧ -----  
-----  
----- 말고 서기  
는 자살예방팀장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  
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5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등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 위원회의 -----  
-----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현행 제4호와 같음)

<삭제>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  
--

② -----  
-----  
-----  
----- 제3조제3호-----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① ----- 자살시도자등을 위

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1.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  
그램

2. 정서지원프로그램

3. 상담 및 치료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자살시도자들의 치  
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프로그램

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  
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  
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도  
록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해 -----  
-----  
--.

1.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2.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그 밖에 자살시도자들의 심  
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  
원

<삭 제>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  
----- 자살자·자살시도자등--  
-----  
-----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자살유해정보  
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  
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  
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제22조 (생 략)

조례 제5456호

부칙 제2조(자살예방위원회에 대  
한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서  
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의 존  
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 서  
울특별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 설>

-----.

제17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 자살유발정보-  
-----  
-----  
----- 자살유발정보예방체  
계-----.  
② -----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  
-----.

제21조(자살예방 교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방지 및 생  
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제22조·제23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

<신 설>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위원회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 교육 관련한 자살예방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이가희 (☎ 2133-7838)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처분 1건임

- 취득 3건은 신축 2건, 교환 및 신축 1건이며,
- 처분 1건은 교환처분 1건임

## 나. 취득 3건

- 신축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 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면서 중심 문화시설로 제2세종문화회관(52,500.00㎡)을 신축하여 서울 서남권의 문화적 허브로 조성
- 당초 감염병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전문 의료시설을 건립하고자 2021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물가상승 및 음압격리시설 특수성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100.7% 증가(39,378백만원 → 79,019백만원)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 교환 및 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홍지동(종로구 홍지동 76-1외 5필지) 민간 소유의 토지(5,177㎡)를 매입 후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4,840㎡)하고자 2016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홍지동 부지의 입지 조건이 부적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류(‘17년~’ 18년, 3회)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 위치와 추진 방식을 변경(홍지동→ 신영동, 매입 및 신축 → 교환 및 신축)하여, 사업 부지인 종로구 소유의 토지(신영동 62외 9필지)를 종로구 내 사유지와 교환하여 취득(3,970.30㎡)하고, 저류시설과 청소년센터의 복합화로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건립(5,230.86㎡) 하는 건으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에 재상정하였으나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되었기에,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경사 지형을 활용한 건축기획을 시행하는 등 사업부지 선정  
적정성 문제에 대한 보완 사항 반영하여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재상정

다. 처분 1건

○ 교환 처분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종로구에서 환경 공무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인 시유지(종로구 효자동 178-2, 105.50㎡) 및 시유 건물(132.23㎡)과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 휴재산인 종로구 내 시유지(종로구 재동 53-1, 222.80㎡)를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교환 처분하는 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하였으나,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적정성 논의를 위하여 삭제되었기에 관리계획 재수립하여 재상정

### 3.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별첨)

### ○ 취득 3건

- |           |    |   |               |
|-----------|----|---|---------------|
| - 신축      | 2건 | : | 건물 59,730.87㎡ |
| - 교환 및 신축 | 1건 | : | 토지 3,970.30㎡  |
|           |    |   | 건물 5,800.00㎡  |

○ 처분 1건

- － 교환 1건 : 토지 328.30㎡  
건물 132.23㎡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 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면서 중심 문화시설로 제2세종문화회관(52,500.00㎡)을 신축하여 서울 서남권의 문화적 허브로 조성하고,

당초 감염병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전문 의료시설을 건립하고자 2021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물가상승 및 음압격리시설 특수성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100.7% 증가(39,378백만원 → 79,019백만원)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당초 홍지동(종로구 홍지동 76-1외 5필지) 민간 소유의 토지(5,177㎡)를 매입 후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4,840㎡)하고자 2016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홍지동 부지의 입지 조건이 부적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류(‘17년~’ 18년, 3회)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 위치와 추진 방식을 변경(홍지동→ 신영동, 매입 및 신축 → 교환 및 신축)하여, 사업 부지인 종로구 소유의 토지(신영동 62외 9필지)를 종로구 내 사유지와 교환하여 취득(3,970.30㎡)하고, 저류시설과 청소년센터의 복합화로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건립(5,230.86㎡) 하는 건으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에 재상정하였으나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되었기에,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경사 지형을 활용한 건축기획을 시행하는 등 사업부지 선정 적정성 문제에 대한 보완 사항 반영하여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재상정하고,

당초 종로구에서 환경 공무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인 사유지(종로구 효자동 178-2, 105.50㎡) 및 사유 건물(132.23㎡)과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인 종로구 내 사유지(종로구 재동 53-1, 222.80㎡)를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교환 처분하는 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하였으나,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적정성 논의를 위하여 삭제되었기에 관리계획 재수립 및 재상정하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3건

- |           |    |   |                              |
|-----------|----|---|------------------------------|
| - 신축      | 2건 | : | 건물 59,730.87㎡                |
| - 교환 및 신축 | 1건 | : | 토지 3,970.30㎡<br>건물 5,800.00㎡ |

○ 처분 1건

- |      |    |   |                          |
|------|----|---|--------------------------|
| - 교환 | 1건 | : | 토지 328.30㎡<br>건물 132.23㎡ |
|------|----|---|--------------------------|

## 첨부

##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구  | 분         | 이 전  |        |            | 금 회         |        |           | 합 계 |            |               |
|----|-----------|------|--------|------------|-------------|--------|-----------|-----|------------|---------------|
|    |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 취득 | 계         | 토지   | 3      | 29,558.27  | 115,039,610 | -      | 3,970.30  | 3   | 33,528.57  | 120,833,943   |
|    |           | 건물   | 16     | 150,717.05 | 980,994,092 | 3      | 65,530.87 | 19  | 216,247.92 | 1,618,412,410 |
|    |           | 기타   | 3      | -          | 95,416,400  | -      | -         | 3   | -          | 95,416,400    |
|    | 매입 및 신축   | 토지   | -      | 16,981.60  | 87,366,157  | -      | -         | -   | 16,981.60  | 87,366,157    |
|    |           | 건물   | 2      | 34,807.30  | 185,307,000 | -      | -         | 2   | 34,807.30  | 185,307,000   |
|    | 신축 등      | 건물 등 | 6      | 12,549.00  | 77,709,267  | 2      | 59,730.87 | 8   | 72,279.87  | 647,064,925   |
|    |           | 토지   | 1      | 122.97     | 1,153,705   | -      | -         | 1   | 122.97     | 1,153,705     |
|    | 기부채납      | 건물 등 | 1      | 14178.95   | 76,855,209  | -      | -         | 1   | 14178.95   | 76,855,209    |
|    |           | 건물 등 | 3      | 24,779.58  | 386,702,770 | -      | -         | 3   | 24,779.58  | 386,702,770   |
|    | 매입        | 선박   | 1      | -          | 9,300,000   | -      | -         | 1   | -          | 9,300,000     |
|    |           | 건물   | 3      | 49,036.90  | 155,725,490 | -      | -         | 3   | 49,036.90  | 155,725,490   |
|    | 현물출자      | 권리   | 2      | -          | 86,116,400  | -      | -         | 2   | -          | 86,116,400    |
|    |           | 토지   | 1      | 359.00     | 607,751     | -      | -         | 1   | 359.00     | 607,751       |
|    | 무상귀속 및 신축 | 건물   | -      | 10,924.32  | 75,900,000  | -      | -         | -   | 10,924.32  | 75,900,000    |
|    |           | 토지   | 1      | 8,975.00   | 1,915,265   | -      | -         | 1   | 8,975.00   | 1,915,265     |
|    | 교환        | 토지   | -      | 3,119.70   | 23,996,732  | -      | 3,970.30  | -   | 7,090.00   | 29,791,065    |
|    |           | 건물   | 1      | 4,441.00   | 22,794,356  | 1      | 5,800.00  | 2   | 10,241.00  | 90,857,016    |
| 처분 | 계         | 토지   | 4      | 73,494.50  | 378,242,322 | 1      | 328.30    | 5   | 73,822.80  | 380,056,285   |
|    |           | 건물   | 1      | 40,465.40  | 12,277,594  | -      | 132.23    | 1   | 40,597.63  | 12,291,490    |
|    |           | 공작물  | 1      | 3,314.41   | 3,019,599   | -      | -         | 1   | 3,314.41   | 3,019,599     |
|    | 현물출자      | 토지   | 2      | 22,194.30  | 86,116,400  | -      | -         | 2   | 22,194.30  | 86,116,400    |
|    |           | 토지   | 1      | 3,300.20   | 15,213,922  | 1      | 328.30    | 2   | 3,628.50   | 17,027,885    |
|    | 교환        | 건물   | -      | -          | -           | -      | 132.23    | -   | 132.23     | 13,896        |
|    |           | 토지   | 1      | 48,000.00  | 276,912,000 | -      | -         | 1   | 48,000.00  | 276,912,000   |
|    | 매각 및 멸실   | 건물   | -      | 29,477.11  | 8,710,127   | -      | -         | -   | 29,477.11  | 8,710,127     |
|    |           | 건물   | 1      | 10,988.29  | 3,567,467   | -      | -         | 1   | 10,988.29  | 3,567,467     |
|    | 멸실        | 공작물  | 1      | 3,314.41   | 3,019,599   | -      | -         | 1   | 3,314.41   | 3,019,599     |

2.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25년도 제3차 수시분)

| 일련<br>번호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연)면적(㎡)  | 기준가격(천원)    | 취득<br>시기 | 취득사유 및 방법                       | 소관부서    |
|----------|------------------|--------|------|----------|-----------|-------------|----------|---------------------------------|---------|
|          |                  | 구      | 동    | 번지       |           |             |          |                                 |         |
| 계        |                  |        |      |          |           |             |          |                                 |         |
|          |                  |        |      |          | 69,501.17 | 643,212,651 |          |                                 |         |
| 1        | 건물<br>신축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2        | 52,500.00 | 490,336,080 | 2029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br>제2세 종문화회관 건립 | 도시공간전략과 |
| 2        | 건물<br>신축<br>(변경) | 동작구    | 신대방동 | 722-1    | 7,230.87  | 79,019,578  | 2028     | 보라매병원<br>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 공공의료과   |
| 3        | 토지<br>교환<br>(변경) | 종로구    | 신영동  | 62<br>일대 | 3,970.30  | 5,794,333   | 2028     | 시립종로청소년센터<br>복합 건립              | 청소년정책과  |
|          | 건물<br>신축<br>(변경) |        |      |          |           |             | 2030     |                                 |         |

3.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25년도 제3차 수시분)

| 일련<br>번호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연)면적(㎡) | 기준가격(천원)  | 처분<br>시기 | 처분사유               | 소관부서   |
|----------|----------|--------|-----|--------|----------|-----------|----------|--------------------|--------|
|          |          | 구      | 동   | 번지     |          |           |          |                    |        |
| 1        | 계        |        |     |        | 460.53   | 1,827,859 |          |                    |        |
|          | 토지<br>교환 | 종로구    | 재동  | 53-1 외 | 328.30   | 1,813,963 | 2028     | 시립종로청소년센터<br>복합 건립 | 청소년정책과 |
|          | 건물<br>교환 | 종로구    | 효자동 | 178-2  | 132.23   | 13,896    |          |                    |        |
|          |          |        |     |        |          |           |          |                    |        |

##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요약('25년도 제3차 수시분)

| 사 업 명                          | 구 분         | 내 역 |    |              |              | 세 부 내 용                                                                                                                                                                                                                                                                                                                       |
|--------------------------------|-------------|-----|----|--------------|--------------|-------------------------------------------------------------------------------------------------------------------------------------------------------------------------------------------------------------------------------------------------------------------------------------------------------------------------------|
|                                |             | 종류  | 건수 | (연)면적<br>(㎡) | 기준가격<br>(천원) |                                                                                                                                                                                                                                                                                                                               |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br>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 취 득<br>(신축) | 건물  | 1  | 52,500.00    | 490,336,08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 신축</li> <li>- 대 상 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2</li> <li>- 사업기간 : ' 23.11월 ~ ' 29. 12월</li> <li>- 소요예산 : 490,336,080천원</li> <li>- 사업규모 : 건물 52,500.00㎡</li> <li>- 기준가격 명세 : 건물 490,336,080천원</li> <li>- 계약방법 : &lt;건물신축&gt; 설계공모(설계), 공개경쟁입찰(공사)</li> </ul>             |
|                                |             | 건물  | 1  | 7,230.87     | 79,019,5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감염병 전문센터 설치를 통한 서울시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li> <li>- 대 상 지 : 동작구 신대방동 722-1</li> <li>- 사업기간 : ' 16. 9월 ~ ' 28. 12월</li> <li>- 소요예산 : 79,019,578천원</li> <li>- 사업규모 : 건물 7,230.87㎡</li> <li>- 기준가격 명세 : 건물 79,019,578천원</li> <li>- 계약방법 : &lt;건물신축&gt; 설계공모(설계), 공개경쟁입찰(공사)</li> </ul> |

| 사 업 명              | 구 분                 | 내 역 |    |              |              | 세 부 내 용                                                                                                                                                                                                                                                                                                                                                                                                                                                              |
|--------------------|---------------------|-----|----|--------------|--------------|----------------------------------------------------------------------------------------------------------------------------------------------------------------------------------------------------------------------------------------------------------------------------------------------------------------------------------------------------------------------------------------------------------------------------------------------------------------------|
|                    |                     | 종류  | 건수 | (연)면적<br>(㎡) | 기준가격<br>(천원) |                                                                                                                                                                                                                                                                                                                                                                                                                                                                      |
| 시립종로청소년센터<br>복합 건립 | 취 득<br>변 경<br>(교 환) | 토지  | 10 | 3,970.30     | 5,794,333    | <div>- 목적 및 용도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 목표인 1자차구 1수련관 건립기<br/>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 시립종로청소년<br/>수련관 건립</div> <div>- 대 상 지 :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div> <div>- 사업기간 : ' 19. 6월 ~ ' 30. 6월</div> <div>- 소요예산 : 78,368,660천원</div> <div>- 사업규모 : (취득) 토지 3,970.30㎡, 건물 5,800.00㎡<br/>(처분) 토지 328.30㎡, 건물 132.23㎡</div> <div>-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 5,794,333천원, 건물 68,062,660천원<br/>(처분) 토지 1,813,963천원, 건물 13,896천원</div> <div>- 계약방법 : &lt;토지교환&gt; 협의(감정평가),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div> |
|                    |                     | 건물  | 1  | 5,800.00     | 68,062,660   |                                                                                                                                                                                                                                                                                                                                                                                                                                                                      |
|                    |                     | 토지  | 2  | 328.30       | 1,813,963    |                                                                                                                                                                                                                                                                                                                                                                                                                                                                      |
|                    | 처 분<br>(교 환)        | 건물  | 1  | 132.23       | 13,896       |                                                                                                                                                                                                                                                                                                                                                                                                                                                                      |
|                    |                     |     |    |              |              |                                                                                                                                                                                                                                                                                                                                                                                                                                                                      |

##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우수 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2025 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서울장학재단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출연의 필요성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라. 주요사업

- 고교 및 대학 분야 장학생 진로활동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직업전문학교 학업활동 장학금 지원사업
- 독립유공자 후손 및 해외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 지원사업
- 대학원 분야 연구 및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사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에 참여한 우수학생 지원사업
- 멘토링, 아카데미 등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등

마. 추정개요

- 추경예산: 2,612,651천원
  - '25년 총 출연금액 12,168,502천원(기존 9,555,851천원)
- 출연금 편성 내용
  -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사업비: 2,612,651천원
- 추정 필요성
  - AI 분야 우수 인재 양성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학업·연구 장

려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임

※ (상반기) 석사 60명 → (하반기) 석사 350명, 박사 100명 지원

바. 기관개요

- 소재지 :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
- 법인설립 : 2009. 1. 8.
- 조직 : 사무국(2부), 정원 15명 / 현원 12명
- 시설규모: 675㎡(사무공간, 회의실(3), 창고)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총 출연금액 : 12,168,502천원
  - 장학사업비 10,940,141천원, 인건비 657,209천원, 운영경비 571,152천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전진수(☎ 2133-3913)

붙임

서울장학재단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 구분                   |               | ' 25년<br>추경(안)(A) | ' 25년<br>예산(B) | 증감(A-B)   |
|----------------------|---------------|-------------------|----------------|-----------|
| 총계                   |               | 12,168,502        | 9,555,851      | 2,612,651 |
| 장학사업운영 합계            |               | 10,940,141        | 8,327,490      | 2,612,651 |
| 교육<br>기회<br>확대<br>사업 |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 3,149,993         | 3,149,993      | -         |
|                      |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 2,050,503         | 2,050,503      | -         |
|                      |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 360,000           | 360,000        | -         |
|                      |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 315,500           | 315,500        | -         |
|                      |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 301,100           | 301,100        | -         |
|                      | 서울꿈길장학금       | 200,000           | 200,000        | -         |
|                      |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    | 50,000            | 50,000         | -         |
|                      |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 31,800            | 31,800         | -         |
| 우수<br>역량<br>지원<br>사업 |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 254,000           | 254,000        | -         |
|                      |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 650,236           | 650,236        | -         |
|                      | A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 3,212,651         | 600,000        | 2,612,651 |
|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               | 60,000            | 60,000         | -         |
| 홍보사업                 |               | 100,000           | 100,000        | -         |
| 정보화사업                |               | 204,358           | 204,358        | -         |
| 사무국운영 합계             |               | 1,228,361         | 1,228,361      | -         |
| 인건비(성과급 포함)          |               | 657,209           | 657,209        | -         |
| 경비                   |               | 571,152           | 571,152        | -         |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2025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나. 추진근거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
- 조       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진흥·지원·전문기관으로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원하고,
- 서울시민을 위한 ‘학습인프라 강화’, ‘학습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평생학습생태계’ 를 구현하기 위함

라. 사무내용

-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평생교육 정책과제 연구·개발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 사업,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7학년

교실 운영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특화과정 운영, 커뮤니티 지원, 홍보 및 행사 운영,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마. 추정개요

- 추정예산 : 416,000천원
  - 총 출연금액 : 11,848,807천원(기존 11,432,807천원)
- 편성내용 : 다시가는 캠퍼스 냉난방 시설 개선 : 416,000천원
- 추정 필요성
  - 다시가는 캠퍼스(구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는 2025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임
  - 캠퍼스는 서남권역의 시민대상 생애주기 평생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준공(2010년) 이후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작동 불능 및 기능 저하 발생, 시설 특성상 혹서기·혹한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음

바. 다시가는 캠퍼스(구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시설 개요

-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0
  - 시설규모 : 7,040㎡(강의실, 커뮤니티실, 공유오피스 등)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지역여건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도보 15분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1)

- 총 출연금액 : 11,849백만원
  - 인건비 4,067백만원, 운영경비 1,906만원, 사업비 5,221백만원, 예비비 655백만원
  -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강성준 (☎ 2133-3966)

붙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 2025년 본예산(A) | 1차 추경(안)(B) | 증감(B-A) |
|-----------------------------------|--------------|-------------|---------|
| <b>합 계</b>                        | 11,432,807   | 11,848,807  | 416,000 |
| <b>고유사업비 소계</b>                   | 4,804,715    | 5,220,715   | 416,000 |
| <b>1.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b>         | 675,110      | 675,110     | -       |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 657,110      | 657,110     | -       |
|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 18,000       | 18,000      | -       |
| <b>2.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b>       | 383,100      | 383,100     | -       |
|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 180,360      | 180,360     | -       |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 202,740      | 202,740     | -       |
| <b>3.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b> | 223,041      | 223,041     | -       |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 18,250       | 18,250      | -       |
|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사업           | 34,100       | 34,100      | -       |
|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 147,375      | 147,375     | -       |
|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23,316       | 23,316      | -       |
| <b>4.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b>           | 618,135      | 618,135     | -       |
| 중부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197,580      | 197,580     | -       |
| 동남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187,500      | 187,500     | -       |
| 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141,690      | 141,690     | -       |
|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91,365       | 91,365      | -       |
| <b>5.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b>            | 587,103      | 587,103     | -       |
| 중부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58,050       | 58,050      | -       |
| 동남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262,100      | 262,100     | -       |
| 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83,790       | 83,790      | -       |
|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 91,159       | 91,159      | -       |
| 7학년 교실 운영                         | 92,004       | 92,004      | -       |
| <b>6.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b>         | 394,321      | 394,321     | -       |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 180,665      | 180,665     | -       |
|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 31,871       | 31,871      | -       |
|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 26,255       | 26,255      | -       |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 155,530      | 155,530     | -       |

| 구 분                               | 2025년 본예산(A)     | 1차 추경(안)(B)      | 증감(B-A)        |
|-----------------------------------|------------------|------------------|----------------|
| <b>7.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b>          | 635,651          | 635,651          | -              |
| 중부권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188,840          | 188,840          | -              |
| 동남권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337,836          | 337,836          | -              |
| 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108,975          | 108,975          | -              |
| <b>8.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북합평생교육센터) 운영</b> | <b>1,288,254</b> | <b>1,704,254</b> | <b>416,000</b> |
|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147,900          | 147,900          | -              |
| 다시가는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326,780          | 326,780          | -              |
| 다시가는 캠퍼스 커뮤니티/일자리연계 지원            | 6,500            | 6,500            | -              |
| 다시가는 캠퍼스 홍보 및 행사 운영               | 93,000           | 93,000           | -              |
|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 <b>714,074</b>   | <b>1,130,074</b> | <b>416,000</b> |
| <b>일반관리비 소계</b>                   | 5,973,041        | 5,973,041        | -              |
| 인건비                               | 4,066,834        | 4,066,834        | -              |
| 운영경비                              | 1,906,207        | 1,906,207        | -              |
| <b>예비비(보급예비비) 소계</b>              | 655,051          | 655,051          | -              |
| 인건비                               | 561,888          | 561,888          | -              |
| 운영경비                              | 93,163           | 93,163           | -              |

##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등 경제 산업분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경제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서울경제진흥원에 출연코자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나. 주요사무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해외 판로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첨단산업 기술진흥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등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 사업

다.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는 재단의 설립 · 시설 ·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서울시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으로 서울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서울 경제 활성화

라. 출연기관 개요

- 소 재 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 시설규모: 대지 9,864.2㎡, 연면적 43,609㎡ (지하4층 ~ 지상14층) 중 74%
- 지원시설 및 위치도: (붙임1) 참조

## 3. 소요예산

○ 2025년 출연금액 : 59,721백만원

－ ' 25년 출연금 본예산 58,321백만원에 1차 추경(안) 1,400백만원 증액. 총 59,721백만 원을 출연금으로 추계

(단위: 백만원)

| 세 입     |        |        |        | 세 출   |        |        |        |
|---------|--------|--------|--------|-------|--------|--------|--------|
|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     |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     |
| 총계      | 93,857 | 88,704 | △5,153 | 총계    | 93,857 | 88,704 | △5,153 |
| 고유사업    | 13,265 | 12,443 | △822   | 고유사업비 | 52,432 | 45,815 | △6,617 |
| 시설운영    | 6,286  | 6,456  | 170    | 시설운영비 | 6,408  | 6,523  | 115    |
| 수탁수수료 등 | 1,500  | 1,500  | 0      | 기관운영비 | 34,479 | 35,647 | 1,168  |
| 사업외수입   | 2,900  | 3,000  | 100    | 예비비   | 538    | 719    | 181    |
| 잉여금     | 3,066  | 5,584  | 2,518  |       |        |        |        |
| 출연금     | 66,840 | 59,721 | △7,119 |       |        |        |        |

※ 현재 ' 25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검토 과정에 있어 출연금 규모는 추계액으로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수탁사업 예산 제외)

○ 2025년 추경 내역 : 총1,400,000천원 증액

－ 해외시장진출지원 : 600,000천원 증

▶ 해외 인증·물류·컨설팅 등 맞춤형 수출 바우처 지원을 통해 수출 피해 최소화

－ 하이서울기업지원 : 130,000천원 증

▶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회·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 글로벌커머스사업운영 : 270,000천원 증

▶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입점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 서울AI로봇쇼 개최 : 300,000천원 증

▶ 경진대회, 로봇 전시, 시연 및 체험, 밋업 등을 통한 로봇산업 저변 확대 지원

－ 디지털 역량(AI) 교육운영 지원 : 100,000천원 증

▶ AI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경력 전환 및 경제 참여 기회 증대

○ 산출근거 : (붙임2) 참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붙임 : 1. 관리시설 및 위치도 1부.

2.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결산보고서 1부(따로 붙임)

※ 작성자 : 경제실 경제정책과 전민주 (☎ 2133-5125)

## 붙임1

## 관리시설 및 위치도

(' 25년 4월 기준)

|    |                               |                                                                                                                                                                                                                                           |                                                                                       |
|----|-------------------------------|-------------------------------------------------------------------------------------------------------------------------------------------------------------------------------------------------------------------------------------------|---------------------------------------------------------------------------------------|
| 창업 | 서울창업허브<br>(공덕)<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br/>※ 개관: 2017. 6. 21. / 준공일: 1984. 12. 28.</li> <li>• 규모: 연면적 18,490㎡(본관 10층), 5,652㎡(별관 4층)</li> <li>• 시설: 기업보육실(106개실), 코워킹스페이스, 키친인큐베이터, 제품화지원센터 등</li> </ul>     |    |
|    | 서울창업허브<br>(성수)<br>수탁사업(임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성수동)<br/>※ 개관: 2011. 7. 14. / 재개관: 2020. 7. 6.(창업허브 성수)</li> <li>• 규모: 5,492㎡</li> <li>• 시설: 기업보육실(24개실), 비즈니스라운지, 오픈이노베이션센터, 회의실 등</li> </ul>                            |    |
|    | 서울창업허브<br>(M+)<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마곡중앙8로 14(마곡동)<br/>※ 준공일: 2021. 11. 11.</li> <li>• 규모: 3,529㎡, 연면적 21,600㎡</li> <li>• 시설: 기업보육실(75개실), 글로벌파트너스, 이노베이션홀, 회의실, 커뮤니티홀 등</li> </ul>                                          |    |
|    | 서울창업허브<br>(창동)<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창동)<br/>※ 운영개시: 2021. 5. 3. / 준공일: 2020. 10. 24.</li> <li>• 규모: 대지 8,978㎡, 총면적 17,745㎡</li> <li>• 시설: 기업보육실(30개실), 오픈이노베이션센터, 뉴미디어 스튜디오, 코워킹스페이스 등</li> </ul>              |   |
|    | 서울창업센터<br>(동작)<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플라자(대방동) 1~7층<br/>※ 운영개시: 2022. 10. 20. / 재개관: 2023. 11. 6. / 준공일: 2020. 10. 30.</li> <li>• 규모: 연면적 2,887.4㎡</li> <li>• 시설: 기업보육실(30개실), 비즈니스라운지, 휴게실, 회의실 등</li> </ul> |  |
|    | 서울창업허브<br>스케일업센터<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1층, 2층<br/>※ 개관: 2023. 4. 27. / 준공일: 2022. 12. 26.</li> <li>• 규모: 연면적 2,740㎡</li> <li>• 시설: 전문IR룸, 네트워킹 공간, 회의실, 입주공간 등</li> </ul>                            |  |
|    | 인베스트서울<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빌딩 6층(서린동)<br/>※ 개관: 2008. 1. 1.</li> <li>• 규모: 590㎡</li> <li>• 시설: 개방형 상담석, 회의실, 다목적실(20인실), 사무실 등</li> </ul>                                                          |  |

|                  |                                           |                                                                                                                                                                                                                                                            |                                                                                       |
|------------------|-------------------------------------------|------------------------------------------------------------------------------------------------------------------------------------------------------------------------------------------------------------------------------------------------------------|---------------------------------------------------------------------------------------|
|                  | <b>서울국제<br/>금융오피스<br/>수탁사업(시소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목적: 국제금융도시 서울 및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li> <li>•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16, 17층</li> <li>• 규모: 16층(1,694㎡), 17층(1,693㎡)</li> <li>• 시설: 입주기업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대/중형 강의실 등</li> </ul>                               |    |
| <b>매출<br/>증대</b> | <b>글로벌마케팅센터<br/>공유사업(시소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등촌동)<br/>※ 준공일: 1987. 5. 31.(A,B동) / 2000. 11. 30.(C동)</li> <li>• 규모: 대지 8,061.5㎡, 연면적 9,207㎡ (건물 3개동)</li> <li>• 시설: 글로벌커머스플랫폼 및 협력사, 수출서비스 기업, 협·단체, 서울어워드 라운지,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li> </ul> |    |
| <b>인재<br/>양성</b> | <b>청년취업사관학교<br/>영등포 캠퍼스<br/>수탁사업(시소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30(문래동)</li> <li>• 규모: 3,611.31㎡ (지하1층~지상3층) ※ 개관: 2020. 10.</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6개, 오픈캠프 2개, 집중학습룸 4개), 휴게공간(커뮤니티라운지, 오픈스터디룸, 프리존 등), 사무실 등</li> </ul>                                    |    |
|                  | <b>청년취업사관학교<br/>금천 캠퍼스<br/>수탁사업(임차)</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70 B동(독산동)</li> <li>• 규모: 1,632㎡ (지하1층 ~ 지상4층) ※ 개관: 2021. 12.</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4, 집중학습룸3, 오픈캠프1), 휴게공간(커뮤니티라운지, 여성휴게실, 프리존 등), 사무실 등</li> </ul>                                            |   |
|                  | <b>청년취업사관학교<br/>용산 캠퍼스<br/>수탁사업(임차)</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09(한강로3가)</li> <li>• 규모: 1,419.08㎡ (지상3층) ※ 개관: 2022. 11.</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4개, 집중학습룸 2개, 오픈캠프 2개), 휴게공간(커뮤니티라운지, 오픈스터디룸 등),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b>인재<br/>양성</b> | <b>청년취업사관학교<br/>강서 캠퍼스<br/>수탁사업(시소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등촌동)</li> <li>• 규모: 1,019.23㎡ (지상1층) ※ 개관: 2022. 11. / 리모델링: 2024. 6.</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4개), 휴게공간(커뮤니티라운지, 오픈스터디룸), 사무실 등</li> </ul>                                                 |  |
|                  | <b>청년취업사관학교<br/>강동 캠퍼스<br/>수탁사업(임차)</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429(강일동)</li> <li>• 규모: 1,201.94㎡ (지상4~5층) ※ 개관: 2022. 12.</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4개, 오픈캠프 2개), 휴게공간(커뮤니티라운지, 오픈스터디룸, OA룸 등), 사무실 등</li> </ul>                                                   |  |
|                  | <b>청년취업사관학교<br/>동작 캠퍼스<br/>수탁사업(시소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li> <li>• 규모: 360㎡ (지상2층) ※ 개관: 2022. 12.</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2개), 휴게공간(커뮤니티라운지), 사무실 등</li> </ul>                                                                                  |  |

|          |                                  |                                                                                                                                                                                           |                                                                                       |
|----------|----------------------------------|-------------------------------------------------------------------------------------------------------------------------------------------------------------------------------------------|---------------------------------------------------------------------------------------|
|          | 청년취업사관학교<br>광진 캠퍼스<br>수탁사업(구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6(자양동)</li> <li>• 규모: 326.13㎡ (지상1~2층) ※ 개관: 2023. 5.</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2개), 라운지,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 청년취업사관학교<br>서대문 캠퍼스<br>수탁사업(구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19(창천동)</li> <li>• 규모: 808.21㎡ (지하1층~지상2층) ※ 개관: 2023. 6.</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1개, 집중학습룸 3개), 라운지,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 청년취업사관학교<br>성동 캠퍼스<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64(용답동)</li> <li>• 규모: 1,069.28㎡ ※ 개관: 2023. 10.</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4개, 집중학습룸 2개), 라운지,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 청년취업사관학교<br>동대문 캠퍼스<br>수탁사업(구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2길 78(용두동)</li> <li>• 규모: 2,726.66㎡ ※ 개관: 2023. 11.</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4개, 오픈캠프 2개, 집중학습룸 2개), 라운지,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 청년취업사관학교<br>성북 캠퍼스<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2(하월곡동)</li> <li>• 규모: 523.89㎡ ※ 개관: 2023. 12.</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2개), 라운지,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 청년취업사관학교<br>도봉 캠퍼스<br>수탁사업(SH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창동)</li> <li>• 규모: 2,348.58㎡ ※ 개관: 2023. 12.</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6개, 오픈캠프 2개, 집중학습룸 1개), 라운지,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 청년취업사관학교<br>강북 캠퍼스<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강북구 삼양로 595(우이동), 도봉구 삼양로 592(쌍문동)</li> <li>• 규모: 554.44㎡ ※ 개관: 2024. 6.</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2개, 집중학습룸 1개), 라운지,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인재<br>양성 | 청년취업사관학교<br>관악 캠퍼스<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관악구 관악로 140(봉천동)</li> <li>• 규모: 388.38㎡ ※ 개관: 2024. 9.</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1개, 집중학습룸 1개), 라운지,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 청년취업사관학교<br>노원 캠퍼스<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C동(공릉동)</li> <li>• 규모: 588.33㎡ ※ 개관: 2024. 10.</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2개), 라운지,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 청년취업사관학교<br>은평 캠퍼스<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일부 및 4층(녹번동)</li> <li>• 규모: 908.55㎡ ※ 개관: 2024. 12.</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3개, 집중학습실 1개), 라운지, 사무실, 회의실 등</li> </ul>        |  |

|                                               |                                                                                                                                                                                                                                                                                                       |                                                                                      |
|-----------------------------------------------|-------------------------------------------------------------------------------------------------------------------------------------------------------------------------------------------------------------------------------------------------------------------------------------------------------|--------------------------------------------------------------------------------------|
| 청년취업사관학교<br>강남 캠퍼스<br>수탁사업(임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컨벤션센터 3층</li> <li>• 규모: 998.00㎡ ※ 개관: 2024. 12.</li> <li>• 시설: 교육공간(클래스 3개, 집중학습실 2개), 라운지, 사무실 등</li> </ul>                                                                                                                             |    |
| G밸리 창업큐브<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가산동) G밸리창업복지센터 6~10층<br/>※ 개관: 2022. 5. / 준공일: 2021. 11.</li> <li>• 규모: 2,373㎡</li> <li>• 시설: 커뮤니티 시설, 창업지원·회의·네트워킹 공간, 공용 세탁실 등</li> </ul>                                                                                          |    |
| DMC<br>첨단산업센터<br>※ 자립형<br>공공위탁<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상암동)<br/>※ 개관: 2008. 10. 27. / 준공일: 2008. 3. 28.</li> <li>• 규모: 대지 17,070㎡, 연면적 77,190㎡ (지하2층~지상8층)</li> <li>• 시설: 임대사무실, 회의실, 편의시설 등</li> </ul>                                                                                         |    |
| DMC산학협력<br>연구센터<br>※ 자립형<br>공공위탁<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상암동)<br/>※ 개관: 2006. 11. 29. / 준공일: 2006. 8. 9.</li> <li>• 규모: 대지 3,367㎡, 연면적 29,759㎡ (지하4층~지상15층)</li> <li>• 시설: 대학 및 기업연구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li> </ul>                                                                                     |    |
| SETEC전시장<br>※ 자립형<br>공공위탁<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대치동)<br/>※ SBA 인수운영: 2005. 10. 1. / 준공일: 1999. 5.</li> <li>• 규모: 대지 31,000㎡, 연면적 11,019㎡</li> <li>• 시설: 1~3전시실, 옥외전시장, 컨퍼런스룸, 휴게실 등</li> </ul>                                                                                        |   |
| 서울파트너스하우<br>스<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38(한남동)</li> <li>• 규모: 대지 3,012㎡, 연면적 2,720㎡</li> <li>• 시설: 컨벤션홀, 간담회장 등</li> </ul>                                                                                                                                                        |  |
| 미디어<br>콘텐츠센터<br>& 서울게임<br>콘텐츠센터<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시너지움</li> <li>• 규모: 전용면적 4,299㎡ (5~10층)</li> <li>• 시설<br/>           [미디어콘텐츠센터]<br/>           - 5~7층: 후반작업 스튜디오, 1인 미디어 스튜디오, 공용 오피스 등<br/>           [서울게임콘텐츠센터]<br/>           - 8~10층: 게임개발자공간, 스튜디오, 회의실, 사무실 등         </li> </ul> |  |
| 상상비즈<br>아카데미<br>수탁사업(임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중구 퇴계로 20길 42(예장동)</li> <li>• 규모: 438㎡ (舊 재미랑1호)</li> <li>• 시설: 디지털교육장, 자율학습실, 로비/휴게실, 사무실 등</li> </ul>                                                                                                                                                  |  |
| 콘텐츠팩토리<br>공유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li> <li>• 규모: 711㎡ (총 2개소)</li> <li>• 시설: 입주기업 지원시설, 휴게공간, 회의실, 다목적실</li> </ul>                                                                                                                                                       |  |

|         |                                    |                                                                                                                                                                                                               |                                                                                     |
|---------|------------------------------------|---------------------------------------------------------------------------------------------------------------------------------------------------------------------------------------------------------------|-------------------------------------------------------------------------------------|
| 뷰티·패션산업 | 서울<br>도시제조허브<br>수탁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9(성수동)</li> <li>• 규모: 대지 559㎡, 연면적 2,710㎡(지하2층~7층)</li> <li>• 시설: 패션협업쇼룸, 팝업 전시장, 스튜디오, 디지털 콘텐츠 제작실, 공용장비실, 협업아틀리에, 컴퓨터실, 회의실, 사무공간 등</li> </ul> |  |
|         | 뷰티복합문화공간<br>(B the B)<br>고유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DDP마켓 지하2층(광희동)</li> <li>• 규모: 면적 1,218㎡</li> <li>• 시설: 서울 뷰티 기업 및 첨단기술 체험형 상설 전시, 서울 유망 뷰티 기업과 이종산업 간 협업 전시</li> </ul>                           |  |
|         | DDP쇼룸<br>고유사업(시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디자인랩 1, 2층</li> <li>• 규모: 면적 3,968㎡</li> <li>• 시설: (1층) 전시, 휴게, 임대, 판매 공간(스테이지, 멀티샵, 팝업존),<br/>(2층) 패션 비즈니스공간(샘플스토어, 스튜디오, 크리에이터룸 등)</li> </ul>   |  |

붙임2

(재)서울특별시경제진흥원 ' 25년 사업별 추경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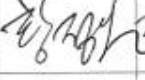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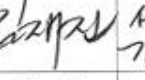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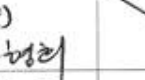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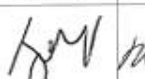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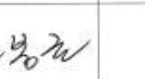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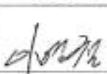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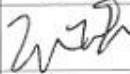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분     |                   | 2024년      | 2025년      |            |
|--------|-------------------|------------|------------|------------|
|        |                   |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
| 총 계    |                   | 93,857,088 | 87,303,622 | 88,703,622 |
| 고유사업   |                   | 52,431,913 | 44,414,733 | 45,814,733 |
|        |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 2,790,000  | 2,079,185  | 2,079,185  |
|        | 미래혁신산업지원          | 2,310,100  | 2,174,800  | 2,174,800  |
|        | 글로벌 커머스 사업 운영     | 5,065,175  | 5,065,175  | 5,335,175  |
|        | 해외시장진출지원          | 2,870,725  | 3,090,931  | 3,690,931  |
|        | 하이서울기업지원          | 3,410,000  | 2,025,000  | 2,155,000  |
|        | 서울시로봇쇼 개최         | -          | 1,531,900  | 1,831,900  |
|        | DMC 활성화 지원        | 746,000    | 474,860    | 474,860    |
|        | DMC 인프라 운영        | 8,060,727  | 7,531,853  | 7,531,853  |
|        | G밸리 활성화 지원        | 1,121,978  | 997,140    | 997,140    |
|        |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      | 3,547,467  | 840,000    | 840,000    |
|        | 콘텐츠기업지원           | 3,505,248  | 4,174,000  | 4,174,000  |
|        | 서울콘(SeoulCon)     | 2,500,000  | 3,600,000  | 3,600,000  |
|        | 패션산업 육성           | 1,200,000  | 1,350,000  | 1,350,000  |
|        | 비더비 운영 및 기업지원     | 5,287,975  | 5,284,536  | 5,284,536  |
|        | DDP소통 운영          | 4,663,848  | 3,931,533  | 3,931,533  |
|        | 첨단기술 전시운영         | 3,783,670  | 263,820    | 263,820    |
|        | 고용지원              | 1,569,000  | -          | -          |
|        | 디지털 역량(AI)교육운영 지원 | -          | -          | 100,000    |
| 시설운영경비 |                   | 6,407,952  | 6,522,355  | 6,522,355  |
|        | 본사건물 관리운영         | 4,482,637  | 4,459,637  | 4,459,637  |
|        | 컨벤션센터 관리운영        | 1,618,280  | 1,758,355  | 1,758,355  |
|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 307,035    | 304,363    | 304,363    |
| 기관운영경비 |                   | 34,479,223 | 35,647,315 | 35,647,315 |
|        | 인건비 및 성과급         | 18,697,033 | 19,324,104 | 19,324,104 |
|        | 시설서비스직운영          | 8,077,416  | 8,616,358  | 8,616,358  |
|        | 경영관리 및 기본경비       | 7,704,774  | 7,706,853  | 7,706,853  |
| 예비비    |                   | 538,000    | 719,219    | 719,219    |

붙임3

서울경제진흥원 제124회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제124회 이사회 의결서

|              |     |                                                                                   |                                                                                   |                                                                                   |                                                                                   |                                                                                    |                                                                                     |
|--------------|-----|-----------------------------------------------------------------------------------|-----------------------------------------------------------------------------------|-----------------------------------------------------------------------------------|-----------------------------------------------------------------------------------|------------------------------------------------------------------------------------|-------------------------------------------------------------------------------------|
| 의결자          | 직 위 | 대표이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              | 성 명 | 김현우                                                                               | 황정일                                                                               | 김재진                                                                               | 강석                                                                                | 이병권                                                                                | 배상민                                                                                 |
|              | 날 인 |  |  |  |  |  |                                                                                     |
|              | 직 위 | 이 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                                                                                     |
|              | 성 명 | 최진우                                                                               | 나종민                                                                               | 진종원                                                                               | 손봉균                                                                               |                                                                                    |                                                                                     |
|              | 날 인 |  |  |  |  |                                                                                    |                                                                                     |
| 의 결 일 자      |     |                                                                                   | 의 결 장 소                                                                           |                                                                                   |                                                                                   | 감 사                                                                                |                                                                                     |
| 2025. 2. 28. |     |                                                                                   | 서울경제진흥원 본사 14층 대회의실                                                               |                                                                                   |                                                                                   |  |  |
| 의안번호         |     | 제 목                                                                               |                                                                                   |                                                                                   |                                                                                   | 결 과                                                                                | 비 고                                                                                 |
| 500          |     | 2024년 재무회계 결산(안)                                                                  |                                                                                   |                                                                                   |                                                                                   | 원안의결                                                                               |                                                                                     |
| 501          |     |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세제잉여금 처분(안)                                                   |                                                                                   |                                                                                   |                                                                                   | 원안의결                                                                               |                                                                                     |
| 502          |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                                                                                   |                                                                                   |                                                                                   | 원안의결                                                                               |                                                                                     |
| 503          |     |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안)                                                              |                                                                                   |                                                                                   |                                                                                   | 원안의결                                                                               |                                                                                     |
| 504          |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안)                                                                     |                                                                                   |                                                                                   |                                                                                   | 원안의결                                                                               |                                                                                     |
| 505          |     |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추천위원 추천(안)                                                            |                                                                                   |                                                                                   |                                                                                   | 원안의결                                                                               | 市 당연직 위원은<br>참여하지 않음                                                                |
| 506          |     | 임원 인사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                                                                                   | 원안의결                                                                               |                                                                                     |
| 507          |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                                                                                   | 원안의결                                                                               |                                                                                     |
| 508          |     | 시설서비스직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                                                                                   | 원안의결                                                                               |                                                                                     |
| 509          |     |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                                                                                   | 원안의결                                                                               |                                                                                     |
| 510          |     |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원안의결                                                                               |                                                                                     |

2025년 2월 28일

작성자 김영빈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운영 중임
- 나. '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투자계정 전출금이 편성되어 '25년 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자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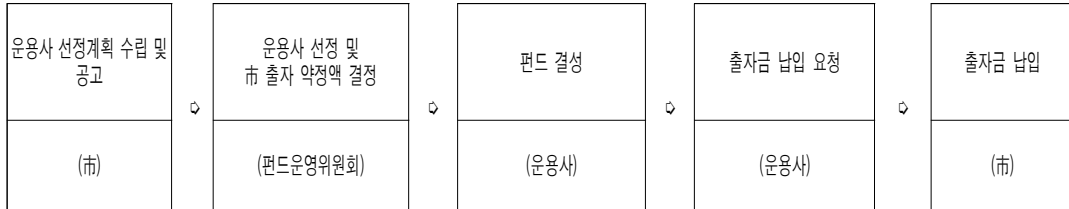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 나. 출자 개요

## ○ 출자사업

| 펀드명               | 市 출자약정액 | 조성액        | 조성기간      |
|-------------------|---------|------------|-----------|
| 미래혁신성장 펀드         | 1,751억원 | 3조 6,857억원 | '19년~'22년 |
| 서울 Vision 2030 펀드 | 3,500억원 | 5조원(목표)    | '23년~'26년 |
|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 20억원    | 200억원      | '23년      |

< 서울시 벤처펀드 출자 방식 >



-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 펀드 결성
- \* 투자기간(4년) 동안 출자금 분할 납입 → 회수기간(4년) 동안 출자금 회수  
(출자금 납입 후 출자증권 취득)

○ 출자 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 25년 출자계획 변경(안) : 829억원
  - 서울 Vision 2030 펀드 : 697억원(추경 100억원)
  - 미래혁신성장펀드 : 116억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 9억원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7억원(추경, 민생노동국 신규 출자)

다. 출자 필요성

- 총 3.7조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 펀드는 ' 19년부터 조성되어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 피투자기업 1,549개사, 매출증대 4조 4,387억원, 고용창출 22,415명(' 24년말 기준)
- 총 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 24년까지 2.6조원 규모의 펀드  
를 조성하였으며, 인공지능 펀드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 함
  - \* ' 23년 700억원, ' 24년 810억원 市 출자약정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중  
(피투자기업 357개사, 매출증대 7,229억원, 고용창출 1,314명(' 24년말 기준))
- ' 23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는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투자하여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 23년 조성 후 4개사 27억원 투자(' 24년말 기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송정민 (☎ 2133-4757)

## [붙임]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계획(안)

| 분 야               | 주 요 내 용                        | 출 자 액 |          |
|-------------------|--------------------------------|-------|----------|
|                   |                                | 당초 계획 | ' 25년 변경 |
| 계                 |                                | 602억원 | 829억원    |
| 미래혁신성장 펀드         |                                | 116억원 | 116억원    |
| ① 4차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지원                | 11억원  | 11억원     |
| ②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솔루션 분야 지원          | 38억원  | 38억원     |
| ③ 창업지원            | 원천기술, 지식 기반 창업기업 지원            | 18억원  | 18억원     |
| ④ 재도전지원           |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 지원        | 8억원   | 8억원      |
| ⑤ 서울바이오           |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 36억원  | 36억원     |
| ⑥ 문화콘텐츠           |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산업 지원               | 5억원   | 5억원      |
| 서울 Vision 2030 펀드 |                                | 477억원 | 697억원    |
| ① 디지털대전환          | 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기술 지원              | 71억원  | 89억원     |
| ② 인공지능대전환         | 인공지능(AI) 기반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기업 지원 | -     | 50억원     |
| ③서울바이오            |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유망기업 지원          | 60억원  | 110억원    |
| ④첨단제조             | 첨단기술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 및 신제품 생산기업 지원 | 58억원  | 73억원     |
| ⑤창조산업             | 지식재산권 기반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종합 지원   | 75억원  | 94억원     |
| ⑥ 첫걸음 동행          | 창업 초기기업, 경영위기채창업 기업, 대학창업기업 지원 | 49억원  | 76억원     |
| ⑦스케일업             | 스케일업 및 해외 진출 지원                | 144억원 | 180억원    |
| ⑧창업지원             | 초기창업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              | 20억원  | 25억원     |
| 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     |                                | 9억원   | 9억원      |
| 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     |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 산업 지원             | 9억원   | 9억원      |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 -     | 7억원      |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혁신성장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 -     | 7억원      |

※ ' 25년도 시장상황 및 운용사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악화된 대외여건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신규편성 및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함
- 나. 이에 따라 추가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2025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송휘영(☎2133-9540)

## 붙임 1.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 현황

- 2.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 이사회 의사록
- 4. 결산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출자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취약 소상공인 “보호”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 체계적 “성장” 정책 병행 필요
- 나. 이에 서울시는 혁신 · 성장 소상공인 육성의 마중물이 될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전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출자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 나. 출자방향

- 공익성(소상공인 성장 유도)과 수익성(적정 수익률)의 조화
-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용
- 혁신 · 성장 소상공인 발굴-투자-육성 지원으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다. 출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마. 출자의 필요성

- 기존 취약 소상공인 “보호”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성장·육성” 정책 병행 필요
  -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과밀구조로 인해 단기간 내 반복적인 창업과 폐업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곤란
    - ▶ 높은 자영업자 비중(‘22) : 23.5% (OECD 회원국 중 7위)
    - ▶ 낮은 생존율(‘24) : 창업후 1년 64.9%, 3년 46.9%, 5년 34.7%
  - 이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기존의 취약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육성 정책 추진
- 소규모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
  - 기술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존 펀드는 기업당 높은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나, 소상공인분야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거나 경영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고 그 투자효과도 단기에 나타나 리스크가 적음<sup>1)</sup>

-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사업” 과 연계 추진하여 혁신·성장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임

### 3. 투자조합 출자 계획

#### 가. 추진방향

-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도약이 어려운 소상공인 발굴 투자
-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금융 투자 유도

#### 나. '25년 펀드 출자 계획(안)

- 펀드명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결성목표 : 50억원 (시 30억원, 민간 20억원)
- 자금구성 : 시 출자금 + 운용사(GP) + 기타 자금 등
- 운용기간 : 총 8년(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
- 투자대상 :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 정은애(2022), 「기업가형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나. 예산조치 : 2025년 중소기업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에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김효진 (☎2133-5190)

붙 임 : 서울시 혁신·성장 소상공인 육성계획 1부. 끝.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추가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나. 추정개요

- 1) 추정예산 : 290,000천원
  - ※ 총 출연금액 53,979,275천원 (기 출연금 53,689,275천원)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2) 출연금 편성 내용
  - 순수공연예술 통합브랜드 : 290,000천원
- 3) 추정필요성
  - 신규 개발중인 가을 축제브랜드의 시민인지도 제고 위한 개막행사 개최비용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출연금 증액이 필요

다.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 1)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 2) 규 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6층 건물)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정유진 (☎ 2133-2555)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AI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AI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무명 : 서울AI재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3) 필요성 : 서울AI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상적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강화
  -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사업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 나. 추정개요

- 1) 추정예산 : 2,889,881천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2025년 총 출연금액 13,747,110천원 (기존 10,857,229천원)
- 2) 출연금 편성 내용
  - 인건비 : 190,060천원
  - 사업비 : 2,699,821천원

| 사업명 | 예산(만)   | 증액사유                  |
|-----|---------|-----------------------|
| 인건비 | 190,060 | 인력 증원 등 AI재단으로의 개편 비용 |

| 사업명              | 예산(안)     | 증액사유                          |
|------------------|-----------|-------------------------------|
| 글로벌 AI연구소 운영     | 1,901,000 | 선진 AI 기술의 국제적 협력 필요성 증대       |
| 서울 AI플랫폼 구축      | 302,421   | AI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교류            |
| 약자동행 시민 시에이전트 개발 | 296,400   | AI기반 디지털 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
| AI 경진대회          | 200,000   |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 및 AI 인재 양성 |
| 합 계              | 2,889,881 |                               |

### 3) 추경 필요성

-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선진 AI기술의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을 서울에 구축, AI 연구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AI연구 몰입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AI 연구소 유치
- AI협력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AI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력 플랫폼 구축
- AI 확산에 따른 고령층 소외 해소를 위해 생성형 AI를 비서형으로 확장하여 고령층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
- AI트렌드를 반영하여 AI기술을 활용하는 시민대상 해커톤 등을 개최하여 AI 인재양성 및 관련 분야 취·창업 활성화 촉진

### 다. 서울AI재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트움 16층
- 2) 규모(전용) : 1,738(700)m<sup>2</sup>
- 3) 위치도



|      |                                          |
|------|------------------------------------------|
| 지역여건 |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경의중앙선, 공항철도, 6호선)에서 도보 15분 |
|------|------------------------------------------|

라. 이사회 회의록 : 붙임1

마. 결산보고서 : 붙임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원기철 (☎ 2133-2919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서울디자인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구 분                     | 시설현황                                                                                                                                                                                                      |                                                                                       |
|-------------------------|-----------------------------------------------------------------------------------------------------------------------------------------------------------------------------------------------------------|---------------------------------------------------------------------------------------|
| 서울<br>디자인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83</li> <li>- 규 모 : 사용면적 2,695㎡<br/>(지하1층, 지상1,3층, 지상6~9층)</li> <li>- 시설소유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li> <li>- 주요시설 : 경영본부, 디자인산업본부 등 사무실</li> </ul> |   |
| DDP 등<br>(수탁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li> <li>- 시설소유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관리위탁)</li> <li>- 주요시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이간수문전시장 외 3개소), 디자인문화본부 사무실</li> </ul>                 |  |
| 서울디자인<br>창업센터<br>(고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길 19</li> <li>- 규 모 : 사용면적 2,987㎡(지상3~5층)</li> <li>- 시설소유 : ㈜마포애경타운(시 무상사용)</li> <li>- 주요시설 : 입주기업 창작공간, 컨퍼런스 홀, 멤버십라운지, 운영 사무실 등</li> </ul>   |  |

| 구 분                      | 시설현황                                                                                                                                                                                                 |                                                                                     |
|--------------------------|------------------------------------------------------------------------------------------------------------------------------------------------------------------------------------------------------|-------------------------------------------------------------------------------------|
| 서울생활용<br>플라자센터<br>(수탁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li> <li>- 규 모 : 사용면적 16,530㎡(지하2~지상5층)</li> <li>- 시설소유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민간위탁)</li> <li>- 주요시설 : 꿈꾸는 공장, 소재은행, 미디어룸, 창작실 등</li> </ul> |  |

## ○ 근거법령

-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주요사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 다. 추경개요

- 추경예산 : 370,000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25년 총 출연금액 : 29,116,735천원(기정 출연금액 : 28,746,735천원)
- 출연금 편성 내용
  - DDP 시설운영경비(수선유지비) : 370,000천원
- 추경 필요성
  - ' 24년 서울시 무상대관 행사 증가에 따른 DDP 자체수입 보전을 위해 DDP 시설운영경비 편성 필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혜경 (☎ 2133-2704)

붙임 : 이사회 회의록 및 결산보고서(별첨)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예수금 이자 상환 지출항목 신설로 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 초과하여 변경되었음.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전년도(2024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1,162백만원에서 1,987백만원으로 825백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 금액이 기존 13백만원에서 68백만원으로 55백만원 증가하였음.

나. 지출계획상 일반예치금 786백만원 증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 39백만원을 신설함에 따라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674백만원에서 1,499백만원으로 82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122.3% 변경되었음.

다. 또한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농가 지원을 위한 “희망장터” 운영비 55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내역

## [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관/항/목 | 당 초       | 2차 변경<br>(A) | 3차 변경안<br>(B) | 증 감<br>(C=B-A) | 증감률<br>(D=C/A) |
|---------|-----------|--------------|---------------|----------------|----------------|
| 합 계     | 2,873,441 | 7,873,441    | 8,752,966     | 879,525        | 11.2%          |
| 세외수입    | 110,898   | 110,898      | 165,762       | 54,864         | 49.5%          |
| 경상적세외수입 | 98,177    | 98,177       | 98,177        | -              | -              |

| 장/관/항/목    |            | 당 초       | 2차 변경<br>(A) | 3차 변경안<br>(B) | 증 감<br>(C=B-A) | 증감률<br>(D=C/A) |
|------------|------------|-----------|--------------|---------------|----------------|----------------|
|            | 이자수입       | 98,177    | 98,177       | 98,177        | -              | -              |
|            | 공공예금이자수입   | 98,000    | 98,000       | 98,000        | -              | -              |
|            | 기타이자수입     | 177       | 177          | 177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12,721    | 12,721       | 67,585        | 54,864         | 431.3%         |
|            | 보조금반환수입    | 12,721    | 12,721       | 67,585        | 54,864         | 431.3%         |
|            | 자재보조금등반환수입 | 2,443     | 2,443        | 4,449         | 2,006          | 82.1%          |
|            | 위탁비반환수입    | 10,278    | 10,278       | 63,136        | 52,858         | 514.3%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2,762,543 | 7,762,543    | 8,587,204     | 824,661        | 10.6%          |
| 보전수입등      |            | 1,162,543 | 1,162,543    | 1,987,204     | 824,661        | 70.9%          |
|            | 예치금회수      | 1,162,543 | 1,162,543    | 1,987,204     | 824,661        | 70.9%          |
|            | 예치금회수      | 1,162,543 | 1,162,543    | 1,987,204     | 824,661        | 70.9%          |
| 내부거래       |            | 1,600,000 | 6,600,000    | 6,600,000     | -              | -              |
|            | 예탁금 및 예수금  | -         | 5,000,000    | 5,000,000     | -              | -              |
|            | 예수금수입      | -         | 5,000,000    | 5,000,000     | -              | -              |
| 전입금        |            | 1,600,000 | 1,600,000    | 1,600,000     | -              | -              |
|            | 기타회계전입금    | 1,600,000 | 1,600,000    | 1,600,000     | -              | -              |

## [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 당 초       | 1차 변경     | 2차 변경<br>(A) | 3차 변경안<br>(B) | 증 감<br>(C=B-A) | 증감률<br>(D=C/A) |
|------------------------|-----------|-----------|--------------|---------------|----------------|----------------|
| 합 계                    | 2,873,441 | 2,873,441 | 7,873,441    | 8,752,966     | 879,525        | 11.2%          |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 2,136,400 | 2,196,400 | 7,196,400    | 7,251,400     | 55,000         | 0.8%           |
|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 2,136,400 | 2,196,400 | 7,196,400    | 7,251,400     | 55,000         | 0.8%           |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 351,600   | 351,600   | 351,600      | 351,600       | -              | -              |
| 타 지방자치단체<br>재해·재난 구호지원 | 1,000,000 | 1,000,000 | 6,000,000    | 6,000,000     | -              | -              |
|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 277,000   | 277,000   | 277,000      | 277,000       | -              | -              |
|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           | 472,800   | 472,800   | 472,800      | 472,800       | -              | -              |
|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자원사업     | 35,000    | 35,000    | 35,000       | 35,000        | -              | -              |
|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   | -         | 60,000    | 60,000       | 60,000        | -              | -              |
| 산불 피해지역 “희망장터” 운영      | -         | -         | -            | 55,000        | 55,000         | 신설             |
| 재무활동                   | 734,041   | 674,041   | 674,041      | 1,498,566     | 824,525        | 122.3%         |
| 내부거래지출                 | -         | -         | -            | 38,576        | 38,576         | 신설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br>이자 상환  | -         | -         | -            | 38,576        | 38,576         | 신설             |
| 예수금 원리금 상환<br>(이자상환)   | -         | -         | -            | 38,576        | 38,576         | 신설             |
| 보전지출                   | 734,041   | 674,041   | 674,041      | 1,459,990     | 785,949        | 116.6%         |
| 여유자금 예치                | 734,041   | 674,041   | 674,041      | 1,459,990     | 785,949        | 116.6%         |
| 일반예치금                  | 734,041   | 674,041   | 674,041      | 1,459,990     | 785,949        | 116.6%         |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 당 초   | 1차 변경 | 2차 변경<br>(A) | 3차 변경안<br>(B) | 증 감<br>(C=B-A) | 증감률<br>(D=C/A) |
|--------------|-------|-------|--------------|---------------|----------------|----------------|
| 행정운영경비       | 3,000 | 3,000 | 3,000        | 3,000         | -              | -              |
| 기본경비         | 3,000 | 3,000 | 3,000        | 3,000         | -              | -              |
| 기금관리비        | 3,000 | 3,000 | 3,000        | 3,000         | -              | -              |

※ 최종 의회 의결액(2차 변경, 제329회 임시회) 대비 재무활동비 20% 초과(122.3%) 변경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행정국 대외협력과 이예리 (☎ 2133-6654)

##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및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

나. 운용규모 : 845,310백만원(당초 계획 대비 297,843백만원 증가)

## &lt;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gt;

(단위: 백만원)

| 〈 수입계획 〉    |           |           |             | 〈 지출계획 〉       |             |           |                         |
|-------------|-----------|-----------|-------------|----------------|-------------|-----------|-------------------------|
| 구분          | 당초<br>(A) | 변경<br>(B) | 증감<br>(B-A) | 구분             | 당초<br>(C)   | 변경<br>(D) | 증감<br>(D-C)             |
| 계           | 547,467   | 845,310   | 297,843     | 계              | 547,467     | 845,310   | 297,843                 |
| 전입금         | -         | 285,367   | 285,367     | 재무<br>활동       | 소계          | 547,236   | 845,045<br>(증 54.4%)    |
| 이자수입        | 38,568    | 40,770    | 2,202       |                | 차입금<br>원금상환 | 414,746   | 5,000<br>(증 1.2%)       |
| 예탁금<br>원금회수 | 80,000    | 80,000    | -           |                | 차입금<br>이자상환 | 131,920   | 2,510<br>(증 1.9%)       |
|             |           |           |             |                | 예치금         | 570       | 290,299<br>(증 50929.6%) |
| 예치금<br>회수   | 428,899   | 439,173   | 10,274      | 행정<br>운영<br>경비 | 소계          | 231       | 34<br>(증 14.7%)         |
|             |           |           |             |                | 기본경비        | 231       | 34<br>(증 14.7%)         |

## ○ 수입계획 변경

-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라 전입금 285,367백만원 증가
  - ▶ 전입금 : (당초) 0원 → (변경) 285,367백만원
    -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9,290억원) 중 법정 의무경비(3,583억원)를 공제한 잔액(5,707억원)의 50% 적립
- 전입금 수입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2백만원 증가
  - ▶ 이자수입 : (당초) 38,568백만원 → (변경) 40,770백만원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10,274백만원 증가
  - ▶ 예치금회수 : (당초) 428,899백만원 → (변경) 439,173백만원

## ○ 지출계획 변경

- 공자기금 원금 일부 조기상환 규모 확대로 차입금 원금상환 5,000백만원 증가
  - ▶ 차입금 원금상환 : (당초) 414,746백만원 → (변경) 419,746백만원
- 모집공채 발행 시기 분산으로 하반기 이자 상환액 2,510백만원 증가 및 기본경비(발행 수수료) 34백만원 증가
  - ▶ 차입금 이자상환 : (당초) 131,920백만원 → (변경) 134,430백만원
  - ▶ 기본경비 : (당초) 231백만원 → (변경) 26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연도말 예치금이 290,299백만원 증가
  - ▶ 예치금 : (당초) 570백만원 → (변경) 290,869백만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보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홍서영(☎ 2133-6866)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지정기부사업 모금액 반영으로 기금 수입계획이 변경되고, 온기창고 ‘다채로운’ 프로젝트 사업,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 사업 등 기금 사업 도입으로 기금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음.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전년도(2024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 상 예치금 회수금액이 598백만원에서 565백만원으로 33백만원 감소하였고, '24년 최종 모금액 및 지정기부사업 모금 목표액 50백만원을 반영하여 기부금 수입 목표표를 338백만원으로 조정하였음.

나.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민간위탁금을 신설하고, 사무관리비에 기금사업비를 반영함.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상 ‘정책사업’ 금액이 기존 142백만원에서 329백만원으로 증가하여 132.1% 변경되었고, 예치금 금액이 827백만원에서 582백만원으로 245백만원 감소하였음.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내역

[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장/관/항/목 | 당 초<br>(A)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br>(B) | 증 감<br>(C=B-A) | 증감률<br>(D=C/A) |
|---------|------------|---------------------|----------------|----------------|
| 합 계     | 979,998    | 921,244             | △58,754        | △6.0%          |
| 세외수입    | 381,490    | 355,591             | △25,899        | △6.8%          |
| 경상적세외수입 | 18,490     | 17,856              | △634           | △3.4%          |

| 장/관/항/목   |          | 당 초<br>(A)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br>(B) | 증 감<br>(C=B-A) | 증감률<br>(D=C/A) |
|-----------|----------|------------|---------------------|----------------|----------------|
|           | 이자수입     | 18,490     | 17,856              | △634           | △3.4%          |
|           | 공공예금이자수입 | 18,490     | 17,856              | △634           | △3.4%          |
|           | 임시적 세외수입 | 363,000    | 337,735             | △25,265        | △7.0%          |
|           | 기부금수입    | 363,000    | 337,735             | △25,265        | △7.0%          |
|           | 기부금수입    | 363,000    | 337,735             | △25,265        | △7.0%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 598,508    | 565,653             | △32,855        | △5.5%          |
|           | 보전수입등    | 598,508    | 565,653             | △32,855        | △5.5%          |
|           | 예치금회수    | 598,508    | 565,653             | △32,855        | △5.5%          |
|           | 예치금회수    | 598,508    | 565,653             | △32,855        | △5.5%          |

## [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 당 초<br>(A)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br>(B) | 증 감<br>(C=B-A) | 증감률<br>(D=C/A) |
|--------------|------------|---------------------|----------------|----------------|
| 합 계          | 979,998    | 921,244             | △58,754        | △6.0%          |
| 효율적 재정운영     | 141,900    | 329,321             | 187,421        | 132.1%         |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141,900    | 329,321             | 187,421        | 132.1%         |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                                                    | 당 초<br>(A)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br>(B) | 증 감<br>(C=B-A) | 증감률<br>(D=C/A) |
|--------------|----------------------------------------------------|------------|---------------------|----------------|----------------|
|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141,900    | 329,321             | 187,421        | 132.1%         |
|              | 사무관리비<br>○ 홍보비 등 33,000<br>○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 95,000 | 33,000     | 128,000             | 95,000         | 287.9%         |
|              | 기타보상금                                              | 108,900    | 101,321             | △7,579         | △7.0%          |
|              | 민간위탁금<br>○ 온기창고 '다채로움' 프로젝트 100,000                | -          | 100,000             | 100,000        | 신설             |
| 재무활동         |                                                    | 827,098    | 581,923             | △245,175       | △29.6%         |
|              | 보전지출                                               | 827,098    | 581,923             | △245,175       | △29.6%         |
|              | 여유자금 예치                                            | 827,098    | 581,923             | △245,175       | △29.6%         |
|              | 일반예치금                                              | 827,098    | 581,923             | △245,175       | △29.6%         |
| 행정운영경비       |                                                    | 11,000     | 10,000              | △1,000         | △9.1%          |
|              | 기본경비                                               | 11,000     | 10,000              | △1,000         | △9.1%          |
|              | 기금관리비                                              | 11,000     | 10,000              | △1,000         | △9.1%          |
|              | 사무관리비                                              | 11,000     | 10,000              | △1,000         | △9.1%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박현선 (☎ 2133-6876)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주요 변경사유로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제실 「서울 Vision2030 펀드」 2025년 신규 출자 100억원 및 민생노동국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신규 출자 7억원을 반영하고,

나.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가 126억원 증가 및 사업수입·사무대행비 정산 등을 반영하였음

다. 이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이 당초 852억원에서 1,121억원(269억원 증가)으로 증액됨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장관항목      |             | 당초<br>(A) | 변경안<br>(B) | 증감<br>(C=B-A) |
|-----------|-------------|-----------|------------|---------------|
| 수입합계      |             | 85,192    | 112,139    | 26,947        |
| 세외수입      |             | 6,923     | 10,508     | 3,585         |
|           | 사업수입(펀드회수금) | 5,000     | 9,000      | 4,000         |
|           | 이자수입        | 1,902     | 1,505      | -396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 78,269    | 101,631    | 23,362        |
|           | 예치금회수       | 44,859    | 57,521     | 12,662        |
|           | 전입금         | 33,410    | 44,110     | 10,700        |

##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당초<br>(A) | 변경안<br>(B) | 증감<br>(C=B-A) |
|---------------------|------------------------------------|-----------|------------|---------------|
| 지출합계                |                                    | 85,192    | 112,139    | 26,947        |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                                    | 60,674    | 83,374     | 22,700        |
|                     | 서울Vision2030펀드 및<br>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관리 | 60,674    | 82,674     | 22,000        |
|                     | 서울Vision2030 펀드 조성                 | 47,679    | 69,679     | 22,000        |
|                     | 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                    | 11,624    | 11,624     | 0             |
|                     | 서울 벤처펀드 운영(사무대행비)                  | 471       | 471        | 0             |
|                     |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조성                    | 900       | 900        | 0             |
|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 0         | 700        | 700           |
|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 0         | 700        | 700           |
|                     |                                    |           |            |               |
| 재무활동(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 24,498    | 28,745     | 4,247         |
|                     | 내부거래지출                             | 15,543    | 15,543     | 0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이자) 상환          | 13,970    | 13,970     | 0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원금) 상환          | 1,573     | 1,573      | 0             |
|                     |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8,955     | 13,202     | 4,247         |
|                     | 예치금                                | 8,955     | 13,202     | 4,247         |
|                     |                                    |           |            |               |
| 행정운영경비(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 20        | 20         | 0             |
|                     | 기본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20        | 20         | 0             |
|                     | 기본경비                               | 20        | 20         | 0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송정민 (☎ 2133-4757)

##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2024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액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인한 변경

[수입 ·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 수 입 계 획            |         |         |         | 지 출 계 획  |                        |         |         |        |  |
|--------------------|---------|---------|---------|----------|------------------------|---------|---------|--------|--|
| 항 목                | 당초(A)   | 변경(B)   | 증감(B-A) | 항 목      | 당초(A)                  | 변경(B)   | 증감(B-A) |        |  |
| 합 계                | 294,420 | 377,488 | 83,068  | 합 계      | 294,420                | 377,488 | 83,068  |        |  |
| 기금 융자금회수<br>(이자포함) | 164,750 | 164,750 | -       | 사업비      | 기금 융자금                 | 200,000 | 200,000 | -      |  |
|                    |         |         |         |          | 시중은행협력자금<br>이자보전금      | 86,200  | 86,900  | 700    |  |
| 공공예금<br>이자수입       | 3,790   | 3,790   | -       |          | 자금통합관리시스템<br>유지보수      | 301     | 301     | -      |  |
|                    |         |         |         |          |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 1,200   | 1,200   | -      |  |
| 예 처 금 수<br>회       | 85,880  | 158,248 | 72,368  | 재무<br>활동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br>상환    | 0       | 10,000  | 10,000 |  |
|                    |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br>이자 상환 | 2,420   | 2,420   | -      |  |
| 기타(일반)회계<br>전 입 금  | 40,000  | 50,700  | 10,700  |          | 예치금                    | 4,294   | 76,662  | 72,368 |  |
|                    |         |         |         |          | 기본경비                   | 5       | 5       | -      |  |

## [2025년 용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 당초(A)   | 변경(B)   | 증감(B-A)<br>(증감률)    | 비 고                         |
|--------------------|---------|---------|---------------------|-----------------------------|
| 합 계                | 294,420 | 377,488 | 83,068              |                             |
| 중소기업 금융지원          | 287,701 | 288,401 | 700<br>(0.24%)      |                             |
| 중소기업 직접융자          | 200,000 | 200,000 | -                   |                             |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 86,200  | 86,900  | 700                 | ·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
|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301     | 301     | -                   |                             |
|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 1,200   | 1,200   | -                   |                             |
| 행정운영경비             | 5       | 5       | -                   |                             |
| 기본경비(기금)           | 5       | 5       | -                   |                             |
| 재무활동               | 6,714   | 89,082  | 82,368<br>(1226.8%)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 | 2,420   | 12,420  | 10,000              |                             |
| 예수금원금상환            | -       | 10,000  | 10,000              | ·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
| 예수금이자상환            | 2,420   | 2,420   | -                   |                             |
| 예치금                | 4,294   | 76,662  | 72,368              | · 2024년도 결산결과에<br>따른 예치금 반영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10,700백만원 중)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 10,000백만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 : 700백만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김효진 (☎ 2133-5190)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 가.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으로 2025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변경내역 : 총 1개 정책사업(재무활동), 678백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조정내역      |           |               |                |
|--------------------|-----------|-----------|---------------|----------------|
|                    | 당초<br>(A) | 변경<br>(B) | 증감<br>(C=B-A) | 증감률<br>(D=C/A) |
| 체육진흥기금             | 14,290    | 14,968    | 678           | 4.7            |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 10,987    | 10,987    | -             | -              |
| 시민생활체육 진흥          | 1,196     | 1,196     | -             | -              |
| 일반예산(재무활동)         | 2,097     | 2,775     | 678           | 32.3           |
| 보전지출               | 2,097     | 2,775     | 678           | 32.3           |
| 여유자금 예치            | 2,097     | 2,775     | 678           | 32.3           |
| 행정운영경비             | 10        | 10        | -             | -              |

## 나.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lt;수입계획&gt;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계         | 14,290 | 14,968 |
| 이 자 수 입   | 2,337  | 2,337  |
| 전 입 금     | 7,388  | 7,388  |
| 예 치 금 회 수 | 4,565  | 5,243  |

## &lt;지출계획&gt;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계             | 14,290 | 14,968 |
| 비 용 자 성 사 업 비 | 12,183 | 12,183 |
| 기 본 경 비       | 10     | 10     |
| 여 유 자 금 예 치   | 2,097  | 2,775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김민주 (☎ 2133-2679)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변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2024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이 당초 3,367백만원에서 7,410백만원으로 4,043백만원 증가하여, 2025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 또한 4,043백만원 증가하였음

－ 증가사유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3,955백만원), 이자수입 (39백만원) 및 융자금 원금수입 (37백만원) 증가, 기본경비 집행잔액 (12백만원)

나. 예치금 증액에 따라 추가적인 예탁금원금 회수 불필요하여 「예탁금원금 회수」 금액 2,000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 이에,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 금액이 당초 188백만원에서 2,230백만원으로 2,043백만원 증액(1087.9%)되었음

[2025년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장·관·항      |         | 당초<br>(A) | 기금운용<br>계획변경안<br>(B) | 증감<br>(C=B-A) | 증감률<br>(D=C/A) |
|------------|---------|-----------|----------------------|---------------|----------------|
| 총 계        |         | 7,603     | 9,645                | 2,043         | 26.9           |
| 세외수입       |         | 159       | 159                  |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159       | 159                  | -             | -              |
|            | 이자수입    | 159       | 159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7,444     | 9,487                | 4,043         | 54.3           |
|            | 보전수입등   | 4,844     | 8,886                | 4,043         | 83.5           |
|            | 융자금원금수입 | 1,477     | 1,477                | -             | -              |
|            | 예치금회수   | 3,367     | 7,410                | 4,043         | 120.1          |

| 장·관·항 |         | 당초<br>(A) | 기금운용<br>계획변경안<br>(B) | 증감<br>(C=B-A) | 증감률<br>(D=C/A) |
|-------|---------|-----------|----------------------|---------------|----------------|
|       | 내부거래    | 2,600     | 600                  | △2,000        | △76.9          |
|       | 예탁금원금회수 | 2,000     | -                    | △2,000        | △100           |
|       | 예탁금이자수입 | 600       | 600                  | -             | -              |

## [2025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당초<br>(A) | 기금운용계획변<br>경안<br>(B) | 증감<br>(C=B-A) | 증감률<br>(D=C/A) |
|--------------------|--------------------------------|-----------|----------------------|---------------|----------------|
| 총 계                |                                | 7,603     | 9,645                | 2,043         | 26.9           |
| 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        |                                | 7,400     | 7,400                | -             | -              |
|                    | 장애인단체및사업지원<br>(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7,400     | 7,400                | -             | -              |
|                    |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7,400     | 7,400                | -             | -              |
| 일반예산(재무활동)         |                                | 188       | 2,230                | 2,043         | 1087.9         |
|                    | 보전지출<br>(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188       | 2,230                | 2,043         | 1087.9         |
|                    | 여유자금 예치<br>(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188       | 2,230                | 2,043         | 1087.9         |
| 기타                 |                                | 15        | 15                   | -             | -              |
|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15        | 15                   | -             | -              |
|                    | 기관관리비(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15        | 15                   | -             |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강지윤 (☎ 2133-7447)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자금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2025년도 수입계획 변경

－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을 자금 수입으로 신규 편성(증 1,810백만원)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증액(증 51백만원)하고자 함

※ 양성평등 가족 자금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 25년부터 매년 다둥이 행복카드 연단위 적립금을 자금 수입으로 편성 예정

## 나.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

－ 변경된 수입계획에 따라 예치금을 증액(1,745백만원)하고,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 35백만원, 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5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함

##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 ○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 구분(항목)            | ' 25년(A)<br>당초 계획 | ' 25년(B)<br>1차 변경 | ' 25년(C)<br>2차 변경 | 증 감<br>(C-A) | (C-A)*100/A |
|-------------------|-------------------|-------------------|-------------------|--------------|-------------|
| 합 계               | 2,088,024         | 2,088,024         | 3,949,226         | 1,861,202    | 89.1        |
| 216 이자수입          | 13,555            | 13,555            | 13,555            | -            | -           |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 13,306            | 13,306            | 13,306            | -            | -           |
| 216-03 기타이자수입     | 249               | 249               | 249               | -            | -           |
| 223 보조금반환수입       | 30,259            | 30,259            | 30,259            | -            | -           |
|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30,259            | 30,259            | 30,259            | -            | -           |
| 224 기타수입          | -                 | -                 | 1,809,788         | 1,809,788    |             |

|                |         |         |           |           |     |
|----------------|---------|---------|-----------|-----------|-----|
| 224-07 그외수입    | -       | -       | 1,809,788 | 1,809,788 |     |
| 714 예치금 회수     | 976,770 | 976,770 | 1,028,184 | 51,414    | 5.3 |
| 714-01 예치금회수   | 976,770 | 976,770 | 1,028,184 | 51,414    | 5.3 |
| 721 전입금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 722 예탁금및예수금    | 967,440 | 967,440 | 967,440   | -         | -   |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 967,440 | 967,440 | 967,440   | -         | -   |

## ○ 지출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

| 구분(정책단위·세부사업)              | ' 25년(A)<br>당초 계획 | ' 25년(B)<br>1차 변경 | ' 25년(C)<br>2차 변경 | 증 감<br>(C-A) | (C-A)*100/A |
|----------------------------|-------------------|-------------------|-------------------|--------------|-------------|
| 합 계                        | 2,088,024         | 2,088,024         | 3,949,226         | 1,861,202    | 89.1        |
| 성평등 증진                     | 1,117,000         | 1,148,000         | 1,233,000         | 116,000      | 10.4        |
| 여성 권익증진 사업<br>(양성평등 가족 기금) | 1,117,000         | 1,148,000         | 1,233,000         | 116,000      | 10.4        |
|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            | 677,000           | 658,000           | 658,000           | △19,000      | △2.8        |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60,000            | 60,000            | 60,000            | -            | -           |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 50,000            | 50,000            | 50,000            | -            | -           |
|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심 자킴이 운영       | 50,000            | 50,000            | 50,000            | -            | -           |
| 양육행복도시 성과평가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 아이사랑홈 인증 사업                | 80,000            | 80,000            | 80,000            | -            | -           |

|                        |         |         |           |           |       |
|------------------------|---------|---------|-----------|-----------|-------|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재개장    | -       | 50,000  | 50,000    | 50,000    |       |
|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       | -       | -       | 35,000    | 35,000    |       |
| 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 -       | -       | 50,000    | 50,000    |       |
| 일반예산(재무활동)             | 958,024 | 927,024 | 2,703,226 | 1,745,202 | 182.2 |
| 보전지출(양성평등 가족 기금)       | 958,024 | 927,024 | 2,703,226 | 1,745,202 | 182.2 |
| 여유자금예치                 | 958,024 | 927,024 | 2,703,226 | 1,745,202 | 182.2 |
| 행정운영경비<br>(양성평등 가족 기금) | 13,000  | 13,000  | 13,000    | -         | -     |
| 기본경비(양성평등 가족 기금)       | 13,000  | 13,000  | 13,000    | -         | -     |
| 기금관리비                  | 13,000  | 13,000  | 13,000    | -         | -     |

※ 지출계획변경(1차): 정책사업(성평등 증진) 내 2025년 공모사업비(△19백만원) 및 재무활동 내 예치금(△31백만원) 감액하고,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재개장> 사업 신규 편성(50백만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박선우 (☎ 2133-5326)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변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5회계연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9,259백만원에서 14,710백만원으로 5,451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액을 5,451백만원 증액하여야 함
- 나. 그러나, 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25.2.27)로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등 정책사업비를 3,303백만원에서 3,345백만원 증액, 예치금을 4,923백만원에서 4,881백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음(20% 미만 변경)
- 다. 이에,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액을 당초 4,923백만원에서 10,332백만원으로 5,409백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20% 초과 변경)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초<br>(A) | 변경<br>(B) | 증감<br>(C=B-A) | 증감률<br>(D=C/A) |
|------------|-----------|-----------|---------------|----------------|
| 합 계        | 18,231    | 23,682    | 5,451         | 29.9           |
| 세외수입       | 1,614     | 1,614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432       | 432       | -             | -              |
| 이자수입       | 432       | 432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33        | 33        | -             | -              |
| 보조금반환수입    | 33        | 33        | -             |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1,149     | 1,149     | -             | -              |
| 과정금        | 1,149     | 1,149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16,617    | 22,068    | 5,451         | 32.8           |

| 구 분   |         | 당초<br>(A) | 변경<br>(B) | 증감<br>(C=B-A) | 증감률<br>(D=C/A) |
|-------|---------|-----------|-----------|---------------|----------------|
| 보전수입등 |         | 14,866    | 20,317    | 5,451         | 36.7           |
|       | 응자금원금수입 | 5,607     | 5,607     | -             | -              |
|       | 예치금회수   | 9,259     | 14,710    | 5,451         | 58.9           |
| 내부거래  |         | 1,751     | 1,751     | -             | -              |
|       | 예탁금및예수금 | 1,751     | 1,751     | -             | -              |

##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정책사업명) |               | 당초<br>(A) | 1차 변경  | 2차 변경<br>(B) | 증감<br>(C=B-A) | 증감률<br>(D=C/A) |
|------------|---------------|-----------|--------|--------------|---------------|----------------|
| 합 계        |               | 18,231    | 18,231 | 23,682       | 5,451         | 29.9           |
| 식품안전 위생관리  |               | 3,303     | 3,345  | 3,345        | 42            | 1.3            |
|            | 위생관리시설개선 용자사업 | 1,500     | 1,500  | 1,500        | -             | -              |
|            | 교육·홍보사업       | 451       | 451    | 451          | -             | -              |
|            | 식중독 예방사업      | 185       | 185    | 185          | -             | -              |
|            | 음식문화개선사업      | 249       | 269    | 269          | 20            | 8.0            |
|            | 식품안전관리사업      | 565       | 565    | 565          | -             | -              |
|            | 조사 연구 평가 사업   | 353       | 375    | 375          | 22            | 6.2            |
| 행정운영경비     |               | 5         | 5      | 5            | -             | -              |
|            | 기금관리비         | 5         | 5      | 5            | -             | -              |
| 재무활동       |               | 14,923    | 14,881 | 20,332       | 5,409         | 36.2           |
|            | 내부거래지출        | 10,000    | 10,000 | 10,000       | -             | -              |
|            | 보전지출          | 4,923     | 4,881  | 10,332       | 5,409         | 109.9          |
|            | 여유자금 예치       | 4,923     | 4,881  | 10,332       | 5,409         | 109.9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윤혜주 (☎ 2133-4718)

##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내역 변경 및 ‘25년 도로사업소별 예상 도로굴착복구 물량 고려하여 2025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차 운용계획 변경 심의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정책사업비 37,566백만원에서 41,443백만원으로 3,877백만원 증액, 예치금 26,320백만원에서 22,443백만원으로 3,877백만원 감액한 바 있음(20% 미만 변경)
- 나. 금번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및 추가 사업비 증액 변경에 따라 수입계획 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21,976백만원에서 40,647백만원으로 18,671백만원 증액, 지출계획 상 ‘25년 상반기 자치구 도로관리심의 결과에 따른 도로사업소별 예상 도로굴착복구 물량 고려하여 정책사업비 41,443백만원에서 62,138백만원으로 20,698백만원 증액, 그에 따른 예치금 22,443백만원에서 20,419백만원으로 2,024백만원 감액하고자 함(20% 초과 변경)
-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초<br>계획<br>(A) | 1차변경<br>(B) | 2차변경<br>(C) | 증감<br>(C-A) |
|-----------|-----------------|-------------|-------------|-------------|
| 계         | 63,901          | 63,901      | 82,572      | 18,671      |
| 예치금<br>회수 | 21,976          | 21,976      | 40,647      | 18,671      |
| 이자<br>수입  | 796             | 796         | 796         |             |
| 기타<br>수입  | 41,129          | 41,129      | 41,129      |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초<br>계획<br>(D) | 1차변경<br>(E) | 2차변경<br>(F) | 증감<br>(증감률)<br>(F-D) |
|-----------------|-----------------|-------------|-------------|----------------------|
| 계               | 63,901          | 63,901      | 82,572      | 18,671               |
| 비용<br>자성<br>사업비 | 37,566          | 41,443      | 62,138      | 24,572<br>(65.4%)    |
| 기본<br>경비        | 15              | 15          | 15          |                      |
| 예치금             | 26,320          | 22,443      | 20,419      | △5,901<br>(△22.4%)   |

## 라.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지출부문)

(단위 : 백만원)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 당초계획<br>(A) | 1차변경<br>(B) | 2차변경<br>(C) | 증감<br>(C-A) | 증감률    |
|----------------------|-------------|-------------|-------------|-------------|--------|
| 계                    | 63,901      | 63,901      | 82,572      | 18,671      |        |
| 도로시설물 관리             | 37,566      | 41,443      | 62,138      | 24,572      | 65.4%  |
| 도로굴착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 37,566      | 41,443      | 62,138      | 24,572      | 65.4%  |
| 도로굴착복구공사             | 37,136      | 41,013      | 61,708      | 24,572      | 65.2%  |
| 시설비및부대비              | 37,136      | 41,013      | 61,708      | 24,572      | 65.2%  |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  | 430         | 430         | 430         |             |        |
| 일반운영비                | 430         | 430         | 430         |             |        |
| 재무활동                 | 26,320      | 22,443      | 20,419      | △5,901      | △22.4% |
| 보전지출                 | 26,320      | 22,443      | 20,419      | △5,901      | △22.4% |
| 여유자금예치               | 26,320      | 22,443      | 20,419      | △5,901      | △22.4% |
| 예치금                  | 26,320      | 22,443      | 20,419      | △5,901      | △22.4% |
| 행정운영경비               | 15          | 15          | 15          |             |        |
| 기본경비                 | 15          | 15          | 15          |             |        |
| 기금관리비                | 15          | 15          | 15          |             |        |
| 일반운영비                | 15          | 15          | 15          |             |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강향길 (☎2133-8162)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금액이 조정되어 2025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13,363백만원에서 20,916백만원으로 7,553백만원 증가
- 나.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여유자금예치」 금액도 6,753백만원에서 14,306백만원으로 7,553백만원 증가하였음
-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 구분        | 당초(A)  | 변경(B)  | 증감(B-A) |
|-----------|--------|--------|---------|
| 계         | 21,034 | 28,587 | 7,553   |
| 공공예금이자수입  | 557    | 557    | -       |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7,034  | 7,034  | -       |
| 기타회계전입금   | 0      | 0      | -       |
| 기타그외수입    | 80     | 80     | -       |
| 예치금 회수    | 13,363 | 20,916 | 7,553   |

#### 〈지출계획〉

(단위:백만원)

| 구분      | 당초(A)  | 변경(B)  | 증감(B-A) |
|---------|--------|--------|---------|
| 계       | 21,034 | 28,587 | 7,553   |
| 비용자성 사업 | 8,631  | 8,631  | -       |
| 융자성 사업  | 5,650  | 5,650  | -       |
| 여유자금예치  | 6,753  | 14,306 | 7,553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주택실 주택정책과 김소영 (☎2133-7985)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변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당초 사업시행자의 기금 분할납부를 가정해 수입을 편성하였으나, 일시 납부가 발생하여 기금 수입이 변동됨

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설치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금 납부 사업지 관련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수입계획 변경사항 ]

가. 당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은 연 1회씩 5회 균등 분할납부를 가정하여 21억 4천만원을 그외수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107억 2천만원을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그 차액인 85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나. 상반기 기금 납부로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원)

| 장/관/항/목 | 당 초<br>(A) | 변 경 안<br>(B) | 증 감<br>(C=B-A) | 증 감 률<br>(D=C/A) |
|---------|------------|--------------|----------------|------------------|
| 합 계     | 23,740,000 | 33,060,183   | 9,320,183      | 39.3%            |

| 장/관/항/목  | 당 초<br>(A) | 변 경 안<br>(B) | 증 감<br>(C=B-A) | 증 감 륜<br>(D=C/A) |
|----------|------------|--------------|----------------|------------------|
| 세외수입     | 23,740,000 | 33,060,183   | 9,320,183      | 39.3%            |
| 경상적세외수입  | -          | 740,183      | 740,183        | 100%             |
| 이자수입     | -          | 740,183      | 740,183        | 100%             |
| 공공예금이자수입 | -          | 740,183      | 740,183        | 100%             |
| 임시적세외수입  | 23,740,000 | 32,320,000   | 8,580,000      | 36.1%            |
| 기타수입     | 23,740,000 | 32,320,000   | 8,580,000      | 36.1%            |
| 그외수입     | 23,740,000 | 32,320,000   | 8,580,000      | 36.1%            |

## [ 지출계획 변경사항 ]

가. 정책사업 ‘공공시설등 설치’ 를 신설하고,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른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암사역사공원 조성’ 229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함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 에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93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원)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 당 초<br>(A) | 변 경 안<br>(B) | 증 감<br>(C=B-A) | 증 감 륜<br>(D=C/A) |
|--------------|------------|--------------|----------------|------------------|
| 합 계          | 23,740,000 | 33,060,183   | 9,320,183      | 39.3%            |
| 공공시설등 설치     | -          | 32,320,000   | 32,320,000     | 100%             |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 당 초<br>(A) | 변 경 안<br>(B) | 증 감<br>(C=B-A) | 증 감 률<br>(D=C/A)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 -          | 22,950,000   | 22,950,000     | 100%             |
| 암사역사공원 조성       | -          | 22,950,000   | 22,950,000     | 100%             |
| 시설비및부대비         | -          | 22,950,000   | 22,950,000     | 100%             |
|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 | -          | 9,370,000    | 9,370,000      | 100%             |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          | 9,370,000    | 9,370,000      | 100%             |
| 시설비및부대비         | -          | 9,370,000    | 9,370,000      | 100%             |
| 재무활동            | 23,740,000 | 740,183      | △22,999,817    | △96.9%           |
| 보전지출            | 23,740,000 | 740,183      | △22,999,817    | △96.9%           |
| 여유자금 예치         | 23,740,000 | 740,183      | △22,999,817    | △96.9%           |
| 예치금             | 23,740,000 | 740,183      | △22,999,817    | △96.9%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 2133-6956)

##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95,906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입 계획에 반영하고,

나. 증가한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2025년 지출 계획상 비융자성 사업비는 86,064백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은 78,524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5년 수입계획 변경 내용

(단위: 천원, %)

| 구 분          |  | 당 초<br>(A) | 1차 변경<br>※변경없음 | 2차 변경<br>(B) | 증 감(B-A)<br>(증감률)     |
|--------------|--|------------|----------------|--------------|-----------------------|
| 합 계          |  | 68,692,849 | 68,692,849     | 164,598,298  | 95,905,449<br>(139.6) |
| 세외수입         |  | 31,279,077 | 31,279,077     | 31,279,077   | -<br>(-)              |
| 경상적세외수입      |  | 3,405,505  | 3,405,505      | 3,405,505    | -                     |
| 이자수입         |  | 3,405,505  | 3,405,505      | 3,405,505    | -                     |
| 공공예금이자수입     |  | 3,405,505  | 3,405,505      | 3,405,505    | -                     |
| 임시적세외수입      |  | 1,523,159  | 1,523,159      | 1,523,159    | -                     |
| 기타수입         |  | 1,523,159  | 1,523,159      | 1,523,159    | -                     |
| 그외수입         |  | 1,523,159  | 1,523,159      | 1,523,159    | -                     |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  | 26,350,413 | 26,350,413     | 26,350,413   | -                     |

(단위: 천원, %)

| 구 분        |       | 당 초<br>(A) | 1차 변경<br>※변경없음 | 2차 변경<br>(B) | 증 감(B-A)<br>(증감률)     |
|------------|-------|------------|----------------|--------------|-----------------------|
|            | 부담금   | 26,350,413 | 26,350,413     | 26,350,413   | -                     |
|            | 부담금   | 26,350,413 | 26,350,413     | 26,350,413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37,413,772 | 37,413,772     | 133,319,221  | 95,905,449<br>(256.3) |
| 보전수입등      |       | 37,413,772 | 37,413,772     | 133,319,221  | 95,905,449            |
|            | 예치금회수 | 37,413,772 | 37,413,772     | 133,319,221  | 95,905,449            |
|            | 예치금회수 | 37,413,772 | 37,413,772     | 133,319,221  | 95,905,449            |

## - 2025년 지출계획 변경 내용

(단위: 천원, %)

| 구 분                   |           | 당 초<br>(A) | 1차 변경<br>(증감률) | 2차 변경<br>(B) | 증 감(B-A)<br>(증감률)      |
|-----------------------|-----------|------------|----------------|--------------|------------------------|
| 합 계                   |           | 68,692,849 | 68,692,849     | 164,598,298  | 95,905,449<br>(139.6)  |
|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        |           | 1,096,381  | 1,306,381      | 86,064,381   | 84,968,000<br>(7749.9) |
|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           | 1,096,381  | 1,306,381      | 86,064,381   | 84,968,000             |
|                       | 다동공원 조성사업 | 1,096,381  | 1,096,381      | 85,854,381   | 84,758,000             |
|                       | 시설비       | -          | -              | 84,758,000   | 84,758,000             |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 1,096,381  | 1,096,381      | 1,096,381    | -                      |
| 창동차량기지 S-DBC조성 MP단 운영 |           | -          | 30,000         | 30,000       | 30,000                 |
| 사무관리비                 |           | -          | 30,000         | 30,000       | 30,000                 |
| 김포공항 모빌리티 산업개발 진흥지구   |           | -          | 50,000         | 50,000       | 50,000                 |

(단위: 천원, %)

| 구 분    |                      | 당 초<br>(A) | 1차 변경<br>(증감률) | 2차 변경<br>(B) | 증 감(B-A)<br>(증감률)    |
|--------|----------------------|------------|----------------|--------------|----------------------|
|        | 시설비                  | -          | 50,000         | 50,000       | 50,000               |
|        |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 | -          | 50,000         | 50,000       | 50,000               |
|        | 시설비                  | -          | 50,000         | 50,000       | 50,000               |
|        | 성북동 골목길재생 매입공사 보수    | -          | 30,000         | 30,000       | 30,000               |
|        | 시설비                  | -          | 30,000         | 30,000       | 30,000               |
|        | 수색역 일대 지역상생 발전계획     | -          | 50,000         | 50,000       | 50,000               |
|        | 시설비                  | -          | 50,000         | 50,000       | 50,000               |
| 행정운영경비 |                      | 10,000     | 10,000         | 10,000       | -                    |
|        | 기본경비                 | 10,000     | 10,000         | 10,000       | -                    |
|        | 기금 관리비               | 10,000     | 10,000         | 10,000       | -                    |
|        | 사무관리비                | 10,000     | 10,000         | 10,000       | -                    |
| 재무활동   |                      | 67,586,468 | 67,376,468     | 78,523,917   | 10,937,449<br>(16.2) |
|        | 보전지출                 | 67,586,468 | 67,376,468     | 78,523,917   | 10,937,449           |
|        | 여유자금 예치              | 67,586,468 | 67,376,468     | 78,523,917   | 10,937,449           |
|        | 일반예치금                | 67,586,468 | 67,376,468     | 78,523,917   | 10,937,449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이민국 (☎2133-8621)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수입계획 변경을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증액(증 1,625백만원) 및 보조금 반환수입 33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519천원을 수입계획에 신규반영하고자 함

나.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증 1,018백만원) 및 신규사업을 ① 해외도시 물품나눔 사업 50백만원, ②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250백만원 편성하고자 함.

##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 ○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 구 분               | ' 25년 당초 계획(A) | ' 25년 1차 변경 | ' 25년 2차 변경(B) | 증감(B-A)<br>(증감률)      |
|-------------------|----------------|-------------|----------------|-----------------------|
| 합 계               | 6,252,894      | 6,252,894   | 7,911,176      | 1,658,282<br>(26.52%) |
| 216 이자수입          | 216,487        | 216,487     | 217,006        | 519<br>(0.24%)        |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 216,487        | 216,487     | 216,487        | -                     |
| 216-03 기타이자수입     | -              | -           | 519            | 519                   |
| 223 보조금반환수입       | -              | -           | 32,848         | 32,848                |
|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              | -           | 8,474          | 8,474                 |
| 223-03 위탁비반환수입    | -              | -           | 24,374         | 24,374                |

| 구 분            | ' 25년 당초 계획(A) | ' 25년 1차 변경 | ' 25년 2차 변경(B) | 증감(B-A)<br>(증감률)       |
|----------------|----------------|-------------|----------------|------------------------|
| 714 예치금 회수     | 1,472,185      | 1,472,185   | 3,097,100      | 1,624,915<br>(110.37%) |
| 714-01 예치금회수   | 1,472,185      | 1,472,185   | 3,097,100      | 1,624,915              |
| 721 전입금        | 4,564,222      | 4,564,222   | 4,564,222      | -                      |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 4,564,222      | 4,564,222   | 4,564,222      | -                      |

## ○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 구 분 (정책/단위/세부)    | ' 25년<br>당초 계획(A) | 1차 변경     | 2차 변경<br>(B) | 증감(B-A)<br>(증감률)      |
|-------------------|-------------------|-----------|--------------|-----------------------|
| 합 계               | 6,252,894         | 6,252,894 | 7,911,176    | 1,658,282<br>(26.52%) |
| 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        | 4,541,834         | 4,881,834 | 5,181,834    | 640,000<br>(14.09%)   |
| 외국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 | 2,618,334         | 2,818,334 | 2,818,334    | 200,000<br>(7.64%)    |
| 시립대 석사과정          | 967,360           | 947,126   | 947,126      | △20,234               |
| 공무원 초청연수          | 426,522           | 426,522   | 426,522      | -                     |
| 도시철도 초청교육         | 68,525            | 68,525    | 68,525       | -                     |
| 시립대 최고위과정         | 290,777           | 311,011   | 311,011      | 20,234                |
| 유학생 유치            | 865,150           | 905,150   | 905,150      | 40,000                |
| 서울 인재유치 네트워크 프로모션 | -                 | 160,000   | 160,000      | 160,000               |
|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 1,523,500         | 1,663,500 | 1,963,500    | 440,000<br>(28.88%)   |
| 소방안전 인프라구축        | 152,500           | 152,500   | 152,500      | -                     |
| 서울형ODA 챌린지        | 800,000           | 940,000   | 940,000      | 140,000               |
| 민간국제개발협력          | 571,000           | 571,000   | 571,000      | -                     |
| 해외도시 물품나눔         | -                 | -         | 50,000       | 50,000                |

| 구 분 (정책/단위/세부)  |             | ' 25년<br>당초 계획(A) | 1차 변경     | 2차 변경<br>(B) | 증감(B-A)<br>(증감률)      |
|-----------------|-------------|-------------------|-----------|--------------|-----------------------|
| 스마트시티<br>국제개발협력 |             | -                 | -         | 250,000      | 250,000               |
|                 |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 400,000           | 400,000   | 400,000      | -                     |
|                 | 재해구호        | 400,000           | 400,000   | 400,000      | -                     |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             | 5,000             | 5,000     | 5,000        | -                     |
| 재무활동(예치금)       |             | 1,706,060         | 1,366,060 | 2,724,342    | 1,018,282<br>(59.67%) |

※ 1차 지출계획 변경 : 정책사업비(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 340백만원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오세희 (☎ 2133-5278)

##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동북권 특화 뉴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고,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2021년 5월 「서울창업허브 창동」을 개관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개요

- 위치: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 아우르네
- 규모: 지하2~지상4층 / 연면적 8,978.17㎡
- 공간현황: 입주공간, 오픈이노베이션센터, 뉴미디어 스튜디오 등

##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 위탁기간: 3년(2022. 11. 1.~ 2025. 10. 31.)
- 위탁유형: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25년 소요예산: 3,174백만원(민간위탁금 등)

## 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15. 2. 창동·상계 신경제증심지 조성 발표

- ' 16. 5.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수립
- ' 17. 9.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통합 관리·운영 추진계획 수립
- ' 19. 9. 동북권 창업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289회 정례회)
- ' 20. 4. '(가칭)창업고도화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 ' 21. 5. 서울창업허브 창동 개관
- ' 22. 6. 서울창업허브 창동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제307회 정례회)
- ' 22. 10.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선발·관리·보육·지원 등 사업추진 전반
-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VC·AC 등), 대중견기업 연계 및 사업지원
-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 운영 및 뉴미디어 마케팅 활용한 창업기업 보육지원
- 창동 아우르네 전체 복합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총괄
- 기타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을 위해 '시'와 협의한 사항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5. 5. 9.) 심의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 26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박선아(☎ 2133-4884)

김남지(☎ 2133-4880)

##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 제3자 재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본 시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 올바른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지속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 나. 기존 1층 시민전시장을 카페로 개편하여 시민 친화적인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 다.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 제3자 재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3자 재위탁 시설명: 전태일노동복합시설 내 1층 카페
- 나. 제3자 재위탁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5항
- 다. 제3자 재위탁 개요
- 시 설 명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내 1층 카페(204.54㎡)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관수동 152-1)
  - 본수탁자 : 재단법인 전태일재단(' 24. 11. 1. ~ ' 26. 10. 31. / 2년)
  - 제3자 재위탁기간 : ' 25.6.31. ~ ' 26.10.31. / 1년 4개월
  - 수탁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온비드)
  - 소요예산 : 95,016천원(' 25년 예산편성액)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사전심의 : 해당사항 없음(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대상 미해당)

마. 성과보고 : 2024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제출

○ 카페조성 및 운영은 '25년 신규사업으로 기존 실적이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이상섭(☎2133-5428)

## 붙임 1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개요(본위탁)

## □ 시설개요

- 시설명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관수동 152-1)
- 규모 : 대지면적 553.1m<sup>2</sup>, 연면적 1,919.53m<sup>2</sup>(지상 6층)
- 개관일 : 2019. 4. 30.

## □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위탁기간 : 2024. 11. 1. ~ 2026. 10. 31. (2년)
- 위탁사무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 총괄 및 위탁시설을 활용한 사무
  - 전태일기념관 전시 및 운영, 홍보 및 교육, 문화공연 운영 등
- 수탁기관 : 재단법인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
- 소요예산 : 899,618천원('25년 예산편성액)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 운영경과

- '18. 1. 26.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 '18. 2. 21. ~ '19. 3. 8. 리모델링 공사 추진
- '18. 8. 3.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위수탁협약 체결(전태일재단, 3년간 위탁)
  - ※ 위탁기간 : '18. 8. 6.~'21. 8. 5.
- '19. 3. 20.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임시 개관
- '19. 4. 30. 개관식 개최
- '21. 8. 4.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재계약 체결(전태일재단, 3년간 위탁)
  - ※ 위탁기간 : '21. 8. 6.~'24. 10. 31. / 기존 위탁기간에서 86일 연장(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4항)
- '24. 10. 29.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위수탁협약 체결(전태일재단, 2년간 위탁)
  - ※ 위탁기간 : '24. 11. 1.~'26. 10. 31.

**붙임 2**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개요(제3자 위탁)

## □ 시설개요

- 시설명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1층(392.96m<sup>2</sup>) 중 일부(전시장 등, 204.54m<sup>2</sup>)
- 시설현황('25.5월 기준)

| 구분 | 면적                   | 용도                             |
|----|----------------------|--------------------------------|
| 1층 | 392.96m <sup>2</sup> | 전시장, 수장고1,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기계실 등 |
| 2층 | 369.86m <sup>2</sup> | 다목적홀, 수장고2, 휴게실                |
| 3층 | 409.09m <sup>2</sup>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장                   |
| 4층 | 409.09m <sup>2</sup> | 교육실, 세미나실, 회의실, 갤러리 등          |
| 5층 | 266.08m <sup>2</sup> | 기념관 사무실 *노동권익센터 퇴거('25.3.1.)   |
| 6층 | 72.45m <sup>2</sup>  | 옥상, 휴게실                        |

## □ 제3자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시설의 제3자 재위탁
  - 시설(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일부(1층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함
- 위탁기간 : 2025. 6. 31. ~ 2026. 10. 31. (16개월)
  - 의회 동의, 인테리어·배수·전기공사 등 선결사항 처리 후 제3자 위탁 개시
- 위탁재산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1층(392.96m<sup>2</sup>) 중 일부(전시장 등, 204.54m<sup>2</sup>)
- 소요예산 : 95,016천원('25년 예산편성액)
  - ※ 커피머신·냉장고 등 장비 및 부자재 향후 수탁기관(카페운영사)이 부담
- 선정방식 : 공개모집(일반경쟁 입찰, 온비드)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사항 없음(심의대상 미해당)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농식품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무공간 지원,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에 개소하여 운영 중임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5. 9.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농식품 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지원 기반(국내외 기업·민간 기관과 협력 체계 등)을 보유한 기관에 본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함

다.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 개소일 : 2016. 12. 7.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그린타워 8~9층)
- 규모 : 연면적 3,123.84㎡ (8층·9층 각 1,561.92㎡)
- 주요시설 : 입주기업 사무공간, 공유주방(오픈키친), 회의실, 연구개발실, 영상제작공간 등

## 나.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
  - 입주자 모집·선발·평가, 사용료 징수 등 입주기업 관리
  - 교육·멘토링·네트워크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위탁기간 : 3년(2025. 10.~2028. 9.)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30백만원('25년 4분기) ※ '25년 민간위탁금 425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61개 농식품 스타트업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누적 매출 2,207억원을 달성하는 등 농식품 분야 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음
- 농식품 산업 분야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업무는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는 투자·창업기획 관련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국내외 다양한 농식품 분야 창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외부 투자 환경 변화에 취약한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 대응이 필요한 업무임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본 사무를 직영 운영 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조직 확대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운영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5. 5. 9.) 결과 : 적정

※ 작성자 :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임경진 (☎ 2133-4453 )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관련하여
-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광역 및 서북, 서남, 동북, 동남) 통합 운영
- 소재지 및 시설규모

| 현 시설명             | 소재지                            | 면적      |
|-------------------|--------------------------------|---------|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은평구 통일로 680, 2층4층6층(녹번동, 대일빌딩) | 562.90㎡ |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 영등포구 경인로 725, 2층(문래동, 조양빌딩)    | 324.80㎡ |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 강북구 도봉로 172, 5층(미아동, 남송빌딩)     | 311.22㎡ |
|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 송파구 문정로13, 4층(문정동, 선바위빌딩)      | 298.86㎡ |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 25. 10. ~ ’ 28. 9.)
- 운영사업(센터의 기능)
  -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 －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 26년 예산(안) : 3,95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제11조(운영의 위탁)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센터 운영 목적은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 인식개선, 권익옹호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 향상 기여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의 위탁)  
⇒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 작성자 : 복지실 돌봄복지과 김정미 (☎ 2133-7424)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재위탁하여 양질의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6,365,961천원(' 25년 예산)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 2025년 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5. 5. 9.)

## 나. 추진 필요성 및 위탁사무

- 추진 필요성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응급구호, 목욕, 세탁 등 기초 편의 서비스 제공, 의료·주거·일자리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 정신질환,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심층 평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 자활지원 전략개발 및 수행을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 위탁사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노숙인 상담 및 응급구호, 목욕, 세탁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지원주택, 임시주거지원 등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노숙인 일자리 연계 및 자활지원
- 노숙인 무료 부속의원 운영 및 의료지원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라. 시설 위치 :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본관)

- 시설규모 : 1,300㎡(지하 1층, 지상 5층)

※ 본관 기준, 부속시설(서울역희망지원센터, 부속의원, 후원의원 분류작업장) 별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자활지원과 이진산 (☎ 2133 - 7484)

##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난임, 유산·사산 및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련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통해 문제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 나. ' 23년 3월 보건복지부 권역 상담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 23년 7월 서울권역 상담센터 개소 후 ' 25년 12월 31일자로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다.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인력 활용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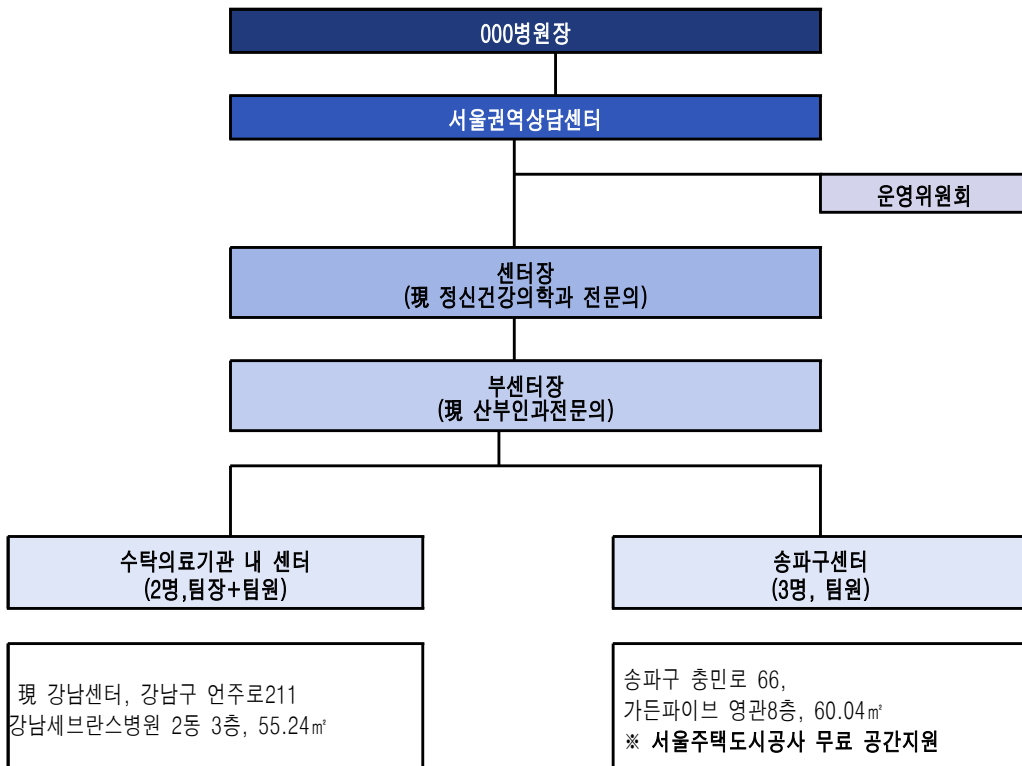
- 가. 위탁사무명 :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①항2호(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난임부부, 유산·사산 경험부부, 임신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정서적지지 및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의 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대로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활성화 가능
- 다. 위탁사무 내용
- 센터 설치 및 수탁시설(자산) 종합적인 관리 운영 전반
  - 난임·임산부 우울 및 심리평가
  -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자조모임 운영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 대상자 발굴 시 기관 내 진료부서 또는 외부 진료 가능 기관 연계
- 권역별 난임 여성·임산부 심리상담 연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전담 인력 채용, 교육, 사례관리 등 상담 인력 역량강화
- 심리상담센터 홍보 등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무

라.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3년)

마. 위탁시설 개요(시설명, 조직,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위치도)

- 시 설 명 :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조직도 및 정·현원 : 1개 권역 2개센터(센터장/부센터장, 팀장의 팀원4명)



- 주요시설 : 개인·집단상담실, 민원대기실, 사무실 등

○ 위치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위탁)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상담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의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모·선정

사. 소요예산 : 360백만원

- 민간위탁금 : 360백만원(국비 50% 130, 시비 50% 130, 자체시비 100)

※ '26년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 예산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인건비294,920천원, 운영비 38,848천원, 사업비 등 26,232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 ② 시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5.5.6.: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신규위탁)
- 2025.5.13.: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5. 제3차)

## ○ 향후계획

- 2025.6.: 시의회 동의
- 2025.8.~12.: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박정민 (☎ 2133-9492 )

##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난임, 유산·사산 및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련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통해 문제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 나. '24년 4월 보건복지부 권역 상담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24년 9월 서울권역 상담센터 개소 후 '25년 12월 31일자로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다.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인력 활용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①항2호(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난임부부, 유산·사산 경험부부, 임신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정서적지지 및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의 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책임성 확대로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활성화 가능

다. 위탁사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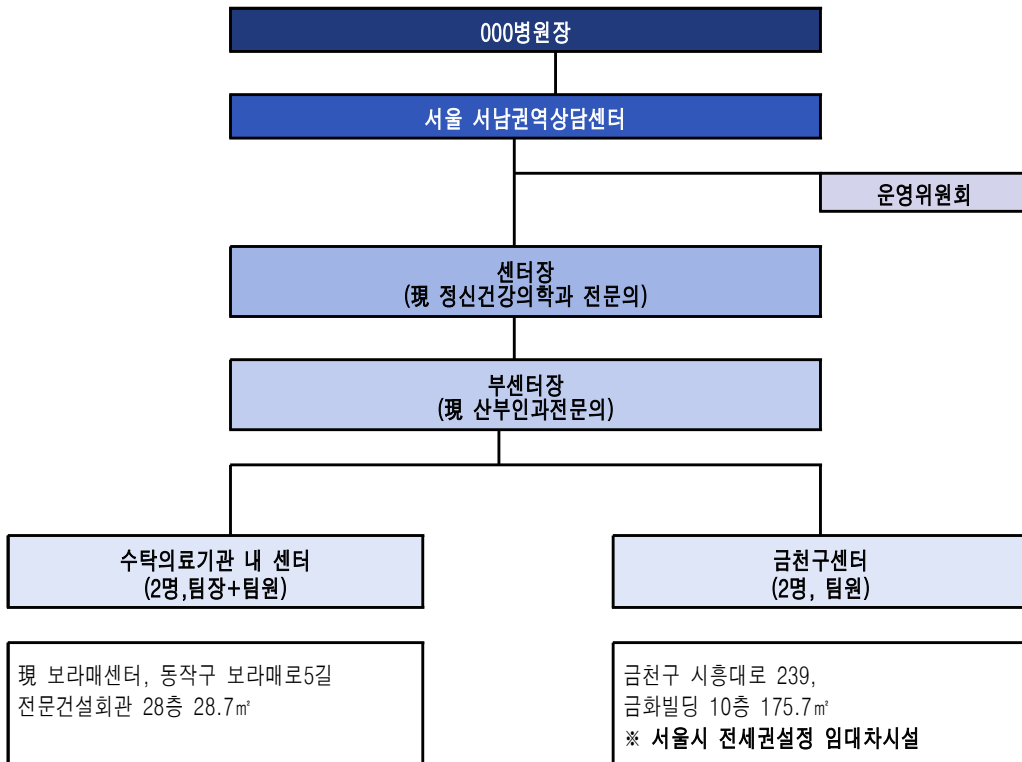
- 센터 설치 및 수탁시설(자산) 종합적인 관리 운영 전반
- 난임·임산부 우울 및 심리평가
-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자조모임 운영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 대상자 발굴 시 기관 내 진료부서 또는 외부 진료 가능 기관 연계

- 권역별 난임 여성·임산부 심리상담 연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전담 인력 채용, 교육, 사례관리 등 상담 인력 역량강화
- 심리상담센터 홍보 등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무

라.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3년)

마. 위탁시설 개요(시설명, 조직,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조직도 및 정·현원 : 1개 권역 2개센터(센터장/부센터장, 팀장외 팀원3명)



- 주요시설 : 개인·집단상담실, 민원대기실, 사무실 등

○ 위치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신규위탁)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상담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의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모·선정

사. 소요예산 : 325백만원

- 민간위탁금 : 325백만원(국비 50% 130, 시비 50% 130, 자체시비 65)
  - ※ 금천구센터 임차료 및 임차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 부서예산 편성(35백만원)
  - ※ '26년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 예산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인건비246,127천원, 운영비 57,741천원, 사업비 등 21,132천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② 시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5.5.6.: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신규위탁)

－ 2025.5.13.: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5. 제3차)

○ 향후계획

－ 2025.6.: 시의회 동의

－ 2025.8.~12.: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박정민 (☎ 2133-9492 )

##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는 클라이밍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시립체육시설로, 위탁기간이 2025.12.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자립 운영이 가능한 경영 능력과 클라이밍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 추진 필요성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은 클라이밍 체험·교육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시설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자립형 경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성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체험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
-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주변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
-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의 사용, 이용자관리,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사용·수익허가(근린생활시설 및 자판기 임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라. 제3자 재위탁 : 해당

- 필요성 : 산악문화체험센터 내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재위탁 필요

- 제3자 채위탁 중(예정)인 사무 : 1건
  - 카페 운영 1건 (현 계약기간 : 2024.9.13. ~ 2025.12.31.)

마.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112
- 규 모 : 부지 3,000㎡, 연면적 2,197.68㎡(지하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실내볼더링장, 외부암벽장, 시청각실, 기획전시실 등
- 위 치 도



바. 민간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26.1.1. ~ ' 28.12.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자립형으로 운영비 지원 없음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 산악문화체험센터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각호와 같다. ....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김예정 (☎2133-2748)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 재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른 재위탁 도래  
 나.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위탁 추진

## 2.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소방학교, 용산소방서 2개소)  
 나. 위탁기간: 2026.1.1. ~ 2028.12.31. (3년)  
 다. 위탁범위: 보육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인건비·운영비 집행, 종사자 관리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9조(직장어린이집 운영)
- 나. 예산조치
- 총예산(안): 747,840천원(서울시 지원 기준)
  - 2026년도 총 예산편성액: 1,067,969천원(정부지원 포함)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대효과
- 교대근무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 민간 재위탁을 통한 보육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실질적 수요 반영

※ 작성자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이채현 (☎3706-1652)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가. 24-A-00부대 군사시설 개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현행 조례에 적합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 면적(㎡)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55,898 | -         | 55,898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5,898 | 감) 55,898 |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55,898 | 55,898 | 100.0  |    |

##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 위치        | 용도지역          |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
|           | 기정            | 변경            |        |                        |
| 성북구 외 5개소 | 제1종일반<br>주거지역 | 제2종일반<br>주거지역 | 55,898 | 군사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3. 주민 의견청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청취 제외 대상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없음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남주연(☎ 2133-8329)

붙임 1. 위치도 1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 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이화여자대학교 -**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br>종 류           | 위 치       |                  | 면 적 (㎡)   |          |           | 최 초<br>결정일                | 비 고<br>(기본계획결정일)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변경 | 학교  | 대 학<br>(이화여자<br>대학교) | 제1<br>캠퍼스 | 대현동 11-1번지<br>일대 | 402,978.9 | 감) 1,255 | 401,723.9 | 서고시 제113호<br>(1974.8.13.) | 서고시<br>제2016-125호<br>(2016.4.21.) |
|    |     |                      | 제2<br>캠퍼스 | 대신동 22번지 일대      | 3,972.9   | -        | 3,972.9   |                           |                                   |
|    |     |                      | 제3<br>캠퍼스 | 북아현동 1-1620 일대   | 124,306.0 | -        | 124,306.0 |                           |                                   |
|    |     |                      | 제4<br>캠퍼스 | 북아현동 1-1615 일대   | 658.0     | -        | 658.0     |                           |                                   |
|    |     |                      | 제5<br>캠퍼스 | 대신동 20번지 일대      | 14,489.3  | -        | 14,489.3  |                           |                                   |
|    |     |                      | 합계        |                  | 546,405.1 | 감) 1,255 | 545,150.1 |                           |                                   |

1) 변경 사유서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대학<br>(이화여자<br>대학교) | - 제1캠퍼스<br>면적 : 감) 1,25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화오뚜기 어린이집 부지 추가로 인해 서대문구 신촌동 2-90번지 외 1필지 학교 추가(증 672.0㎡)</li> <li>-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의 부지 제척 및 기존 학교 부지 내 지번 분할 및 합병, 추가로 인한 면적 변경사항 반영(감 1,457.0㎡)</li> <li>- 학교 내 철도부지 제척(감 470.0㎡)</li> <li>① 학교부지 추가 : 신촌동 2-90대, 2-91대, 북아현동 1-849대, 1-1394대, 1-1926대</li> <li>② 학교부지 제척 : 북아현동 1017-1공, 1017-2공, 대현동 151-1공, 16-6철</li> <li>③ 분할에 의한 면적 조정 : 북아현동 1-866학, 1-1357대, 1-1611학, 1-1612학, 산1-462임, 1-1777학, 1-2009학, 대현동 11-1학, 17-1대</li> <li>④ 공부상 면적 변경 : 대신동 143-20도</li> </ul> |

## 2) 토지 조서

| 필지수 | 구분    | 소재지       | 지번     |        | 지목 |    | 공부상면적(㎡) |          | 시설결정면적(㎡)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1   | 제1캠퍼스 | 서대문구 신촌동  | 1-67   | 1-67   | 대  | 대  | 271.0    | 271.0    | 271.0     | 271.0    | -                                 |
| 2   |       |           | 1-101  | 1-101  | 대  | 대  | 79.0     | 79.0     | 79.0      | 79.0     | -                                 |
| 3   |       |           | 2-10   | 2-10   | 대  | 대  | 337.0    | 337.0    | 337.0     | 337.0    | -                                 |
| 4   |       |           | 2-104  | 2-104  | 대  | 대  | 370.0    | 370.0    | 370.0     | 370.0    | -                                 |
| 5   |       |           | 2-181  | 2-181  | 학  | 학  | 9,884.0  | 9,884.0  | 9,884.0   | 9,884.0  | -                                 |
| 6   |       |           | 2-182  | 2-182  | 대  | 대  | 331.0    | 331.0    | 331.0     | 331.0    | -                                 |
| 7   |       |           | 34-1   | 34-1   | 학  | 학  | 35,416.0 | 35,416.0 | 35,416.0  | 35,416.0 | -                                 |
| 8   |       |           | 34-6   | 34-6   | 학  | 학  | 1,284.0  | 1,284.0  | 1,284.0   | 1,284.0  | -                                 |
| 9   |       |           | 74-2   | 74-2   | 학  | 학  | 1,274.0  | 1,274.0  | 1,274.0   | 1,274.0  | -                                 |
| 10  |       |           | 74-26  | 74-26  | 철  | 철  | 112.0    | 112.0    | 112.0     | 112.0    | -                                 |
| 11  |       |           | -      | 2-90   | -  | 대  | -        | 331.0    | -         | 331.0    | 이화오피스텔이집 추가로 인한 면적 증가             |
| 12  |       |           | -      | 2-91   | -  | 대  | -        | 341.0    | -         | 341.0    | 이화오피스텔이집 추가로 인한 면적 증가             |
| 13  |       | 서대문구 북아현동 | 1-824  | 1-824  | 대  | 대  | 178.0    | 178.0    | 178.0     | 178.0    | -                                 |
| 14  |       |           | 1-825  | 1-825  | 대  | 대  | 49.0     | 49.0     | 49.0      | 49.0     | -                                 |
| 15  |       |           | 1-826  | 1-826  | 학  | 학  | 971.0    | 971.0    | 971.0     | 971.0    | -                                 |
| 16  |       |           | -      | 1-849  | -  | 대  | -        | 26.0     | -         | 26.0     | 북아현동 1017-2공에서 분할로 면적증가           |
| 17  |       |           | 1-866  | 1-866  | 도  | 학  | 875.0    | 8.0      | 13.0      | 8.0      | 북아현동1017-2공, 북아현동1017대로 분할로 면적 감소 |
| 18  |       |           | 1-1153 | 1-1153 | 대  | 대  | 648.0    | 648.0    | 648.0     | 648.0    | -                                 |
| 19  |       |           | 1-1154 | 1-1154 | 대  | 대  | 443.0    | 443.0    | 443.0     | 443.0    | -                                 |
| 20  |       |           | 1-1155 | 1-1155 | 대  | 대  | 448.0    | 448.0    | 448.0     | 448.0    | -                                 |
| 21  |       |           | 1-1157 | 1-1157 | 대  | 대  | 221.0    | 221.0    | 221.0     | 221.0    | -                                 |
| 22  |       |           | 1-1158 | 1-1158 | 대  | 대  | 261.0    | 261.0    | 261.0     | 261.0    | -                                 |
| 23  |       |           | 1-1159 | 1-1159 | 도  | 도  | 472.0    | 472.0    | 196.0     | 196.0    | -                                 |
| 24  |       |           | 1-1160 | 1-1160 | 학  | 학  | 341.0    | 341.0    | 341.0     | 341.0    | -                                 |
| 25  |       |           | 1-1161 | 1-1161 | 대  | 대  | 423.0    | 423.0    | 423.0     | 423.0    | -                                 |

| 필지수 | 구분      | 소재지       | 지번     |        | 지목 |    | 공부상면적(㎡) |          | 시설결정면적(㎡)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26  | 제 1 캠퍼스 | 서대문구 북아현동 | 1-1162 | 1-1162 | 대  | 대  | 238.0    | 238.0    | 238.0     | 238.0    | -                                                          |
| 27  |         |           | -      | 1-1394 | -  | 대  | -        | 46.0     | -         | 46.0     | 북아현동<br>1017-2공에서<br>분할로 면적증가                              |
| 28  |         |           | 1-1357 | 1-1357 | 대  | 대  | 40.0     | 17.0     | 13.0      | 17.0     | 북아현동<br>1017-2공으로<br>지적분할 하여<br>면적증가                       |
| 29  |         |           | 1-1372 | 1-1372 | 학  | 학  | 3,263.0  | 3,263.0  | 3,263.0   | 3,263.0  | -                                                          |
| 30  |         |           | 1-1589 | 1-1589 | 도  | 도  | 17.0     | 17.0     | 17.0      | 17.0     | -                                                          |
| 31  |         |           | 1-1611 | 1-1611 | 학  | 학  | 1,536.0  | 1,496.0  | 1,536.0   | 1,496.0  | 북아현동<br>1017-2공으로지적<br>분할 하여 면적감소                          |
| 32  |         |           | 1-1612 | 1-1612 | 학  | 학  | 44,521.0 | 44,311.0 | 44,521.0  | 44,311.0 | 북아현동<br>1017-2공으로<br>지적분할 하여<br>면적감소                       |
| 33  |         |           | 1-1613 | 1-1613 | 학  | 학  | 812.0    | 812.0    | 812.0     | 812.0    | -                                                          |
| 34  |         |           | 1-1680 | 1-1680 | 대  | 대  | 53.0     | 53.0     | 53.0      | 53.0     | -                                                          |
| 35  |         |           | 1-894  | 1017-2 | 학  | 공  | 70.0     | 8,720.5  | 70.0      | -        | 경관녹지<br>중복결정으로<br>인한 학교 부지 제척                              |
| 36  |         |           | 1-1741 |        | 학  |    | 107.0    |          | 107.0     |          |                                                            |
| 37  |         |           | 1-1742 |        | 대  |    | 8.0      |          | 8.0       |          |                                                            |
| 38  |         |           | 1-1744 |        | 대  |    | 32.0     |          | 32.0      |          |                                                            |
| 39  |         |           | 1-1745 |        | 대  |    | 48.0     |          | 48.0      |          |                                                            |
| 40  |         |           | 1-1746 |        | 대  |    | 33.0     |          | 33.0      |          |                                                            |
| 41  |         |           | 1-1747 |        | 대  |    | 61.0     |          | 61.0      |          |                                                            |
| 42  |         |           | 1-1748 |        | 대  |    | 34.0     |          | 34.0      |          |                                                            |
| 43  |         |           | 1-1749 |        | 대  |    | 70.0     |          | 70.0      |          |                                                            |
| 44  |         |           | 1-1750 |        | 도  |    | 109.0    |          | 109.0     |          |                                                            |
| 45  |         |           | 1-1751 |        | 대  |    | 18.0     |          | 18.0      |          |                                                            |
| 46  |         |           |        |        |    |    |          |          |           |          |                                                            |
| 47  |         |           | 산1-462 | 1017-1 | 임  | 공  | 826.0    | 141.0    | 826.0     | -        | 북아현동<br>산1-462에서<br>지적분할,<br>연결녹지<br>중복결정으로 인한<br>학교 부지 제척 |
| 48  |         |           |        | 산1-462 | 임  | 임  |          | 224.0    |           | 224.0    | 북아현동<br>1017-2공,<br>1017-1공에서<br>지적분할 하여<br>면적감소           |
| 49  |         |           | 1-1762 | 1-1762 | 대  | 대  | 44.0     | 44.0     | 44.0      | 44.0     | -                                                          |
| 50  |         |           | 1-1776 | 1-1776 | 학  | 학  | 2.0      | 2.0      | 2.0       | 2.0      | -                                                          |
| 51  |         |           | 1-1777 | 1-1777 | 학  | 학  | 310.0    | 301.0    | 310.0     | 301.0    | 북아현동<br>1-2009학 분할로<br>면적감소                                |
| 52  |         |           |        | 1-2009 |    | 학  |          | 9.0      |           | 9.0      | 북아현동<br>1-1777학<br>에서 분할                                   |

| 필지수 | 구분      | 소재지       | 지번     |        | 지목 |    | 공부상면적(㎡)  |           | 시설결정면적(㎡)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53  | 제 1 캠퍼스 | 서대문구 북아현동 | 1-1796 | 1-1796 | 학  | 학  | 1.0       | 1.0       | 1.0       | 1.0       | -                                 |
| 54  |         |           | 1-1815 | 1-1815 | 대  | 대  | 1.0       | 1.0       | 1.0       | 1.0       | -                                 |
| 55  |         |           | 1-1816 | 1-1816 | 대  | 대  | 1.0       | 1.0       | 1.0       | 1.0       | -                                 |
| 56  |         |           | 1-1923 | 1-1923 | 학  | 학  | 91.0      | 91.0      | 91.0      | 91.0      | -                                 |
| 57  |         |           | -      | 1-1926 | -  | 대  | -         | 12.0      | -         | 12.0      | 북아현동 1017-2공에서 분할로 면적증가           |
| 58  |         | 서대문구 대현동  | 11-1   | 11-1   | 학  | 학  | 219,702.0 | 219,689.0 | 219,702.0 | 219,689.0 | 대현동151-1공으로 분할로 면적감소              |
| 59  |         |           | 11-8   | 11-8   | 구  | 구  | 570.0     | 570.0     | 570.0     | 570.0     |                                   |
| 60  |         |           | 11-9   | 11-9   | 구  | 구  | 78.0      | 78.0      | 78.0      | 78.0      |                                   |
| 61  |         |           | 11-10  | 11-10  | 도  | 도  | 568.0     | 568.0     | 568.0     | 568.0     |                                   |
| 62  |         |           | 16-6   | -      | 철  | -  | 17,461.0  | 16,925.0  | 470.0     | -         | 금회제척부지                            |
| 63  |         |           | 17-1   | 17-1   | 대  | 대  | 605.0     | 520.0     | 605.0     | 520.0     | 대현동151-1공으로 분할로 면적감소              |
| 64  |         |           |        | 151-1  |    | 공  |           | 97.9      |           | -         | 대현동11-1학, 대현동17-1대에서 분할로 인한 부지 제척 |
| 65  |         |           | 17-34  | 17-34  | 학  | 학  | 224.0     | 224.0     | 224.0     | 224.0     |                                   |
| 66  |         |           | 17-37  | 17-37  | 학  | 학  | 76.0      | 76.0      | 76.0      | 76.0      |                                   |
| 67  |         |           | 17-39  | 17-39  | 학  | 학  | 5.0       | 5.0       | 5.0       | 5.0       |                                   |
| 68  |         |           | 17-40  | 17-40  | 학  | 학  | 1.0       | 1.0       | 1.0       | 1.0       |                                   |
| 69  |         |           | 산6-7   | 산6-7   | 철  | 철  | 20.0      | 20.0      | 20.0      | 20.0      |                                   |
| 70  |         | 서대문구 대신동  | 33     | 33     | 학  | 학  | 9,419.2   | 9,419.2   | 9,419.2   | 9,419.2   |                                   |
| 71  |         |           | 34-16  | 34-16  | 대  | 대  | 145.4     | 145.4     | 145.4     | 145.4     |                                   |
| 72  |         |           | 34-17  | 34-17  | 대  | 대  | 158.7     | 158.7     | 158.7     | 158.7     |                                   |
| 73  |         |           | 35     | 35     | 대  | 대  | 289.9     | 289.9     | 289.9     | 289.9     |                                   |
| 74  |         |           | 35-1   | 35-1   | 학  | 학  | 2,736.5   | 2,736.5   | 2,736.5   | 2,736.5   |                                   |
| 75  |         |           | 35-10  | 35-10  | 대  | 대  | 263.5     | 263.5     | 263.5     | 263.5     |                                   |
| 76  |         |           | 36     | 36     | 학  | 학  | 12,552.6  | 12,552.6  | 12,552.6  | 12,552.6  |                                   |
| 77  |         |           | 36-7   | 36-7   | 대  | 대  | 259.8     | 259.8     | 259.8     | 259.8     |                                   |
| 78  |         |           | 47     | 47     | 학  | 학  | 46,504.3  | 46,504.3  | 46,504.3  | 46,504.3  |                                   |

| 필지수 | 구분      | 소재지      | 지번     |        | 지목 |    | 공부상면적(㎡)  |           | 시설결정면적(㎡)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79  | 제 1 캠퍼스 | 서대문구 대신동 | 113-4  | 113-4  | 학  | 학  | 21.2      | 21.2      | 21.2      | 21.2      |                       |
| 80  |         |          | 113-5  | 113-5  | 학  | 학  | 120.1     | 120.1     | 120.1     | 120.1     |                       |
| 81  |         |          | 113-6  | 113-6  | 학  | 학  | 79.7      | 79.7      | 79.7      | 79.7      |                       |
| 82  |         |          | 143-20 | 143-20 | 도  | 도  | 1,833.7   | 1,704.0   | 556.3     | 556.3     | 대신동 143-40대 분할로 면적 변경 |
| 83  |         |          | 143-32 | 143-32 | 학  | 학  | 87.4      | 87.4      | 87.4      | 87.4      |                       |
| 84  |         |          | 143-33 | 143-33 | 학  | 학  | 1,318.9   | 1,318.9   | 1,318.9   | 1,318.9   |                       |
| 85  |         |          | 143-38 | 143-38 | 학  | 학  | 67.2      | 67.2      | 67.2      | 67.2      |                       |
| 86  |         |          | 143-39 | 143-39 | 학  | 학  | 80.5      | 80.5      | 80.5      | 80.5      |                       |
| 87  |         |          | 143-40 | 143-40 | 대  | 대  | 129.7     | 129.7     | 129.7     | 129.7     |                       |
| 소 계 |         |          |        |        |    |    | 422,412.3 | 429,032.0 | 402,978.9 | 401,723.9 |                       |
| 88  | 제2 캠퍼스  | 서대문구 대신동 | 22     | 22     | 학  | 학  | 3,972.9   | 3,972.9   | 3,972.9   | 3,972.9   |                       |
| 소 계 |         |          |        |        |    |    | 3,972.9   | 3,972.9   | 3,972.9   | 3,972.9   |                       |
| 89  | 제 3 캠퍼스 | 서대문구 신촌동 | 2-203  | 2-203  | 학  | 학  | 2,194.0   | 2,194.0   | 2,194.0   | 2,194.0   |                       |
| 90  |         |          | 2-204  | 2-204  | 학  | 학  | 12,050.0  | 12,050.0  | 12,050.0  | 12,050.0  |                       |
| 91  |         |          | 2-205  | 2-205  | 임  | 임  | 6,765.0   | 6,765.0   | 6,765.0   | 6,765.0   |                       |
| 92  |         |          | 2-206  | 2-206  | 학  | 학  | 15,708.0  | 15,708.0  | 15,708.0  | 15,708.0  |                       |
| 93  |         |          | 2-209  | 2-209  | 학  | 학  | 259.0     | 259.0     | 259.0     | 259.0     |                       |
| 94  |         |          | 2-210  | 2-210  | 학  | 학  | 1,626.0   | 1,626.0   | 1,626.0   | 1,626.0   |                       |
| 95  |         |          | 2-211  | 2-211  | 학  | 학  | 2,296.0   | 2,296.0   | 2,296.0   | 2,296.0   |                       |
| 96  |         |          | 2-212  | 2-212  | 임  | 임  | 453.0     | 453.0     | 453.0     | 453.0     |                       |
| 97  |         |          | 2-213  | 2-213  | 임  | 임  | 1,353.0   | 1,353.0   | 1,353.0   | 1,353.0   |                       |
| 98  |         |          | 2-214  | 2-214  | 학  | 학  | 461.0     | 461.0     | 461.0     | 461.0     |                       |
| 99  |         |          | 2-215  | 2-215  | 학  | 학  | 985.0     | 985.0     | 985.0     | 985.0     |                       |
| 100 |         |          | 2-242  | 2-242  | 학  | 학  | 92.0      | 92.0      | 92.0      | 92.0      |                       |

| 필지수 | 구분      | 소재지       | 지번     |        | 지목 |    | 공부상면적(㎡)  |           | 시설결정면적(㎡)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101 | 제 3 캠퍼스 | 서대문구 북아현동 | 1-1616 | 1-1616 | 학  | 학  | 6,071.0   | 6,071.0   | 6,071.0   | 6,071.0   |    |
| 102 |         |           | 1-1617 | 1-1617 | 학  | 학  | 4,342.0   | 4,342.0   | 4,342.0   | 4,342.0   |    |
| 103 |         |           | 1-1620 | 1-1620 | 학  | 학  | 48,470.0  | 48,470.0  | 48,470.0  | 48,470.0  |    |
| 104 |         |           | 1-1621 | 1-1621 | 학  | 학  | 19,159.0  | 19,159.0  | 19,159.0  | 19,159.0  |    |
| 105 |         |           | 1-1622 | 1-1622 | 임  | 임  | 1,580.0   | 1,580.0   | 1,580.0   | 1,580.0   |    |
| 106 |         |           | 1-1623 | 1-1623 | 학  | 학  | 205.0     | 205.0     | 205.0     | 205.0     |    |
| 107 |         |           | 1-1784 | 1-1784 | 학  | 학  | 194.0     | 194.0     | 194.0     | 194.0     |    |
| 108 |         |           | 1-1797 | 1-1797 | 학  | 학  | 43.0      | 43.0      | 43.0      | 43.0      |    |
| 소 계 |         |           |        |        |    |    | 124,306.0 | 124,306.0 | 124,306.0 | 124,306.0 |    |
| 109 | 제4 캠퍼스  | 서대문구 북아현동 | 1-1615 | 1-1615 | 임  | 임  | 397.0     | 397.0     | 397.0     | 397.0     |    |
| 110 |         |           | 1-1774 | 1-1774 | 임  | 임  | 47.0      | 47.0      | 47.0      | 47.0      |    |
| 111 |         |           | 1-1775 | 1-1775 | 임  | 임  | 214.0     | 214.0     | 214.0     | 214.0     |    |
| 소 계 |         |           |        |        |    |    | 658.0     | 658.0     | 658.0     | 658.0     |    |
| 112 | 제5 캠퍼스  | 서대문구 신촌동  | 81-13  | 81-13  | 학  | 학  | 1,784.0   | 1,784.0   | 1,784.0   | 1,784.0   |    |
| 113 |         | 서대문구 대신동  | 20     | 20     | 학  | 학  | 10,681.3  | 10,681.3  | 10,681.3  | 10,681.3  |    |
| 114 |         |           | 143-6  | 143-6  | 대  | 대  | 2,237.7   | 2,237.7   | 2,024.0   | 2,024.0   |    |
| 소 계 |         |           |        |        |    |    | 14,703.0  | 14,703.0  | 14,489.3  | 14,489.3  |    |
| 합 계 |         |           |        |        |    |    | 566,052.2 | 572,671.9 | 546,405.1 | 545,150.1 |    |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1) 구역계획

| 캠퍼스       | 구역   | 구분   |    | 면적 (㎡)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제1<br>캠퍼스 | 일반관리 | ①    | ①  | 19,834.9    | -           | 19,834.9    | -                       |                         |
|           |      | ②    | ②  | 36,339.0    | -           | 36,339.0    | -                       |                         |
|           |      | ③    | ③  | 19,873.0    | -           | 19,873.0    | -                       |                         |
|           |      | ④    | ④  | 13,079.0    | 증) 672.0    | 13,751.0    | 학교부지 추가로<br>인한 면적 증가    |                         |
|           |      | ⑥    | ⑥  | 17,893.0    | -           | 17,893.0    | -                       |                         |
|           |      | ⑦    | ⑦  | 45,951.0    | 감) 564.0    | 45,387.0    | 중복결정부지 제척으로<br>인한 면적 감소 |                         |
|           |      | ⑧    | ⑧  | 25,641.0    | -           | 25,641.0    | -                       |                         |
|           |      | ⑨    | ⑨  | 12,073.0    | -           | 12,073.0    | -                       |                         |
|           |      | ⑩    | ⑩  | 25,989.0    | 감) 893.0    | 25,096.0    | 중복결정부지 제척으로<br>인한 면적 감소 |                         |
|           |      | ⑪    | ⑪  | 40,243.0    | -           | 40,243.0    | -                       |                         |
|           |      | ⑬    | ⑬  | 13,464.0    | -           | 13,464.0    | -                       |                         |
|           |      | ⑭    | ⑭  | 14,830.0    | -           | 14,830.0    | -                       |                         |
|           |      | 상징경관 | ⑮  | ⑮           | 43,732.0    | 감) 437.0    | 43,295.0                | 학교부지 제척에 따른<br>인한 면적 감소 |
|           |      | 외부활동 | ⑯  | ⑯           | 13,121.0    | 감) 33.0     | 13,088.0                | 학교부지 제척에 따른<br>인한 면적 감소 |
|           | 녹지보전 | ⑰    | ⑰  | 60,916.0*   | -           | 60,916.0*   | -                       |                         |
|           | 소 계  |      |    | 402,978.9   | 감) 1,255.00 | 401,723.9   | -                       |                         |
| 제2<br>캠퍼스 | 일반관리 | ①    | ⑱  | 3,972.9     | -           | 3,972.9     | ①구역에서 분할                |                         |
|           | 소 계  |      |    | 3,972.9     | -           | 3,972.9     | -                       |                         |
| 제3<br>캠퍼스 | 일반관리 | ⑤    | ⑤  | 17,537.9    | -           | 17,537.9    | -                       |                         |
|           | 녹지보전 | ⑲    | ⑲  | 106,768.1** | -           | 106,768.1** | -                       |                         |
|           | 소 계  |      |    | 124,306.0   | -           | 124,306.0   | -                       |                         |
| 제4<br>캠퍼스 | 일반관리 | ⑤    | ㉑  | 658.0       | -           | 658.0       | ⑤구역에서 분할                |                         |
|           | 소 계  |      |    | 658.0       | -           | 658.0       | -                       |                         |
| 제5<br>캠퍼스 | 일반관리 | ⑫    | ⑫  | 14,489.3    | -           | 14,489.3    | -                       |                         |
|           | 소 계  |      |    | 14,489.3    | -           | 14,489.3    | -                       |                         |
| 합 계       |      |      |    | 546,405.1   | 감) 1,255.0  | 545,150.1   | -                       |                         |

\*비오톱 1등급지 515㎡ 포함

\*\*비오톱 1등급지 93,365㎡ 포함

## 2) 밀도계획 (건폐율)

| 구 분       |                           | 총면적 (㎡)    |            | 비오톱<br>1등급지 | 밀도산정<br>기준면적(㎡) |            | 조례<br>건폐율<br>(%) | 사용건폐율(%) |       | 관리건폐율(%) |       |
|-----------|---------------------------|------------|------------|-------------|-----------------|------------|------------------|----------|-------|----------|-------|
|           |                           | 기정         | 변경         |             | 기정              | 변경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제1<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br>(자연경관지구) | 230,593.50 | 230,587.50 | 309.00      | 230,284.50      | 230,278.50 | 60.00            | 24.79    | 23.17 | 31.40    | 30.00 |
|           | 제1종<br>일반주거지역             | 93,252.50  | 91,331.50  | 206.00      | 93,046.50       | 91,125.50  |                  |          |       |          |       |
|           | 제2종<br>일반주거지역<br>(7층 이하)  | 79,132.90  | 79,132.90  | -           | 79,132.90       | 79,132.90  | 60.00            |          | 32.36 |          | 40.00 |
|           | 제3종<br>일반주거지역             | -          | 672.00     | -           | -               | 672.00     | 50.00            |          | 47.05 |          | 50.00 |
|           | 소 계                       | 402,978.90 | 401,723.90 | 515.00      | 402,463.90      | 401,208.90 | 59.98            |          | 25.03 |          | 32.01 |
| 제2<br>캠퍼스 | 제2종<br>일반주거지역<br>(7층 이하)  | 3,972.90   | 3,972.90   | -           | 3,972.90        | 3,972.90   | 60.00            |          | 49.71 |          | 55.00 |
|           | 소 계                       | 3,972.90   | 3,972.90   | -           | 3,972.90        | 3,972.90   | 60.00            |          | 49.71 |          | 55.00 |
| 제3<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br>(자연경관지구) | 95,069.00  | 95,069.00  | 64,149.70   | 30,919.30       | 30,919.30  | 60.00            |          | 20.84 |          | 30.00 |
|           | 제1종<br>일반주거지역             | 29,237.00  | 29,237.00  | 29,215.70   | 21.30           | 21.30      |                  |          |       |          |       |
|           | 소 계                       | 124,306.00 | 124,306.00 | 93,365.40   | 30,940.60       | 30,940.60  | 60.00            |          |       |          |       |
| 제4<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br>(자연경관지구) | 658.00     | 658.00     | -           | 658.00          | 658.00     | 60.00            | -        | -     |          |       |
|           | 소 계                       | 658.00     | 658.00     | -           | 658.00          | 658.00     | 60.00            | -        | -     |          |       |
| 제5<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             | 1,836.90   | 1,836.90   | -           | 1,836.90        | 1,836.90   | 60.00            | -        | -     |          |       |
|           | 제2종<br>일반주거지역<br>(7층 이하)  | 12,652.40  | 12,652.40  | -           | 12,652.40       | 12,652.40  | 60.00            | 28.03    | 30.00 |          |       |
|           | 소 계                       | 14,489.30  | 14,489.30  | -           | 14,489.30       | 14,489.30  | 60.00            | 24.47    | 26.20 |          |       |
| 합 계       |                           | 546,405.10 | 545,150.10 | 93,880.40   | 452,524.70      | 451,269.70 | 59.99            | 24.79    | 24.90 | 31.40    | 31.84 |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건폐율 구분

## 3) 밀도계획 (용적률)

| 구 분       |                           | 총면적(㎡)     |            | 비오톱<br>1등급지 | 밀도산정<br>기준면적(㎡) |            | 조례<br>용적률<br>(%) | 사용용적률(%) |       | 계획용적률(%) |       | 관리용적률(%) |        |
|-----------|---------------------------|------------|------------|-------------|-----------------|------------|------------------|----------|-------|----------|-------|----------|--------|
|           |                           | 기정         | 변경         |             | 기정              | 변경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제1<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br>(자연경관지구) | 230,593.50 | 230,587.50 | 309.00      | 230,284.50      | 230,278.50 | 150.00           | 83.93    |       | 85.56    |       | 92.61    |        |
|           | 제1종<br>일반주거지역             | 93,252.50  | 91,331.50  | 206.00      | 93,046.50       | 91,125.50  |                  |          |       |          |       |          |        |
|           | 제2종<br>일반주거지역<br>(7층 이하)  | 79,132.90  | 79,132.90  | -           | 79,132.90       | 79,132.90  | 200.00           | 153.57   |       | 151.49   |       | 157.05   |        |
|           | 제3종<br>일반주거지역             | -          | 672.00     | -           | -               | 672.00     | 250.00           | 225.88   |       | 225.88   |       | 230.00   |        |
|           | 소 계                       | 402,978.90 | 401,723.90 | 515.00      | 402,463.90      | 401,208.90 | 160.03           | 97.90    |       | 98.80    |       | 105.55   |        |
| 제2<br>캠퍼스 | 제2종<br>일반주거지역<br>(7층 이하)  | 3,972.90   | 3,972.90   | -           | 3,972.90        | 3,972.90   | 200.00           | 245.17   |       | 200.00   |       | 200.00   |        |
|           | 소 계                       | 3,972.90   | 3,972.90   | -           | 3,972.90        | 3,972.90   | 200.00           | 245.17   |       | 200.00   |       | 200.00   |        |
| 제3<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br>(자연경관지구) | 95,069.00  | 95,069.00  | 64,149.70   | 30,919.30       | 30,919.30  | 150.00           | 89.65    | 51.18 | 105.96   | 51.18 | 113.38   | 56.68  |
|           | 제1종<br>일반주거지역             | 29,237.00  | 29,237.00  | 29,215.70   | 21.30           | 21.30      |                  |          |       |          |       |          |        |
|           | 소 계                       | 124,306.00 | 124,306.00 | 93,365.40   | 30,940.60       | 30,940.60  | 150.00           |          |       |          |       |          |        |
| 제4<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br>(자연경관지구) | 658.00     | 658.00     | -           | 658.00          | 658.00     | 150.00           | -        |       | -        |       | -        |        |
|           | 소 계                       | 658.00     | 658.00     | -           | 658.00          | 658.00     | 150.00           | -        |       | -        |       | -        |        |
| 제5<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             | 1,836.90   | 1,836.90   | -           | 1,836.90        | 1,836.90   | 150.00           | -        |       | -        |       | 75.00    |        |
|           | 제2종<br>일반주거지역<br>(7층 이하)  | 12,652.40  | 12,652.40  | -           | 12,652.40       | 12,652.40  | 200.00           | 74.06    |       | 74.06    |       | 75.00    |        |
|           | 소 계                       | 14,489.30  | 14,489.30  | -           | 14,489.30       | 14,489.30  | 193.66           | 64.67    |       | 64.67    |       | 75.00    |        |
| 합 계       |                           | 546,405.10 | 545,150.10 | 93,880.40   | 452,524.70      | 451,269.70 | 160.76           | 89.65    | 94.79 | 105.96   | 95.19 | 113.38   | 101.89 |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용적률 구분

## 4) 구역별 밀도계획 (용적률)

| 구분        | 구역 | 밀도산정<br>기점면적(㎡) | 용적률 (%)    |        |        |        |        |        |        |        |        |        |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점 | 변경              | 기점         | 변경     | 조례용적률  |        | 사용용적률  |        | 계획용적률  |        | 이전용적률  |        | 관리용적률  |                                                                                                                                             | 기정 | 변경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제1<br>캠퍼스 | ①  | 19,834.90       | 19,834.90  | 187.70 | 185.24 | 231.11 | 228.16 | 231.11 | 228.16 | +52.30 | +54.76 | 240.00 | 235.00 | - 17구역에서 10,861.59㎡ 용적 이전받음                                                                                                                 |    |    |
|           | ②  | 36,339.00       | 36,339.00  | 180.23 | 180.23 | 118.65 | 195.08 | 245.92 | 195.08 | +69.77 | +69.77 | 250.00 | 205.00 | - 17구역에서 25,353.72㎡ 용적 이전받음                                                                                                                 |    |    |
|           | ③  | 19,873.00       | 19,873.00  | 189.10 | 189.10 | 100.95 | 100.95 | 183.98 | 100.95 | -      | -      | 189.10 | 110.00 |                                                                                                                                             |    |    |
|           | ④  | 13,079.00       | 13,751.00  | 165.31 | 169.45 | 129.68 | 134.38 | 178.20 | 134.38 | +14.69 | +10.55 | 180.00 | 145.00 | - 17구역에서 1,450.73㎡ 용적 이전받음                                                                                                                  |    |    |
|           | ⑥  | 17,893.00       | 17,893.00  | 150.00 | 150.00 | 94.45  | 97.31  | 94.45  | 97.31  | -      | -      | 105.00 | 105.00 |                                                                                                                                             |    |    |
|           | ⑦  | 45,951.00       | 45,387.00  | 150.00 | 150.00 | 122.16 | 123.43 | 121.67 | 123.43 | -      | -      | 130.00 | 130.00 |                                                                                                                                             |    |    |
|           | ⑧  | 25,641.00       | 25,641.00  | 150.00 | 150.00 | 165.19 | 165.19 | 165.19 | 165.19 | +25.00 | +25.00 | 175.00 | 175.00 | - 17구역에서 6,410.25㎡ 용적 이전받음                                                                                                                  |    |    |
|           | ⑨  | 12,073.00       | 12,073.00  | 150.00 | 150.00 | 35.34  | 35.34  | 35.34  | 35.34  | -      | -      | 40.00  | 45.00  |                                                                                                                                             |    |    |
|           | ⑩  | 25,989.00       | 25,096.00  | 150.00 | 150.00 | 145.19 | 131.01 | 155.93 | 131.01 | +10.00 | +10.00 | 160.00 | 140.00 | - 17구역에서 2,509.60㎡ 용적 이전받음                                                                                                                  |    |    |
|           | ⑪  | 40,243.00       | 40,243.00  | 150.00 | 150.00 | 95.00  | 95.00  | 124.51 | 95.00  | -      | -      | 130.00 | 105.00 |                                                                                                                                             |    |    |
|           | ⑬  | 13,464.00       | 13,464.00  | 200.00 | 200.00 | 80.17  | 80.17  | 80.17  | 80.17  | -      | -      | 90.00  | 90.00  |                                                                                                                                             |    |    |
|           | ⑭  | 14,830.00       | 14,830.00  | 178.81 | 178.81 | 85.61  | 85.61  | 85.61  | 109.92 | -      | -      | 95.00  | 115.00 | - 이대부속고등학교 철거 후<br>이대부속중고이음학교 신축 장래계획 반영                                                                                                    |    |    |
|           | ⑮  | 43,732.00       | 43,295.00  | 150.00 | 150.00 | 23.83  | 26.38  | 23.83  | 26.38  | -      | -      | 27.00  | 30.00  |                                                                                                                                             |    |    |
|           | ⑯  | 13,121.00       | 13,088.00  | 156.23 | 156.24 | 89.61  | 88.31  | 90.04  | 88.31  | -      | -      | 95.00  | 95.00  |                                                                                                                                             |    |    |
|           | ⑰  | 60,401.00       | 60,401.00  | 150.00 | 150.00 | 0.80   | 0.80   | 0.80   | 0.80   | -80.69 | -77.13 | 0.80   | 0.80   | - 1구역으로 10,861.59㎡ 용적 이전함<br>- 2구역으로 25,353.72㎡ 용적 이전함<br>- 4구역으로 1,450.73㎡ 용적 이전함<br>- 8구역으로 6,410.25㎡ 용적 이전함<br>- 10구역으로 2,509.60㎡ 용적 이전함 |    |    |
|           | 소계 | 402,463.90      | 401,208.90 | 160.22 | 159.61 | 92.72  | 97.90  | 111.05 | 98.80  | -      | -      | 117.44 | 105.55 |                                                                                                                                             |    |    |
| 제2<br>캠퍼스 | ⑱  | 3,972.90        | 3,972.90   | 200.00 | 200.00 | 245.92 | 245.17 | 231.11 | 200.00 | -      | -      | 240.00 | 200.00 | - ①구역에서 분할                                                                                                                                  |    |    |
|           | 소계 | 3,972.90        | 3,972.90   | 200.00 | 200.00 | 245.92 | 245.17 | 231.11 | 200.00 | -      | -      | 240.00 | 200.00 |                                                                                                                                             |    |    |

| 구분        | 구역  |    | 밀도산정<br>기준면적(㎡) |            |        |        | 용적률 (%) |       |        |       |       |       |        |        |            |    |       |  | 비고 |
|-----------|-----|----|-----------------|------------|--------|--------|---------|-------|--------|-------|-------|-------|--------|--------|------------|----|-------|--|----|
|           |     |    |                 |            |        |        | 조례용적률   |       |        |       | 사용용적률 |       | 계획용적률  |        | 이전용적률      |    | 관리용적률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 제3<br>캠퍼스 | ⑤   | ⑤  | 17,537.90       | 17,537.90  | 150.00 | 150.00 | 87.02   | 90.29 | 87.02  | 90.29 | -     | -     | 90.00  | 100.00 |            |    |       |  |    |
|           | ⑩   | ⑩  | 13,402.70       | 13,402.70  | 150.00 | 150.00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30,940.60       | 30,940.60  | 150.00 | 150.00 | 50.11   | 51.18 | 48.30  | 51.18 | -     | -     | 51.01  | 56.68  |            |    |       |  |    |
| 제4<br>캠퍼스 | ⑤   | ⑩  | 658.00          | 658.00     | 150.00 | 150.00 | -       | -     | 87.02  | -     | -     | -     | 90.00  | -      | - ⑤구역에서 분할 |    |       |  |    |
|           | 소계  |    | 658.00          | 658.00     | 150.00 | 150.00 | -       | -     | 87.02  | -     | -     | 90.00 | -      |        |            |    |       |  |    |
|           | ⑫   | ⑫  | 14,489.30       | 14,489.30  | 193.66 | 193.66 | 89.82   | 64.67 | 88.83  | 64.67 | -     | -     | 100.00 | 75.00  |            |    |       |  |    |
| 제5<br>캠퍼스 | 소계  |    | 14,489.30       | 14,489.30  | 193.66 | 193.66 | 89.82   | 64.67 | 88.83  | 64.67 | -     | -     | 100.00 | 75.00  |            |    |       |  |    |
|           | 합 계 |    | 452,524.70      | 451,269.70 | 160.58 | 160.76 | 89.65   | 94.79 | 105.96 | 95.19 | -     | -     | 113.38 | 101.89 |            |    |       |  |    |

※ ⑩구역의 용적률 산정 시 비오름 1등급지(515m<sup>2</sup>)는 대지면적에서 제외  
 ※ ⑩구역의 용적률 산정 시 비오름 1등급지(93,365m<sup>2</sup>)는 대지면적에서 제외

## 5) 높이계획

| 구역 | 높이(m)                              |                                                 | 비고                                 |
|----|------------------------------------|-------------------------------------------------|------------------------------------|
|    | 기정                                 | 변경                                              |                                    |
| ①  | • 지표로부터 최대 20~60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60m 이하                            |                                    |
| ②  | • 지표로부터 최대 20~60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60m 이하<br>(28m이하 구간 일부 55m이하로 변경) | 동창회관 철거 후<br>이화웨스트캠퍼스 신축           |
| ③  | • 지표로부터 최대 20~35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35m 이하                            |                                    |
| ④  | • 지표로부터 최대 20~35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35m 이하                            |                                    |
| ⑤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
| ⑥  | •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                                    |
| ⑦  | •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                                    |
| ⑧  | •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                                    |
| ⑨  | •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                                    |
| ⑩  | •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                                    |
| ⑪  | • 지표로부터 최대 28~35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8~35m 이하                            |                                    |
| ⑫  | • 지표로부터 최대 40m 이하<br>및 지상 5층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40m 이하<br>및 지상 5층 이하                 |                                    |
| ⑬  | • 지표로부터 최대 20~60m 이하<br>및 지상 5층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60m 이하<br>및 지상 5층 이하              |                                    |
| ⑭  | • 지표로부터 최대 20~35m 이하 및<br>지상 6층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35m 이하 및<br>지상 7층 이하              | 이화금관고 철거 후<br>이대부속중고이음학교<br>정래계획추가 |
| ⑮  | •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                                    |
| ⑯  |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                                    |
| ⑰  |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
| ⑱  | • 기존 건축물은 현 범위 내 활용                | • 기존 건축물은 현 범위 내 활용                             |                                    |
| ⑲  | -                                  | • 지표로부터 최대 20~35m 이하                            | ①구역에서 분할                           |
| ㉔  | -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⑤구역에서 분할                           |

## 6) 변경 건축물 조서

| 구 분       | 구역      | 건물명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면적(㎡)  |           | 층 수<br>(지하/지상)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제1<br>캠퍼스 | ①<br>구역 | 이대고등정보<br>통신교육관<br>(sk텔레콤관) | 1,436.53 | 1,507.15 | 6,600.28  | 6,637.17  | 4,257.30  | 4,257.30  | 2/5            | 2/5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②<br>구역 | 동창회관 →<br>이화웨스트<br>캠퍼스      | 5,211.93 | 6,806.36 | 24,678.60 | 69,300.00 | 20,415.69 | 47,113.00 | 2/8            | 4/14 | •철거 후 신축                 |
|           |         | 학관                          | 3,315.95 | 3,184.15 | 17,783.75 | 17,640.81 | 15,745.31 | 15,674.81 | 1/8            | 1/8  | •준공에 의한<br>면적정정          |
|           |         | 주차관리실                       | 53.70    | -        | 53.70     | -         | 53.70     | -         | -/1            | -    | •철거반영                    |
|           |         | 부속유치원                       | -        | 462.85   | -         | 1,429.5   | -         | 1,156.47  | -              | 1/2  | •철거계획취소                  |
|           |         | 부속유치원<br>창고1                | -        | 25.20    | -         | 25.20     | -         | 25.20     | -              | -/1  | •철거계획취소                  |
|           |         | 부속유치원<br>창고2                | -        | 18.00    | -         | 18.00     | -         | 18.00     | -              | -/1  | •철거계획취소                  |
|           | ③<br>구역 | 인문관                         | 1,670.19 | 1,451.19 | 11,985.40 | 11,985.40 | 8,341.50  | 8,341.50  | 2/7            | 2/7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④<br>구역 | 이화오투기<br>어린이집               | -        | 316.19   | -         | 1,995.85  | -         | 1,517.93  | -              | 1/5  | •금회시설추가                  |
|           | ⑥<br>구역 | 산학협력동1<br>→ 연구협력관           | 3,274.60 | 2,753.56 | 11,570.30 | 12,404.78 | 6,007.40  | 6,518.61  | 2/4            | 2/4  | •준공에 의한<br>면적정정          |
|           | ⑦<br>구역 | 기숙사신관A동                     | 1,937.47 | 1,737.39 | 11,884.73 | 11,891.32 | 8,272.20  | 8,252.66  | 2/5            | 2/5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기숙사신관B동                     | 1,982.35 | 1,893.74 | 11,849.72 | 11,782.32 | 8,237.40  | 8,216.39  | 2/5            | 2/5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기숙사신관C동                     | 1,745.10 | 1,776.86 | 11,867.86 | 11,854.90 | 8,300.78  | 8,280.67  | 2/5            | 2/5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기숙사신관D동                     | 1,747.48 | 1,767.62 | 11,964.23 | 11,781.50 | 8,290.47  | 8,226.21  | 2/5            | 2/5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기숙사신관E동                     | 1,683.73 | 1,350.52 | 11,927.37 | 12,066.94 | 5,312.11  | 5,427.80  | 2/5            | 2/5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기숙사신관<br>부속동                | 942.34   | 945.33   | 1,626.51  | 1,605.73  | 919.62    | 942.37    | 1/1            | 1/1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기숙사<br>연결통로                 | 55.66    | -        | 55.66     | -         | 55.66     | -         | -/1            | -    | •기숙사신관<br>E동 포함          |
|           | ⑨<br>구역 | 아령당(가정관)                    | 281.43   | 240.03   | 264.06    | 264.06    | 240.03    | 240.03    | 1/1            | 1/1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구 분       | 구역      | 건물명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면적(㎡) |           | 층 수<br>(지하/지상)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⑩<br>구역 | 간호대재개발<br>→<br>이화첨단<br>도서관  | 1,744    | 2,446.38 | 14,822   | 9,999.26  | 12,208   | 7,353.13  | 2/7            | 2/4 | •철거 후<br>신축계획 변경<br>(입면 보존<br>방식 변경) |
|           | ⑪<br>구역 | 경영관                         | 793.44   | 725.29   | 1,539.17 | 1,539.17  | 1,435.04 | 1,435.04  | 1/2            | 1/2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미술관 →<br>조형예술관A동/<br>자연사박물관 | 898.58   | 2,466.69 | 5,412.40 | 12,226.39 | 5,236.30 | 11,758.65 | 1/6            | 1/6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체육관                         | 1,190.08 | 1,772.65 | 6,682.61 | 6,682.61  | 4,723.66 | 4,723.66  | 1/4            | 1/4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도예관                         | 1,643.08 | 1,454.35 | 5,441.59 | 5,441.59  | 5,199.23 | 5,199.23  | 1/5            | 1/5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미술관 및<br>자연사박물관             | 1,245.52 | -        | 6,813.99 | -         | 6,522.35 | -         | 1/5            | -   | •조형예술관A동<br>/자연사박물관<br>으로 포함         |
|           |         |                             |          |          |          |           |          |           |                |     |                                      |
| 제1<br>캠퍼스 | ⑭<br>구역 | 이화금란고<br>교사2                | 1,274.57 | 1,274.57 | 5,281.59 | 5,461.59  | 5,281.59 | 5,461.59  | -/5            | -/5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 이화금란고<br>식당                 | 180.00   | -        | 180.00   | -         | 180.00   | -         | -/1            | -   | •이화금란고<br>교사2로 포함                    |
|           | ⑮<br>구역 | 과학관                         | 1,220.83 | 1,220.83 | 4,122.16 | 4,122.16  | 2,898.59 | 3,898.59  | 1/3            | 1/3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 ⑯<br>구역 | 이화파빌리온                      | 199.00   | -        | 199.00   | -         | 199.00   | -         | -/1            | -   | •계획 취소                               |
| 제2<br>캠퍼스 | ⑰<br>구역 | 다락방교회                       | 239.67   | 239.67   | 779.83   | 750.08    | 497.19   | 467.44    | 1/2            | 1/2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제3<br>캠퍼스 | ⑤<br>구역 | 행정관                         | 631.13   | 559.66   | 827.95   | 827.95    | 760.35   | 760.35    | 1/2            | 1/2 | •건축물대장<br>반영에 의한<br>면적정정             |
| 제5<br>캠퍼스 | ⑫<br>구역 | 유치원 및<br>직장보육시설             | 1,627.10 | -        | 5,099.87 | -         | 3,643.22 | -         | 1/3            | -   | •계획 취소                               |

## 3. 입안사유

-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경계 조정 및 면적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첨단학과신설에 따른 강의실·실험실 확충 및 산학연 협력, 창업지원 연계를 위한 이화웨스트캠퍼스 신축을 위해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완화하고자 함
- 아울러, 이화침단도서관 신축계획(헬렌관 입면 보존) 및 이대부속중고이음학교 신축계획(장기)을 반영하고자 함

##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25. 4.17. ~ 5.1.
- 계 재 신 문 :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 열 략 장 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의견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 협의부서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반영 여부 |     |     |         |          |          |         |          |          |  |
|----------------------|----------------------------------------------------------------------------------------------------------------------------------------------------------------------|-----------------------------------------------------------------------------------------------------------------------------------------------------------------------------------------------------------------------------------------------------------------------------------------------------------------------------------------------------------------------------------------------------------------------------------------------|-------|-----|-----|---------|----------|----------|---------|----------|----------|--|
| 서울시<br>친환경<br>건물과    |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였으나 금회 사업계획의 변경이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의견을 들것음.                                                                                                                                                                                                                                                                                                                                                                          | 반영    |     |     |         |          |          |         |          |          |  |
| 서울시<br>자원<br>순환과     | <사업장폐기물><br>○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배출자 신고하여야 함.                                                                           | ○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배출자를 신고하겠음.                                                                                                                                                                                                                                                                                                                                                                                     | 반영    |     |     |         |          |          |         |          |          |  |
| 서울시<br>대기<br>정책과     | <사업 시행 시 준수 사항><br>○ 친환경 건설기계(Euro5, Tier3이상) 사용 및 공회전 자제 등                                                                                                          | ○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 시 반영                                                                                                                                                                                                                                                                                                                                                                                                                        | 반영    |     |     |         |          |          |         |          |          |  |
| 서울시<br>도로<br>관리과     | ○ 굴착깊이 20m 이상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및 절차 준수 바람 등<br>※ 굴착깊이 10m 이상 20m미만 굴착공사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 ○ 해당 규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협의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음                                                                                                                                                                                                                                                                                                                                                                                                         | 반영    |     |     |         |          |          |         |          |          |  |
| 서울시<br>도시계획<br>상임기획과 | ○ 이화웨스트캠퍼스 신축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28m→55m) 계획은 신축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6,806.36㎡, 높이 51m~60m) 및 주변 이화금관중학교 등 현행 건축물을 고려한 경관 계획과 연계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                                 | ○ 이화웨스트캠퍼스의 높이는 신축 건축물 규모 및 주변 현행 건축물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검토하겠음.<br>-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축소<br><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기 정</th><th>변 경</th></tr></thead><tbody><tr><td>선 Tower</td><td>12층, 55m</td><td>11층, 51m</td></tr><tr><td>미 Tower</td><td>11층, 51m</td><td>10층, 47m</td></tr></tbody></table><br>- 지상층에 배치된 이화웨스트캠퍼스 교육공간의 일조권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물 높이 축소로 인한 연면적 감소를 포함하여 전체 건물의 연면적 축소 및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겠음. | 구 분   | 기 정 | 변 경 | 선 Tower | 12층, 55m | 11층, 51m | 미 Tower | 11층, 51m | 10층, 47m |  |
| 구 분                  | 기 정                                                                                                                                                                  | 변 경                                                                                                                                                                                                                                                                                                                                                                                                                                           |       |     |     |         |          |          |         |          |          |  |
| 선 Tower              | 12층, 55m                                                                                                                                                             | 11층, 51m                                                                                                                                                                                                                                                                                                                                                                                                                                      |       |     |     |         |          |          |         |          |          |  |
| 미 Tower              | 11층, 51m                                                                                                                                                             | 10층, 47m                                                                                                                                                                                                                                                                                                                                                                                                                                      |       |     |     |         |          |          |         |          |          |  |

| 협의부서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반영 여부 |
|-------------------------|---------------------------------------------------------------------------------------------------------------------------------------------------------------------------------------------------------------------------------------------------------------------------------------------------------------------------|-------------------------------------------------------------------------------------------------------|-------|
| 서울시<br>물재생<br>시설과       | ○ 위 사업은 교육연구시설(학교)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의거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사업 할당 대상이 아님                                                                                                                                                                                                                                                        | ○ 해당 사항 없음                                                                                            | -     |
| 서울시<br>기후<br>환경<br>정책과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등                                                                                                                                                                                                                          | ○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반영    |
| 서대<br>문구<br>도시<br>계획과   | ○ 지역기여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오니 세부시설조성계획 반영을 요청<br>- 이화웨스트캠퍼스(신축) 주차장 주민 개방(공휴일 및 주말)<br>- 이화웨스트캠퍼스(신축) 내 갤러리 및 북카페 조성 후 주민 개방                                                                                                                                                                                       | ○ 지역기여 방안으로 이화웨스트캠퍼스(신축) 주차장 주민 개방(공휴일 및 주말) 및 이화웨스트캠퍼스(신축) 내 갤러리 및 북카페 조성 후 주민 개방을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반영    |
| 서울시<br>교육청<br>학교<br>지원과 | ○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2025.4.7.자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청과 재협의 하여야 함<br>※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 2025.4.7. 검토의견<br>○ 용벽구조 철거 시 이대부속고등학교와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학생 안전 확보 후 사업 실시<br>○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중·고등학교는 연계형 이음학교로 운영 중임. 일체형 이음학교 운영은 개축후 시설 폐쇄와 함께 가능하므로 개축 완료 후 일체형 이음학교 지정 가능<br>○ 교육부 또는 서부교육지원청의 의견이 있을 경우 반영하여 추진 바람 | ○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협의 하겠습니다.                                                                          | 반영    |
|                         |                                                                                                                                                                                                                                                                                                                           | ○ 착공시 사전협의 진행하고 학생 안전확보 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반영    |
|                         |                                                                                                                                                                                                                                                                                                                           | ○ 개축 완료 후 일체형 이음학교를 시행하겠습니다                                                                           | 반영    |
|                         |                                                                                                                                                                                                                                                                                                                           | ○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 반영    |

## 7. 기 타

## ○ 재원조달계획

## 1) 이화웨스트캠퍼스

| 구 분                          | 소 요 자 금                | 비 고 |
|------------------------------|------------------------|-----|
| 건축 기금                        | 50,000,000,000원(25%)   |     |
| 산학연협력시설, 창업지원시설<br>공동운영기업 유치 | 50,000,000,000원(25%)   |     |
| 건립 기부금                       | 100,000,000,000원(50%)  |     |
| 합 계                          | 200,000,000,000원(100%) |     |

## 2) 이화첨단도서관

| 구 분    | 소 요 자 금               | 비 고 |
|--------|-----------------------|-----|
| 건축 기금  | 14,000,000,000원(50%)  |     |
| 건립 기부금 | 14,000,000,000원(50%)  |     |
| 합 계    | 28,000,000,000원(100%) |     |

## 3) 이대부속중·고 이음학교 및 체육관(변경 예정)

| 구 분                   | 소 요 자 금               | 비 고                     |
|-----------------------|-----------------------|-------------------------|
| 법인 자체 재원              | 72,931,012,560원(88%)  |                         |
| 통합운영학교 지원금 (서울특별시교육청) | 10,000,000,000원(12%)  | 예산주관:<br>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
| 합 계                   | 82,931,012,560원(100%) |                         |

## ○ 연차별 예산계획

## 1) 이화웨스트캠퍼스

| 구 분 | 2025년~2026년                 | 2027년~2028년                  | 2029년~2030년                 |
|-----|-----------------------------|------------------------------|-----------------------------|
| 사업비 | 30,000,000,000원<br>(15.00%) | 120,000,000,000원<br>(60.00%) | 50,000,000,000원<br>(25.00%) |

## 2) 이화첨단도서관

| 구 분 | 2024년~2026년                | 2027년~2028년                 | 2029년                     |
|-----|----------------------------|-----------------------------|---------------------------|
| 사업비 | 4,200,000,000원<br>(15.00%) | 22,400,000,000원<br>(80.00%) | 1,400,000,000원<br>(5.00%) |

## 3) 이대부속중 · 고 이음학교 및 체육관(변경 예정)

| 구 분                   | 2027년~2029년          | 2030년~2031년          |
|-----------------------|----------------------|----------------------|
| 법인 자체 재원              | 36,465,506,280원(44%) | 36,465,506,280원(44%) |
| 통합운영학교 지원금 (서울특별시교육청) | 5,000,000,000원(6%)   | 5,000,000,000원(6%)   |
| 합 계                   | 41,465,506,280원(50%) | 41,465,506,280원(50%) |

- 환경성 검토 결과 녹지훼손, 지형변화, 경관 및 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 시 환경저해요소(소음, 진동 등)의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통성 검토 결과 당해 계획으로 인해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평가(변경) 실시 예정임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제1캠퍼스는 폭우 · 폭염 · 폭설 · 가뭄 · 강풍 부문이 3, 4등급으로 나타났다으나, 금회 계획 대상지는 대부분 3등급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바람길 확보, 녹지축 조성, 운동장 녹화 등을 통해 재해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 추진경위
  - '74.08.13. :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
  - '01.08.16.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 '16.02.25.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 '20.12.03.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25.03.27.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
  - '25.04.17.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기 간 : '25. 4.17.~ 5. 1.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1부. 끝.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이유희 (☎ 2133-841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 서울시립대학교 -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 시설명 | 시설의<br>종 류       | 위 치               | 면 적 (㎡) |     |         | 최초<br>결정일               | 비 고                               |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학 교 | 대 학<br>(서울시립대학교) | 동대문구 전농동<br>90 일대 | 270,595 | -   | 270,595 | 서고 제151호<br>(1975.9.26) | 제1종일반주거지역,<br>제2종일반주거지역<br>(7층이하) |

## 나.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1) 구역계획 : 기정

| 구 역    | 구 분 | 면 적 (㎡) | 구 역    | 구 분 | 면 적 (㎡) |
|--------|-----|---------|--------|-----|---------|
| 일반관리구역 | ①   | 43,384  | 외부활동구역 | ⑦   | 9,817   |
|        | ②   | 49,239  |        | ⑧   | 10,758  |
|        | ③   | 47,831  | 소 계    |     | 20,575  |
|        | ④   | 42,466  | 녹지보존구역 | ⑨   | 5,887   |
|        | ⑤   | 3,720   |        | ⑩   | 4,301   |
| 소 계    |     | 186,640 |        | ⑪   | 39,846  |
| 상징경관구역 | ⑥   | 13,346  | 소 계    |     | 50,034  |
| 소 계    |     | 13,346  | 합 계    |     | 270,595 |

## 2) 구역계획 : 변경

| 구 역    | 구 분 | 면 적 (㎡) | 구 역    | 구 분 | 면 적 (㎡) |
|--------|-----|---------|--------|-----|---------|
| 일반관리구역 | ①   | 43,384  | 외부활동구역 | ⑥   | 9,817   |
|        | ②   | 49,239  |        | ⑦   | 10,758  |
|        | ③   | 50,551  | 소 계    |     | 20,575  |
|        | ④   | 43,466  | 녹지보존구역 | ⑧   | 5,887   |
|        |     |         |        | ⑨   | 4,301   |
| 소 계    |     | 186,640 |        | ⑩   | 39,846  |
| 상징경관구역 | ⑤   | 13,346  | 소 계    |     | 50,034  |

| 구역  | 구분 | 면적 (㎡) | 구역  | 구분 | 면적 (㎡)  |
|-----|----|--------|-----|----|---------|
| 소 계 |    | 13,346 | 합 계 |    | 270,595 |

## 3) 밀도계획 (건폐율) : 변경없음

| 구분                    | 밀도산정<br>기준면적(㎡) | 조례<br>건폐율(%) | 사용<br>건폐율(%) | 관리<br>건폐율(%) | 비고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826          | 60.0         | 24.0         | 28.0         |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br>-비오름 1등급지 : 33,482㎡<br>※ 산정기준 면적 계산<br>270,595㎡ - 33,482㎡ = 237,113㎡ |
| 제1종일반주거지역<br>(자연경관지구) | 193,427         | 30.0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860          | 60.0         | 18.9         |              |                                                                                         |
| 계                     | 237,113         | 35.5         | 23.4         |              |                                                                                         |

※ 학교용지 면적(270,595㎡) 대비 법정건폐율 31.1%, 사용건폐율 20.5%

## 4)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 높이) : 기정

| 구역구분 | 면적<br>(밀도산정<br>기준면적) | 용 적 률 (%) |           |           |           |           | 높이(m)                                             | 비고                           |
|------|----------------------|-----------|-----------|-----------|-----------|-----------|---------------------------------------------------|------------------------------|
|      |                      | 조례<br>용적률 | 사용<br>용적률 | 계획<br>용적률 | 이전<br>용적률 | 관리<br>용적률 |                                                   |                              |
| ①    | 43,384               | 177.5     | 79.6      | 104.1     | -         | 114       | • 지표로부터 12~50m 이하                                 |                              |
| ②    | 49,239               | 150.0     | 108.1     | 117.4     | -         | 127       |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                              |
| ③    | 47,831               | 150.0     | 97.8      | 131.0     | -         | 140       |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                              |
| ④    | 42,466               | 150.0     | 102.1     | 128.8     | -         | 138       | • 지표로부터 28m 이하                                    |                              |
| ⑤    | 3,720                | 150.0     | -         | 134.4     | -         | 140       | • 지표로부터 28m 이하                                    |                              |
| ⑥    | 13,346               | 150.0     | 16.8      | -         | -         | 19        | • 지표로부터 8m 이하<br>(기존 건축물 개축 및 리모델링 허용)            | 상징경관구역<br>(자작마루,<br>박물관,경동관) |
| ⑦    | 9,817                | 165.2     | -         | -         | -         | 3         | • 지표로부터 12m 이하<br>(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br>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 외부활동구역<br>(대운동장,<br>지하주차장)   |

| 구역구분 | 면적<br>(밀도산정<br>기준면적) | 용 적 륜 (%) |           |           |           |           | 높이(m)                                             | 비고                         |
|------|----------------------|-----------|-----------|-----------|-----------|-----------|---------------------------------------------------|----------------------------|
|      |                      | 조례<br>용적률 | 사용<br>용적률 | 계획<br>용적률 | 이전<br>용적률 | 관리<br>용적률 |                                                   |                            |
| ⑧    | 10,758               | 150.0     | 33.8      | -         | -         | 36        | • 지표로부터 22m 이하<br>(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br>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 외부활동구역<br>(하늘못, 음악관)       |
| ⑨    | 5,887<br>(0)         | 150.0     | 0.2       | -         | -         | 0.2       | • 기존 건축물 현 범위내 활용                                 | 녹지보존구역<br>(시대동산,<br>암석표본실) |
| ⑩    | 4,301<br>(0)         | 150.0     | -         | -         | -         | -         | -                                                 | 녹지보존구역<br>(배봉산자락)          |
| ⑪    | 39,846<br>(16,552)   | 150.0     | -         | -         | -         | -         | -                                                 |                            |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 5)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 변경

| 구역구분 | 면적<br>(밀도산정<br>기준면적) | 용 적 륜 (%) |           |           |           |           | 높이(m)                                             | 비고                           |
|------|----------------------|-----------|-----------|-----------|-----------|-----------|---------------------------------------------------|------------------------------|
|      |                      | 조례<br>용적률 | 사용<br>용적률 | 계획<br>용적률 | 이전<br>용적률 | 관리<br>용적률 |                                                   |                              |
| ①    | 43,384               | 177.5     | 79.6      | 104.1     | -         | 114       | • 지표로부터 12~50m 이하                                 |                              |
| ②    | 49,239               | 150.0     | 108.1     | 117.4     | -         | 127       |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                              |
| ③    | 50,551               | 150.0     | 92.5      | 139.9     | -         | 140       | • 지표로부터 24~35m 이하                                 |                              |
| ④    | 43,466               | 150.0     | 99.7      | 121.4     | -         | 138       | • 지표로부터 28m 이하                                    |                              |
| ⑤    | 13,346               | 150.0     | 16.8      | -         | -         | 19        | • 지표로부터 8m 이하<br>(기존 건축물 개축 및 리모델링 허용)            | 상징경관구역<br>(자작마루,<br>박물관,경농관) |
| ⑥    | 9,817                | 165.2     | -         | -         | -         | 3         | • 지표로부터 12m 이하<br>(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br>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 외부활동구역<br>(대운동장,<br>지하주차장)   |
| ⑦    | 10,758               | 150.0     | 33.8      | -         | -         | 36        | • 지표로부터 22m 이하<br>(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br>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 외부활동구역<br>(하늘못, 음악관)         |
| ⑧    | 5,887<br>(0)         | 150.0     | 0.2       | -         | -         | 0.2       | • 기존 건축물 현 범위내 활용                                 | 녹지보존구역<br>(시대동산,<br>암석표본실)   |
| ⑨    | 4,301<br>(0)         | 150.0     | -         | -         | -         | -         | -                                                 | 녹지보존구역<br>(배봉산자락)            |
| ⑩    | 39,846<br>(16,552)   | 150.0     | -         | -         | -         | -         | -                                                 |                              |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 6) 변경사유서

| 구 분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대학<br>(서울시립대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관리구역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7,831㎡ → 50,551㎡ (증 2,720㎡)</li> <li>- 사용용적률 : 97.8% → 92.5%(감5.3%)</li> <li>- 계획용적률 : 131% → 139.9%(증8.9%)</li> </ul> </li> <li>•일반관리구역 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466㎡ → 43,466㎡ (증 1,000㎡)</li> <li>- 사용용적률 : 102.1% → 99.7%(감2.4%)</li> <li>- 계획용적률 : 128.8% → 121.4%(감7.4%)</li> </ul> </li> <li>•일반관리구역 5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 → 녹지보존구역</li> </ul> </li> <li>•녹지보존구역 : 면적 변경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구역(아름숲 부지)은 캠퍼스와 이격되어 학생이용에 한계가 있고, 배봉산의 녹지축을 강화시키고, 주민편의공간 설치 필요</li> <li>•구역간 교환을 통해 캠퍼스간 연계가 용이한 합리적인 위치로 기숙사 클러스터 재구축</li> <li>•대학 경쟁력 강화 및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첨단분야 연구시설 부지 추가 확보 (바이오메디컬관)</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관리구역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 24~28m → 24~35m (증7m)</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립대학교 전체 건폐율 부족 문제와 부족한 기숙사 확보를 위해 높이계획 완화 필요</li> <li>•배후 산지 높이 관리 기준에 따라 7부 능선(87.6m) 이내 높이계획</li> </ul>                                                                                                 |

## 3. 입안사유

- 기숙사 수용률 제고 및 학생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증축과 인재 육성을 위한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확보를 위해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25. 4. 17. ~ 5. 1.
- 계 재 신 문 :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 열 람 장 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 의견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부서<br>(기관)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반영 여부 |
|--------------------|---------------------------------------------------------------------------------------------------------------------------------------------------------------------------------------------------------------------------------------------------------------------------------------------------------------------------------------------------------------------------------------------------------------------------------------------------------------------------------------------|----------------------------------------------------------------------------------------------|-------|
| 서울시<br>기후환경<br>정책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li> <li>○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li> <li>※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2033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도시 달성</li> <li>-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소화하고 흡수량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 사업지 내 에너지 사용(전력, 도시가스, 휘발유/경유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li> </ul> | <p>▶ 환경성 검토서의 온실가스 항목에서 녹지공간 확보, 녹색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확보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사업 진행시 검토하도록 하겠음</p>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신축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li> </ul>                                                                                                                                                                                                                                                                                                                                                          | <p>▶ 사업 진행시 검토하도록 하겠음</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자동차(전기차·수소차 등)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li> </ul>                                                                                                                                                                                                                                                                                                                                                                                      | <p>▶ 사업 진행시 검토하도록 하겠음</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지열, 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등) 및 미활용·분산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li> </ul>                                                                                                                                                                                                                                                                                                                                                                          | <p>▶ 사업 진행시 검토하도록 하겠음</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 내 녹지 공간, 수변 공간, 보행 공간 조성을 검토할 것</li> </ul>                                                                                                                                                                                                                                                                                                                                                                                     | <p>▶ 경사지형 및 주변 자연환경, 바람길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 및 건축배치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사업 진행시 검토하도록 하겠음</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염, 폭우, 혹한 등으로 인한 기후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li> <li>※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물막이 판 설치로 폭염 및 폭우 대응력 강화 등</li> </ul>                                                                                                                                                                                                                                                                                                                          | <p>▶ 신·증축 예정 건축물에 관하여 투수성 포장, 물막이 판 설치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며 추후 사업 진행시 검토하도록 하겠음</p>                |       |
| 서울시<br>친환경건물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였으나 급회 사업계획의 변경이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방</li> </ul>                                                                                                                                                                                                                                                                                                                                             | <p>▶ 사업 진행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p>                                                            | 반영    |

| 협의부서<br>(기관)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반영 여부 |
|--------------|----------------------------------------------------------------------------------------------------------------------------------------------------------------------------------------------------------------------------------------------------------------------------------------------------------------------------------------------------------------------------------------------------------------------------------------------------------------------------------------------------------------------------------------------------------------------------------------------------------------------------------------------------------------------------------------------------------------------------------------------------------------------------------------------------------------------------|------------------------------------------------------------------------------------------------------------------------------------------------------------------------------------|-------|
|              | 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
| 서울시<br>도로관리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깊이 20m 이상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및 절차 준수 바람</li> <li>※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li> <li>○ 사업시행자는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함.</li> <li>○ 또한 법 제1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기관과 재협의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함</li> <li>○ 기타 관련사항은 관련법에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li> </ul>                                                                                                                                                                                                                                                                                                                                                                                   | ▶ 굴착깊이 20m 미만으로 해당되지 않음                                                                                                                                                            | 반영    |
| 서울시<br>자원순환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시 아래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 필요</li> <li>〈건설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별 해체)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철거공사는 건설폐기물 14종 우선 분별 해체로 재활용을 확대해야 함. (계약서류에 명시)</li> <li>- (종류별 분리보관 및 운반)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해야 함.</li> </ul> </li> <li>〈사업장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배출자 신고하여야 함.</li> <li>- 사업 시행 이후,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그 외 사업장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배출자 신고하여야 함.</li> </ul> </li> <li>- 사업장 운영 시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분리·보관하되, 특히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플라스틱, 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li> <li>〈지정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유,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발생 시 배출자 신고 및 적정·보관 처리</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성 검토서의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에서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음</li> <li>-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임</li> </ul> | 반영    |

| 협의부서<br>(기관)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반영 여부 |
|----------------------|-----------------------------------------------------------------------------------------------------------------------------------------------------------------------------------------------------------------------------------------------------------------------------------------------|------------------------------------------------------------------------------------------------------------------------------------------------------------------------------------------------------------|-------|
| 서울시<br>도시계획과         | ○ 자연경관지구 전농지구 내 서울시립대학교의 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계획 수립 필요                                                                                                                                                                                          | ▶ 배후산지(배봉산) 경관을 고려하여 배후산지 높이관리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산지의 7부 능선 보호 및 자연경관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35m→28m로 높이 계획을 조정하였음                                                                                      | 반영    |
| 서울시<br>도시계획<br>상임기획과 | ○ 기숙사 증축을 위한 일반관리구역③의 높이계획 변경(기정 녹지보존구역 → 일반관리구역 35m)은 주변 높이계획(일반관리구역 28m, 외부활동구역 22m)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숙사 1층 주차장(23대) 계획의 필요성 및 지하층 주차장 확보 등과 연계한 높이 조정 방안 검토                                                                                                                               | ▶ 주변 높이계획을 고려하여 기숙사 증축을 위한 일반관리구역 ③의 높이계획을 35m→28m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숙사 계획 층수를 7층으로 조정하였음<br>▶ 기숙사 1층은 배봉산 산재길 연결을 위해 필로티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경사지형으로 인한 채광문제를 고려하여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추후 사업시행시 지하주차장 계획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반영    |
| 서울시<br>대기정책과         | ○ 사업시행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기 바람<br>- 친환경 건설기계(Euro5, Tier3 이상) 사용<br>-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및 오존 주의보, 경보 발령시 작업조정 및 근로자 보호 조치<br>-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저녹스 버너 연료별 인증 받은 제품 설치<br>-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 3월) 기간 동안의 공사 시 저감대책을 수립 반영<br>- 건축물 신축, 개·증축 및 유지보수(도색) 등의 작업중 친환경도로 사용시 '환경표지인증' (환경부) 도로 사용 | ▶ 사업 진행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 반영    |
| 서울시<br>수변감성<br>도시과   | [공통사항]<br>○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개발로 인한 물순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영향 개발기법(LID)과 유휴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 반영<br>- 물순환 및 물재이용 관련 계획 요소는 사업의 초기(구상)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고려하여 효과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br>- 사업지 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등의 물자원은 사업대상지 내·외 관리용수, 친수용수로 재이용하거나, 인접한 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하수도로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 사업 진행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 반영    |
| 동대문구<br>도시계획과        | ○ 서울시고시 제2020-94호(2020.3.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이후 건축허가 사항 미반영으로 반영 필요                                                                                                                                                                                                              | ▶ 서울시고시 제2020-94호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이후 건축허가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조서 및 사용밀도를 변경하였음                                                                                                                                   | 반영    |

## 7. 기 타

## ○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 공종별 | 총사업비    | 비 고 |
|-----|---------|-----|
| 계   | 125,762 |     |
| 시비  | 125,762 |     |

## ○ 연차별 예산계획 (기숙사)

(단위:백만원)

| 공종별 | 총사업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
| 계   | 42,309 | 1,632 | 13,559 | 13,559 | 13,559 | -  |
| 시비  | 42,309 | 1,632 | 13,559 | 13,559 | 13,559 | -  |

## ○ 연차별 예산계획 (바이오메디컬관)

(단위:백만원)

| 공종별 | 총사업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비고 |
|-----|--------|-------|--------|--------|----|
| 계   | 83,453 | 3,637 | 39,908 | 39,908 | -  |
| 시비  | 83,453 | 3,637 | 39,908 | 39,908 | -  |

○ 환경성 검토 결과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시행 시 저감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통성 검토 결과 당해 계획으로 인해 유발되는 발생교통량은 주요 도로망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며,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경관성분석 결과 학교 외부에서 건축물이 조망 되지 않고, 산지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는 높이로 조성하여 경관상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 주요 추진경위

- '75. 09. 26. :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
- '15. 12. 03.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 결정
- '20. 03. 05.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25. 03. 14.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
- '25. 04. 17.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기 간 : '25. 4. 17. ~ 5. 1.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 붙 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끝.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노송이 (☎ 2133-8413)



|       |  |
|-------|--|
| 기관의 장 |  |
| 선     |  |
| 람     |  |

|        |  |  |  |  |  |  |  |  |  |
|--------|--|--|--|--|--|--|--|--|--|
| 공<br>람 |  |  |  |  |  |  |  |  |  |
|        |  |  |  |  |  |  |  |  |  |